



모로코 투자진출을 위한  
길라잡이

## ■ 발간사

### I. 모로코 투자환경

1. 모로코 개요	
가. 정치	12
나. 경제	13
다. 사회	16
라. 치안	16
마. 지리 및 기후	16
바. 역사	17
2. 한국-모로코 관계	19
3. 모로코 투자환경	
가. 모로코 투자환경	22
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28
다. 주요 산업단지	30
라. 유망 진출 업종	40
4. 산업 분야별 발전 계획·전략	
가. 2014-2020 산업촉진계획	45
나. 모로코 정보통신기술 발전계획	52
다. 농업발전계획	53
라. 관광 Vision 2020	54
마. 수산업 개발계획	55
바. 유통-물류 전략	56
5. 주요 투자혜택(인센티브)	
가. 투자진흥기금	57
나. 하산 2세 기금	60
다. 수입관세 면제	61
라. 부가가치세 면제	61
마. 자유무역지대 혜택	62
바. 산업분야별 투자 혜택	63



## II. 투자진출 고려·결정 요소

1. 시장 잠재력 .....	66
2. 생산 비용	
가. 인건비 .....	67
나. 공공요금 .....	68
3. 외국인 진출 제한 여부	
가. 투자 제한 .....	70
나. 과실송금 .....	70
4. 노무 및 외국인력 채용	
가. 노무 .....	71
나. 외국인력 채용 및 관리 .....	71
5. 투자자 보호 .....	72

## III. 단계별 모로코 진출 절차

1. 외국인 투자기업 유형	
가. 외국기업의 모로코 진출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유형 .....	74
나. 현지법인 설립 시 선택 가능한 회사 유형 .....	75
2.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 절차	
가. 절차 개요 .....	77
나. 세부 절차 .....	77
3. 비자 및 체류증 발급 .....	81
4. 은행 업무	
가. 모로코 내 주요 은행 현황 .....	83
나. 은행계좌 개설 .....	85

#### IV. 주요 법률

1. 노동법	88
2. 조세	
가. 개관	97
나. 법인세	97
다. 소득세	97
라. 부가가치세	101
3. 기타 법률 및 조정·중재	
가.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법	104
나. 경쟁법	105
다. 개인정보보호법	105
라. 조정·중재	106

#### V. 모로코 생활환경

1. 교육환경	
가. 개요	108
나. 국제학교	109
다. 한글학교	114
2. 의료시설	115
3. 주거환경	117
4. 생활물가	118

#### VI. 출장자 안내

1. 모로코 여행자 통관정보	122
-----------------	-----





2. 체류 시 유의사항	
가. 안전사고	124
나. 교통사고	125
다. 사진 촬영	126
라. 기타 주의사항	126

## Ⅶ. 기 타

1. 유용한 연락처	
가. 주요 기관	128
나. 주요 법무법인	130
다. 주요 회계법인	131
라. 모로코 진출 주요 한국 기업	131
2. 생활 불어 및 모로코 아랍어(데리자)	
가. 일상 회화	132
나. 데리자 숫자	132

## Ⅷ. 부 록

1. 모로코 투자현장(영문)	134
2.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 전문	143
3. 한-모로코 이중과세방지협약 전문	151
4. 모로코 투자혜택 정책(영문)	171
5. 모로코 주요 법률 요약본(영문)	178
6. 근로계약 분쟁관련 주요 쟁점 요약	181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끊임없이 서진하던 우리 기업들이 마침내 더 이상 갈 곳 없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끝 모로코에 도달했다.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이다. 모로코 땅에 공장을 짓고 모로코 사람들을 고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오래 전부터 모로코에서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건설 중장비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2012년부터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들이 들어와 발전소, 비료공장 등 플랜트 건설 공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 회사들이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모로코에 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 작년의 일이다.

무엇이 1만 Km 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끝 모로코에 한국 회사들을 정착하게 했을까? 무엇보다도 모로코에 투자하여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먼저 온 많은 외국 회사들이 좋은 예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서 외국 회사들의 생산 투자가 특히 활발하다.

그렇다면 투자 대상지로서 모로코의 매력은 무엇일까? 첫째,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 시장 모두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50 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매우 크고 유리한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로코 정부의 후한 투자 인센티브와 상당히 잘 갖춰진 도로, 항만, 공항 등 훌륭한 인프라이다. 셋째, 차분하고 숨씨 좋은 근로자들을 적절한 임금에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점이다. 이 외에 좋은 기후와 다양한 자연환경,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은 모로코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기업들은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모로코 국민들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한국을 모델로 삼아 배우고 싶어 한다. 모로코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비결이 무엇인냐고 자주 묻는다. 1962년 모로코가 한국과 수교할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서로 비슷했는데 그간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나게 했느냐면서다. 그러면서 필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스스로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교육,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 수출주도의 경제개발정책 등을 들며 그 외에 다른 비결이 있지 않겠느냐며 다그친다. 필자는 고심하다 두 가지를 든다. 첫째로 한국 속담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고 또한 “배가 고프는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한국 사람의 선의의 질투심과 경쟁의식이다. 둘째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지난 1세기 동안 참담한 굶주림과 가난을 겪었다.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들은 이러한 고통과 가난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최우선으로 했다.” 고 설명한다. 즉 한국인들은 나라가 튼튼하고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이다.

금년은 우리나라와 모로코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 55년이 되는 해이다. 수교 후 2개월 만에 문을 연 우리 대사관은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개설된 우리나라 외교공관이 되었다. 그간 우리 두 나라는 양국 간 우호관계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관계를 정성스럽게 발전시켜 왔다.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사증면제협정도 이미 체결되어 있다. 이제 이처럼 돈독한 우호협력관계의 기반 위에서 우리 기업들이 모로코에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관계가 더 한층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모로코 투자진출을 돕기 위해 ‘모로코 투자진출을 위한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는 물론 대사관의 독창적인 창작품이 아니다. 작성 과정에서 모로코 투자청,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경제기구, 코트라 카사블랑카 무역관, 모로코 주재 주요국가 대사관, 주요 컨설팅 업체 등에서 발간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특히 모로코 정부가 부여하는 투자 혜택, 모로코 주요 법률 내용 등 안내서의 상당부분은 사전 양해를 구하고 모로코 투자청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안내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기관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대사관은 금번에 이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투자진출에 유용한 내용을 가능한 한 많이 담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 극히 일부일 것으로 생각되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실제 투자진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안내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나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대사관(morocco@mofa.go.kr)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함께 확인해 보고 개정판 발간 때 반영하고자 한다.

이 안내서가 모로코에 투자진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우리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주모로코 대한민국 대사 박 동 실

Les entreprises coréennes qui n'ont cessé d'avancer vers l'Ouest dans un premier temps en Chine et dans les pays d'Asie du Sud-Est sont enfin arrivées à la fin de l'Ouest : au Maroc situé au Nord-Ouest de l'Afrique et qui est le lieu de croisement de l'Atlantique et de la Méditerranée.

Depuis longtemps, les véhicules, les appareils électroménagers, les téléphones portables, et les équipements lourds des marques coréennes ont joui d'une grande popularité. En effet, on remonte à l'année 2012 pour voir l'implantation des principales entreprises coréennes de construction au marché marocain, mais ce n'est que depuis un an que les entreprises d'autres domaines ont commencé à venir au Maroc pour construire leurs propres usines à des fins de fabrication directe de leurs produits.

Qu'est-ce qui les ramène à s'installer à l'extrême Nord-Ouest loin de 10.000 km de leur pays? La première raison réside dans les profits qu'elles pourront y réaliser. En témoigne le nombre élevé des entreprises d'autres pays étrangers qui procèdent déjà aux investissements actifs dans les domaines d'automobile, d'aéronautique, et d'énergies renouvelables.

Alors, qu'est-ce qui attire les investisseurs étrangers au Maroc? Le premier attrait est sa localisation géographique avantageuse qui leur a permis de conclure des accords de libre-échange avec plus de 50 pays dans la région et d'avoir donc un marché vaste et favorable aux investissements. Le deuxième est la politique favorable du gouvernement marocain aux investissements étrangers et les infrastructures de qualité comme les autoroutes, les ports et les aéroports. Le troisième est la main-d'œuvre qualifiée à un prix raisonnable. Le quatrième est sa politique et sa sécurité qui sont les plus stables en Afrique. À ces atouts marocains on peut ajouter aussi le climat magnifique, la nature diversifiée et le patrimoine culturel abondant qui rendent la vie quotidienne plus agréable.

À part les avantages décrits ci-dessus, les entreprises coréennes bénéficient encore d'un autre atout qui est le sentiment favorable des Marocains envers la Corée et les Coréens. Les marocains que je rencontre apprécien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coréen. Ils veulent savoir le secret du miracle de l'économie coréenne. Ils me demandent aussi comment la Corée a connu une croissance si rapide même si ses revenus par habitant étaient presque au même niveau que le Maroc en 1962 où les deux pays ont établi les relations diplomatiques. Même avant que je réponde ils se précipitent à énumérer par eux-mêmes les moteurs de succès économique de la Corée comme l'engouement pour l'éducation, l'investissement intensif dans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et la politiqu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axée sur l'exportation. Mais ils me demandent avec insistance s'il y aurait un autre moteur. Après avoir beaucoup réfléchi, je leur explique comme suit. Premièrement, l'esprit de compétitivité des coréens et je cite un proverbe coréen : « Si mon cousin achète un terrain j'ai mal au ventre ». Et les coréens se disent aussi que « On peut résister à la faim mais pas avoir mal au ventre ». Deuxièmement, je leur donne une autre explication : « Les Coréens ont connu une



histoire triste et une pauvreté extrême pendant près d'un siècle. Ils ne pouvaient pas chuter plus bas qu'ils ne l'étaient. Ils ont alors serré les dents pour ne pas faire hériter ces douleurs à leurs enfants. Ils ont travaillé dur et donné la priorité à l'éducation de leurs enfants. »

Cette année est le 55<sup>ème</sup> annivers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Corée et le Maroc. L'Ambassade de Corée qui a ouvert ses portes deux mois après l'établissement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st la première mission diplomatique coréenne en Afrique. Entre temps les deux pays ont déployé soigneusement leurs efforts pour approfondir l'amitié et la coopération mutuelle dans tous les domaines. Les deux pays ont déjà conclu « l'Accord de promotion et de protection des investissements étrangères », « l'Accord visant à éviter la double imposition » et « l'Accord d'exemption de visas ». Ces accords constituent un système institutionnel qui crée un environnement favorable aux investissements coréens au Maroc. Sur la base des liens sincères d'amitié et de coopération, on s'attend à ce que les investissements directs des entreprises coréennes permettent de consolider davantage ces relations coopératives bilatérales.

L'Ambassade de Corée publie pour la première fois le livre intitulé « Guide d'Investissement au Maroc ». Il n'est pas bien sûr un ouvrage créatif de l'Ambassade. Au cours du processus de rédaction, on s'est référé à diverses sources publiées par de grandes organisations économiques internationales telles que l'Agence Marocaine de Développement des Investissements (AMDI), la Banque mondiale, le KOTRA Casablanca, les autres Ambassades au Maroc et les grandes sociétés de conseil.

Une grande partie du livre, notamment sur les mesures incitatives à l'investissement du gouvernement marocain, les informations juridiques concernées, est l'extrait des données de l'AMDI qui a accordé une aimable autorisation de s'en servir. Au nom de l'Ambassade, je voudrais exprimer mes remerciements à tous les organismes et les personnes qui ont contribué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à la publication de ce guide.


L'Ambassade, malgré les restrictions de temps et d'expertise tenait à inclure dans le livre des contenus utiles pour l'investissement au Maroc, autant que possible. Mais il pourrait subsister quelques petites erreurs. Si vous les trouvez ou si vous avez des informations supplémentaires à vouloir ajouter dans ce guide, veuillez les transmettre à l'adresse e-mail de l'Ambassade ([morocco@mofa.go.kr](mailto:morocco@mofa.go.kr)) pour que vos suggestions puissent être reflétées dans l'édition revue.

J'espère que ce livre sera utile pour les entreprises coréennes qui souhaitent investir au Maroc et qui s'y sont déjà installées.

Décembre 2017

**Dongsil PARK**

Ambassadeur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u Royaume du Maroc







# I. 모로코 투자환경

1. 모로코 개요
2. 한국-모로코 양국관계
3. 모로코 투자환경
4. 산업 분야별 발전 계획·전략
5. 주요 투자혜택(인센티브)

## 1 모로코 개요

### 가. 정치

- 국명 : 모로코 왕국
  - 프랑스어 : Royaume du Maroc
  - 영어 : Kingdom of Morocco
  - 현지 아랍어 : Al Magrib
- 정체 : 입헌군주제(국왕은 국가원수이자 최고종교지도자이며 국가기관의 최고조정자)
  - 상·하 양원제
  - 국시 : 신(알라), 조국, 국왕
- 지방 행정조직
  - 12개 도(région)
  - 15개 시/군(préfecture/province)
  - 1,538개 면(commune)
- 수도 : 라바트(Rabat)
- 국가원수 :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
- 정부수반('총리'에 해당) : 사드 에딘 엘 오토마니(Saad Eddine El Othmani)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는 정세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모로코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리더십 하에 정치·경제·행정·사회 등 제반분야 개혁 및 지방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모로코에서도 시위가 일어나자 모하메드 6세 국왕은 국왕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헌법개정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2011년 7월 16일 실시된 국민투표로 신헌법이 채택되었다. 이제 국왕은 하원선거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만 정부수반을 임명하고, 정부수반이 제청한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게 됐다.

2016년 10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의 어려움으로 신정부 출범이 지연됐다가 2017년 4월 5일 엘 오토마니 정부수반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온건 이슬람 정당인 개발정의당(PJD)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좌파성향의 민주진보연합당(PPS), 자유주의 성향의 독립국민연합당(RNI), 보수성향의 민중운동당(MP), 자유주의 성향의 헌정연합당(UC), 좌파성향의 민중사회주의연합당(USFP)이 참여하고 있다.

## 나. 경제

- 국내총생산(2016년, GDP) : 1,014.5억 불(세계은행)
  - 국내총생산(2016년, PPP) : 2,814억 불(IMF)
- 1인당 GDP(2016년) : 2,832 불(세계은행)
  - 1인당 GDP(2016년, PPP) : 8,160 불(IMF)
- 경제성장률(2016년) : 1.1%
  - 2015년 4.4%, 2014년 2.4% (세계은행, 모로코 고등연구위원회)
- 주요자원 : 인광석(세계 3위 생산국), 철, 망간, 구리
- 화폐단위 : 모로코 디람(Morocco Dirham: MAD)
  - 환율 : 미화 1 불 ≙ 9.2 디람 (2017.11월말 현재)

2016년 심각한 강수량 부족으로 모로코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생산이 약 10% 감소해 전체 GDP 성장률이 1.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7년에는 농업생산량 회복, 관광업 상승세, 외국인 직접투자 지속 유입, 자동차·항공분야 생산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5~4.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보조금 정책 개혁 등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시행으로 2016년 재정적자는 GDP의 3.9%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공공부채는 GDP의 약 66% 수준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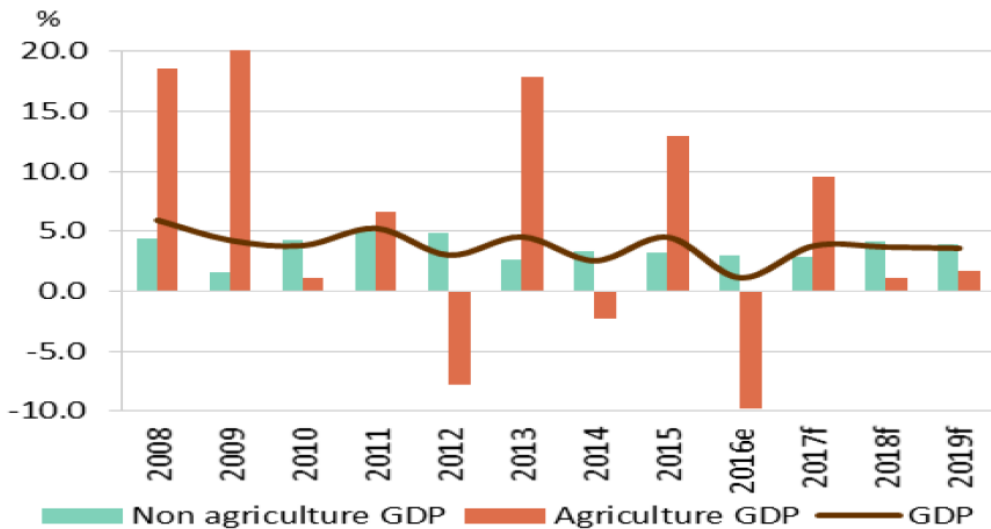
〈 2016년 모로코 주요 경제지표 〉

(단위 : 달러, %)

지표	GDP	경제성장률	1인당 GNI (PPP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	실업률
지수	1,014.5억	1.1	7,700	1.64	9.4

자료원 : 세계은행

〈 2008-2019년 모로코 GDP 〉



자료원 : 세계은행

\* 2016-2019년은 추정치임.

세계은행은 모로코가 지난 20여 년 동안 상당한 공공투자를 추진해 왔음에도 건설 등 비교역 활동에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로 인해 낮은 생산성과 구조적 실업문제

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및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개선, 공공행정 현대화, 지역 간 연계강화,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모로코가 농업생산성의 기후 취약성, 유럽경기 침체, 지역 경제 불안정 지속 가능성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농업 현대화, 산업 다변화, 서비스 분야 육성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2016년 모로코 대외교역 동향 〉

(단위: 백만 디람, %)

구분	연도		증감	
	2016	2015	금액	증감률(%)
무역				
수입	441,331	402,549	38,782	9.6
상품(FOB기준)	358,141	325,248	32,893	10.1
서비스	83,190	77,301	5,889	7.6
수출	334,670	325,112	9,558	2.9
상품(FOB기준)	184,708	181,783	2,925	1.6
서비스	149,962	143,329	6,633	4.6
* 관광	63,240	61,150	2,090	3.4
경상수지	-106,661	-77,437	(악화)29,224	(악화)37.7
교포송금(MRE)				
유입	62,205	60,157	2,049	3.4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33,050	39,920	-6,870	-17.2
유출	10,238	8,139	2,099	25.8
순유입	22,812	31,781	-8,969	-28.2

자료원 : 모로코 외환청

\* 수출과 수입 가격은 FOB로 산정, CIF로 산정할 시 6.3% 가중



## 다. 사회

- 인구 : 35,003,071(2017.11.17., 모로코 고등연구위원회)
- 인종 : 아랍-베르베르인 99%, 기타 1%
- 언어
  - 공용어 : 모로코 아랍어(테리자), 베르베르어
  - 상용어 : 프랑스어
- 종교 : 수니 이슬람

## 라. 치안

역내 정세 불안정에 따른 테러위협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치안 시스템 강화, 적극적 예방조치,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성공적인 대테러 대응을 해오고 있다. 모로코 치안당국은 지속적으로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고 있으며, 2011년 마라케시 테러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모로코에서 테러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표된 사례가 전무하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폭력적 이슬람 극단주의 근절을 위해 성직자 교육기관인 Mohammed VI Institute를 설립해 모로코 뿐 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유럽 지역의 이슬람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온건 이슬람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 마. 지리 및 기후

- 국토면적 : 710,850km<sup>2</sup> (서부사하라 지역 252,120km<sup>2</sup> 포함).
- 다양한 지리적인 환경
  - 국토의 북동 방향으로 지중해 연안, 남서 방향으로 대서양 연안에 걸쳐 있으



며,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리프(Rif) 산맥이 국토북부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발달해 있으며, 아틀라스(Atlas) 산맥은 국토의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펼쳐져 있고, 투브락산(Jebel Toubkal, 4,165m) 등 4,000m가 넘는 고봉이 있다.

- 모로코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대에 속해 있어 지진이 가끔 발생한다. 최근에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는 2004.2.25. 북부 알 호세이마 지역의 지진으로 약 6백 명이 사망했다. 1960년에는 남부 아가디르시에서 지진이 발생, 구시가지 전체가 초토화되기도 했다.
- 기후 : 국토의 북부는 지중해성 기후, 중부는 대륙성 기후, 남부는 사막 기후
  - 연중 기후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며, 우기는 11월부터 4월까지로서 온난다습(평균 15° C)하고, 건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로서 고온 건조(평균 28° C)하다. 여름 평균기온은 30° C 전후로서, 가장 더운 달은 8월이고, 가장 건조한 달은 7월로 평균 강우량이 1mm 내외이다. 반면, 겨울 평균기온은 17° C로서, 1월이 가장 춥고 12월 평균 강우량이 86mm로 가장 많다. 리프 산맥과 아틀라스 산맥에 내리는 연평균 1,500mm의 강수량을 이용하여 관개 농업이 이루어진다.

## 바. 역사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 하나로 788년 최초의 통일왕조가 수립된 후 수차 왕조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왕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 알라위트 왕조는 1665년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이다.

- 프랑스 및 스페인 보호령(1912-1956)
  - 1927년 즉위한 모하메드 5세(Mohamed V, 현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조부) 국왕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모로코의 독립을 촉구하여 1953년 프랑스 식민당국에 의해 마다가스카르로 강제 망명당함.

I

II

III

IV

V

VI

VII

VIII

○ 모로코 현대사(1956-현재)

- 1955.11.18. 모하메드 5세 국왕은 해외 망명지 마다가스카르에서 모로코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 1956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모로코의 독립을 인정
- 1961.3.3. 하산 2세(Hassan II, 현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부친) 국왕 즉위
- 1962.12.14. 헌법 제정
- 1975.11.6. 녹색대행진(35만명이 서부사하라 사막으로 행진)을 통해, 1979년 서부사하라 전역 장악
- 1992.9.14. 새헌법 채택
- 1999.7.30. 현 모하메드 6세 국왕 즉위
- 2011.7.1. ‘아랍의 봄’ 영향으로 정국 불안의 조짐이 보이자, 헌법을 개정하여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수반(총리)과 의회의 권한을 강화(국왕은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정부수반을 임명하며, 정부수반의 제청에 따라 장관 임명)

## 2 한국-모로코 관계

우리나라는 모로코와 1962년 7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바로 두 달 후에 수도 라바트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모로코 주재 한국대사관은 아프리카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대한민국 대사관이 되었다. 이는 당시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모로코는 1988년에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2017년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5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두 나라는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양국 간 경제관계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초기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 모로코에 진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지법인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등은 현지 수입상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한국의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 중장비, 휴대폰 등은 매우 인기가 높다. 이들 품목들은 거의 모두가 모로코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도처에서 쉽게 눈에 띈다. 거리를 누비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집집마다 매달려 있는 에어컨 실외기, 호텔 방마다 비치되어 있는 한국산 TV, 건설 현장의 중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대모로코 수출은 5.44억불, 수입은 1.58억불을 기록했다. 수출이 전년 대비 55.5 % 증가하면서 3.8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석유화학제품, 철구조물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동괴 및 스크랩, 의류, 반도체, 수산물 등이다. 현재 모로코에서 우리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가전제품 등은 대부분 제3국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들 품목들을 우리 수출에 포함시킬 경우 총 수출은 약 1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로 한국 기업들은 2012년부터 플랜트 건설 시공사로 모로코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대우건설은 2015년에 Jorf Lasfar에 7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Safi에 14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Safi

발전소는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Jorf Lasfar 소재 모로코 인 광석공사(OCP) 비료공장 단지에 2개의 비료공장을 건설하였다. 삼성물산도 동 단지에 2개의 비료공장을 짓고 있으며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OCP 비료공장 단지와 항구 간 비료 이송장치를 건설하였다. 우리 건설기업들의 활동은 다양한 플랜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최근 한국 기업들은 모로코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모로코에 오고 있다. 모로코의 유리한 투자여건을 활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인근 유럽 등지에 수출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전장장치를 생산하는 유라코퍼레이션이 2016년 7월에 처음으로 Meknes에 문을 열었다. 또 다른 자동차 전장장치 생산업체인 대동시스템은 현재 Tanger 자동차 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자동차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핸즈코퍼레이션은 2017년 8월에 대규모 모로코 투자진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Tanger 자동차 산업단지에 약 380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고 연 600 만개의 자동차 휠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2019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모로코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등 제반분야에서 물적 인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5.)
- 무역협정(1976. 5.)
- 문화과학협력협정(1977)
- 사증면제협정(1993. 8.)
- 이중과세방지협정(2000. 6.)
- 투자보장협정(2001. 5.)
- 항공협정(2006. 6.)
- 관광협력협정(2006. 6.)
- 사회보장협정(체결 교섭 진행 중)

양국 간 교류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모로코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에 약 3만 5천여 명의 우리 국민이 모로코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

해 1만여 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2017년에는 1/4분기에 1만 5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보아 총 방문객은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문객 증가는 주로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모로코와 나누기 위해 1991년에 모로코에 KOICA 사무소를 개설하고, 프로젝트 사업, 모로코 공무원 연수생 초청사업, 봉사단 파견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모로코정부를 지원하여 모로코에서는 최초로 카사블랑카에 고급자동차기술훈련원을 개설하였다. 그 후 모로코정부는 이 훈련원을 모델로 하여 자체적으로 3개의 훈련원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2018년에는 우리정부와 모로코정부가 공동으로 카사블랑카 자동차기술 훈련원에 아프리카 국가 연수생들을 초청하여 기술 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우리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삼각협력이다.

모로코 젊은이들의 K-Pop 등 한류 사랑은 대단하다. 스스로 K-Pop 동호회를 조직하여 함께 즐기고, 매년 경연대회를 열기도 한다. 현재 모로코 9개 대학에 한글 수업이 개설돼 있으며, 주로 KOICA 봉사단원들이 가르치고 있다. 1970년대 초에 한국인 사범들을 통해 들어온 태권도의 인기는 대단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1,200여개의 태권도 도장이 있다.

〈 2014-2016년 한-모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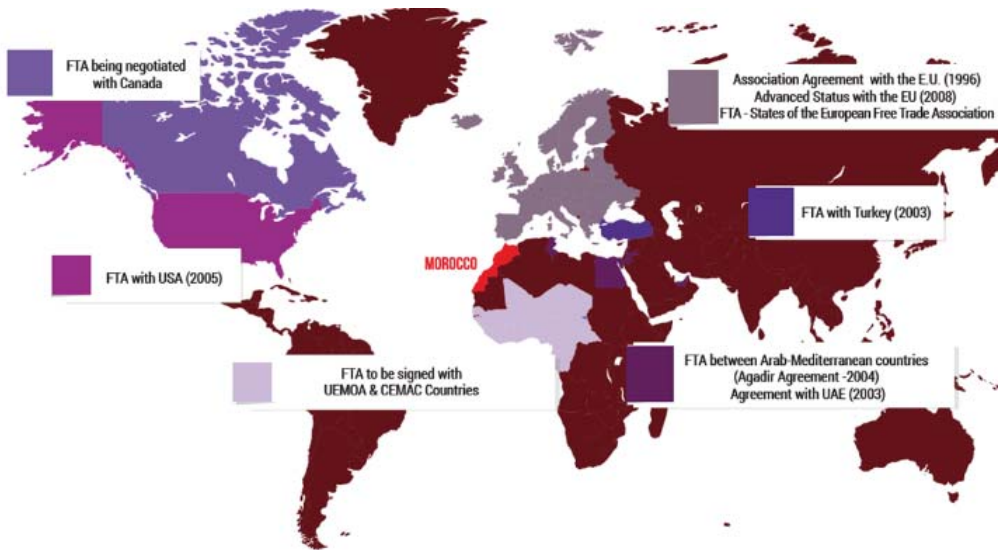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6
對모로코수출 (증가율)	308	349	544
	(5.4)	(13.4)	(55.5)
對모로코수입 (증가율)	237	154	158
	(43.0)	(▽34.9)	(2.8)
수 지	71	195	385

자료원 : 무역협회



### 3 모로코 투자환경

#### 가. 모로코 투자환경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모로코는 14km에 불과한 지브롤터 해협으로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교통, 물류, 생산, 수출 허브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로코는 지난 십여 년 동안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북아프리카 지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EU, 미국, 터키, 아프리카, 걸프 및 지중해 지역 55개 국가들과 FTA<sup>1)</sup>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투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 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자동차,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화 촉진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모로코는 EU(2012년 관세 전면 철폐), 미국(2006년 발효, 2016년 관세 전면 철폐,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한 유일한 FTA), 터키(2016년 발효), 이집트/요르단/튀니지(Agadir 협정, 2007년 발효), UAE를 비롯한 걸프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포함 55개 이상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협상 진행 중).



〈 모로코 및 주변 주요 국가 경쟁력 지수 〉

Country/Region	BASIC REQUIREMENTS											
	GCI 2016-2017		1st pillar: Institutions		2nd pillar: Infrastructure		3rd pillar: Macroeconomic environment		4th pillar: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5th pilla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Rank	Value	Rank	Value	Rank	Value	Rank	Value	Rank	Value	Rank	Value
Morocco	70	4.20	50	4.21	58	4.25	49	5.08	77	5.63	104	3.55
Algeria	87	3.98	99	3.50	100	3.28	63	4.83	73	5.71	96	3.87
Tunisia	95	3.92	78	3.81	83	3.74	99	4.16	59	5.92	93	4.02
Egypt	115	3.67	87	3.65	96	3.36	134	2.68	89	5.45	112	3.27
North Africa average		3.95		3.79		3.66		4.19		5.68		3.68

자료원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WEF 2016-17 경쟁력 지수)

\* 모로코, 북아프리카 국가 중 1위

한국과 모로코 간 교역은 2016년 말 현재 약 7억불 규모로 한국이 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을 모로코에 수출하면서 약 4억불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제3국에서 생산하여 모로코에 수출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0억불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한-모로코 교역 현황 〉

	규모	주요 품목
수출	5.44억불	자동차, 알루미늄조각품, 건설중장비, 철구조물, 석유화학제품 등
수입	1.58억불	동괴/스크랩, 의류, 생선, 집적회로반도체 등

자료원 : 무역협회(2016년 말 현재)

모로코 정부의 투자혜택, 유럽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제도적(FTA), 지리적 환경, 우수한 인프라 시설 및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모로코에 투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1995년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으로 불리는 모로코의 투자 혜택 관련법을 제정하여 농업분야<sup>2)</sup>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동 투자

2) 모로코 경제 활동 중 주요부문을 차지하는 농업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다.

현장을 개정<sup>3)</sup>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주요 조치<sup>4)</sup>를 포함한 산업투자 지원 혜택 및 제도를 강화<sup>5)</sup>하였다.

대표적인 투자 관련 혜택으로는 각종 세금(지방세, 재산세, 소득세 등) 감면 및 토지 취득에 대한 등록수수료 감면, 등록절차 간소화, 관련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VAT) 및 수입관세 면제, 투자 진출 시 소요되는 물품 수입에 대한 낮은 관세율 부과 등이 있다. 모로코 정부는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하면서 진출기업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1999년 ‘하산 2세(Hassan II<sup>6)</sup>) 기금’을 창설하여 제조업분야(주로 자동차, 전자제품, 항공, 생명공학)에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2015년 ‘투자진흥기금(FDII<sup>7)</sup>)’을 통해 2020년까지 기업 투자를 위해 200억 디람 상당을 지원기로 결정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투자 혜택 외에 주요 분야 진출기업은 특별 혜택이 주어지거나 정부와의 특별 협정에 의해 관리된다. 특별 혜택이 부여되는 분야는 전자, 건설, 광업, 농업, 호텔, 수공업, 섬유, 석유<sup>8)</sup> 등 관련 산업이며 동 혜택은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또한, 유럽에 인접한 ‘탕제 자유무역지대(Tanger Free Zone)’를 비롯한 전국 70개 산업공단 및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모로코 정부는 2002년부터 모로코 주요 16개 지역에 지역투자센터(RIC: Regional Investment Centre)를 운영해 투자 관련 신고절차 단순화, 투자 혜택 및

3) 핵심 내용은 영문본 챕터 VIII. 부록 1. 2016년 투자현장 개정 주요 내용 참고

4) 신규 수출기업에 대해 5년 간 법인세 면제, 12개 도(Region) 당 각 한 개 이상의 자유무역지대 개발, 자유무역지대 이외 지역에 위치한 수출산업에 자유무역지대 지위 부여, 하청업체에 간접수출업자 지위 부여, 저개발 지역에 다양한 지원 실시 등이 이에 해당 된다.

5) 모로코 수출청(Maroc Export), 모로코 투자청(AMD), 카사블랑카 전시기관(OFEC)을 통합한 모로코 수출·투자 진흥청(AMDIE) 설립, 전자 정부-디지털 경제 강화를 위한 디지털 개발청 신설, 산업부 산하 산업생태계 개발 전담 부서, 통상부 산하 국내외 무역 전담 부서 신설 등이 이에 해당 된다.

6) Fonds Hassan II: 투자금 1천만 디람 이상의 제조업분야 진출 업체가 하산 2세 재단과 투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물 구입비 최대 30%(단, 세전 상한액 2천 디람/m<sup>2</sup>), 신규 장비 매입비 최대 15%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7) Fonds Développement Industriel et de l'Investissement: 투자금 2억 디람 이상, 정규직 최소 250개 이상 창출, 기술이전, 환경보호, 시·도 지정 경제발전 우선지역 입주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부지 매입액의 최대 20%, 장비 관련 지출의 최대 5%, 직업 교육 비용의 최대 20%를 동 기금에서 지원한다.

8) 모로코 정부는 ‘석유법(Petroleum Code)’을 제정해 석유 개발회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시장 진출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외국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지역투자센터(RIC)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전자정부 사이버 네트워크(e-Government Cyber Network)’와 연결돼 있어 지역투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 및 기타 문서 준비 등 창업절차 진행시 2일 이내에 창업 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 모로코 정부는 국가비즈니스환경위원회(CNEA<sup>9)</sup>)를 개설해 새로운 사업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맞는 국가기관 접촉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1993년부터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래로 약 100개의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으며, 발전 플랜트, 재생에너지, 철도·항만, 담수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7-18년 국제 경쟁력 지수<sup>10)</sup>에 따르면 모로코는 총 137개국 중 71위로 아프리카 국가 중 3위<sup>11)</sup>, 북아프리카 국가 중 1위<sup>12)</sup>를 차지하였다.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모로코는 총 137개국 중 5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교통인프라는 46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8)에서 모로코는 회사설립, 조세, 국경간 무역, 건축허가 등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총 190개국 중 69위(67.91점)<sup>13)</sup>, 북아프리카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타 자동차·항공산업 등 제조업, 농업, 수산, 관광, 물류, 정보통신 등 16개 중점 개발 분야에 대한 중기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9) Comité National de l'Environnement des Affaires: 사업자 대상 자문 활동 외 모로코 진출기업 관련 법 실행 및 World Bank와 공동으로 사업환경조사를 실행한다.

10)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발간. 2016-17년도 70위

11) 아프리카 대륙 중 1위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2위 보츠나와(63위)

12) 북아프리카 지역 중 2위 알제리(86위), 3위 튀니지(95위), 4위 이집트(100위)

13) 모로코는 MENA 지역 국가 중 3위(UAE 21위, 바레인 66위), 아프리카 지역 국가 중 3위(모리셔스 25위, 르완다 41위),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 중 1위(튀니지 88위, 이집트 128위, 알제리 166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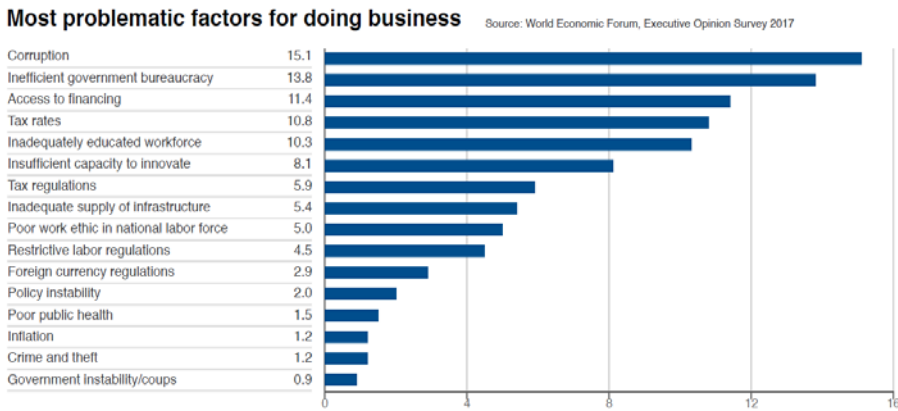
〈 모로코 주요 산업정책 추진 동향 〉

분야	정 책	내 용
제조	Emergence Plan (2005-14)	- 자동차, 항공, 전자, 아웃소싱 유치 - 주력분야(섬유, 식품) 수출산업 육성
	Industrial Acceleration Plan (2014-20)	- Emergence Plan에 이어 자동차, 항공, 재생에너지, 아웃소싱 등 12개 주요 산업 촉진 - 각 산업 별 고부가가치 생태계구축
농업	Green Morocco Plan	- 농업용수(담수) 개발 확대 - 농업 기술 및 장비 현대화 지원
관광	Azur Plan	- 관광단지(리조트) 개발 - 관광단지 기자재 수입관세 면제
유통	Rawaj 2020	- 현대식 유통, 물류 시스템 도입 - 유통개발기금 조성 및 물류센터 확장
정보	Maroc Digital 2020	- 전자정부(e-Gov) 구축 - 유무선 통신망 대대적 확충
에너지	태양에너지	- 2020년까지 모로코 내 총 에너지 공급량의 42%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량 최소 2000MW 확보 - 2015년에 160MW 태양열 발전소 준공(Ouarzazate 북부 10km지역)
	풍력에너지	- 2020년까지 모로코 내 풍력에너지 생산량 2000MW 확보 - Koudia Al Baida(300MW), Tiskrad(300MW), Tanger(150MW), Taza(150MW), Boujdour(100MW) 프로젝트 진행 중

자료원: 모로코 투자청

그러나 모로코 정부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숙련된 노동력 부족, 낮은 수준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정부 조달 투명성 결여, 수입대금 선지급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7-18년 국제 경쟁력 지수(GCI14)에 따르면 모로코 진출 시 문제점으로 부패가 1위, 비효율적 관료주의가 2위, 재정자금 접근성이 3위로 꼽혔다.

〈 모로코 진출 시 주요 문제점 〉



Note: From the list of factors, respondents to the World Economic Forum's Executive Opinion Survey were asked to select the five most problematic factors for doing business in their country and to rank them between 1 (most problematic) and 5. The score corresponds to the responses weighted according to their rankings.

자료원 : Doing Business 2017-18(세계경제포럼)

또한 한국과 상이한 모로코의 법률 및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 모로코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로코의 법률 시스템은 프랑스, 스페인, 이슬람 율법이 혼합돼 있고, 일반적으로 법령이 아랍어 및 불어본만 있어 모로코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모로코는 국제 및 국내 중재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모로코 외환 관리 규정에 따르면 모로코 수입업체는 20만 디람(약 2만 불) 이상 수입 시 선적 운임이 포함된(FOB) 가격의 40%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

14)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수입대금에 대한 선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5)</sup>.

## 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7년 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2016년 대(對)모로코 외국인 투자는 23억 달러로 전년 32억 달러 대비 29% 감소했다. UNCTAD는 대모로코 투자가 수출 지향적 FDI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2016년 유럽 시장 침체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여 투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 2015-16년 대(對)모로코 외국인 투자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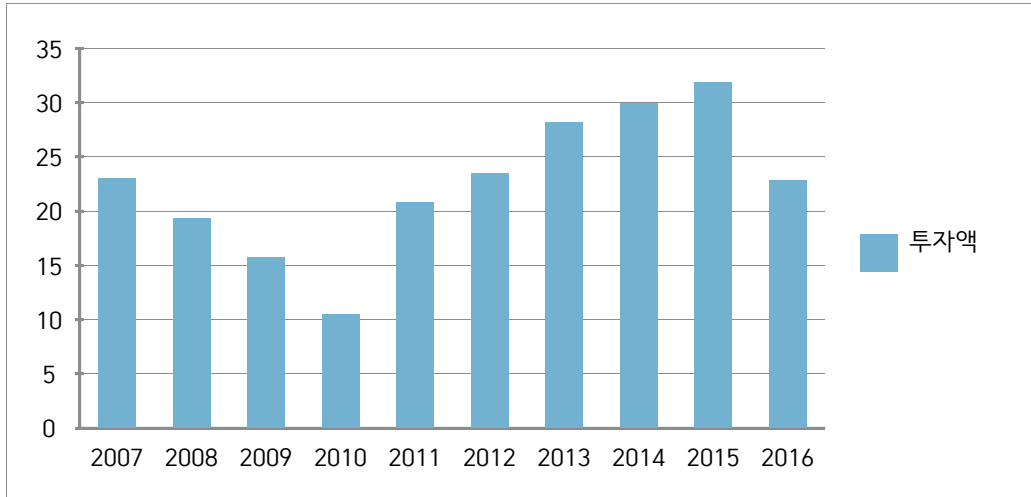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금액	비율
유량 (Flow)	유입	3,255	2,322	-933	-29
	유출	653	659	6	1
저량 (Stock)	유입	48,696	54,784	6,088	13
	유출	4,555	5,359	804	18

자료원: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15)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 수출포털(<https://www.export.gov/article?id=Morocco-Methods-of-Payment>)

〈 2007-16년 대모로코 외국인 투자 동향 〉

(단위: 십억 디람)



자료원: 모로코 투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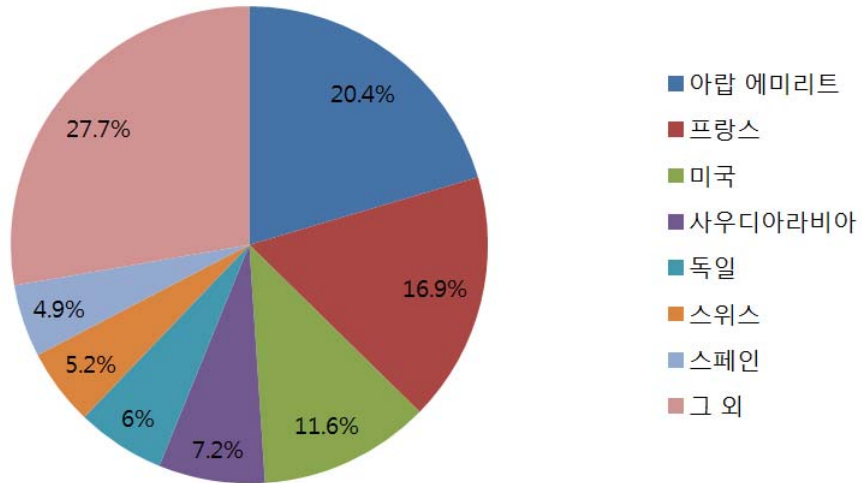
그러나 MENA 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안정된 정세 및 경제 발전, 지속적인 공공투자 등에 힘입어 MENA 지역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sup>16)</sup>. 특히, 모로코 정부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모로코 유치를 다양한 투자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 외환청이 발표한 2015년 대모로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국가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16) 모로코 진출 주요 글로벌 기업 : Renault, PSA(자동차), Veolia, Bombardier(항공기), Procter&Gamble(의약), Unilever, Colgate(소비재), Pfizer, MSD, Sanofi-Adventis(제약), Cargill, Danone(농식품), Chevron, Kosmos(정유) 및 기타 정유 및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다수

〈 2015년 대모로코 외국인 투자 주요 국가별 비중 〉

(단위: %)



자료원: 모로코 외환청(Office des Changes)<sup>17)</sup>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 및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주요 투자국이며, 미국, 독일 등의 대모로코 투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다. 주요 산업단지

### 1) Tanger Automotive City

탕제 자동차 산업단지(Tanger Automotive City)는 모로코 북부 도시 탕제(Tanger) 지역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260 헥타르이다. 동 산업단지는 자동차산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인프라, 자유무역지대, 단일창구제도(Single Window System)<sup>18)</sup> 등과 같은 혜택들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17) 주모로코프랑스대사관 자료 재인용

18) 원스톱(One-stop)서비스의 일종으로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제도를 말한다.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 확인 자료를 일괄 처리한다.



동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기업은 원스톱 샵(One-stop shop) 서비스, 최초 5년 간 법인세(IS)·소득세(IR) 면제 및 이후 20년 간 경감된 고정 세율 혹은 면제 세율 부과, 최초 15년 간 부가가치세(VAT)·사업세(Business Tax)·도시세(Urban Tax) 면제, 외화 거래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sup>19)</sup> 그 외 투자진흥기금(FDII) 및 하산 2세 기금을 통해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sup>20)</sup>.

〈 Tanger Automotive City 진출 주요 기업<sup>21)</sup> 〉

기업명	국적	제품
Furukawa Electric	일본	자동차 부품(전장장치)
Valeo Vision	프랑스	자동차 부품(조명)
Europac	스페인	포장재
ALFA GOMMA	이탈리아	유압호스
Siemens	독일	풍력발전기 날개
Kansai Paint	일본	도장

자료원: Tanger Automotive City

19) 세부 내용은 본문 I. 모로코 투자환경>5. 주요 투자혜택>나.자유무역지대 혜택 참고

20) 세부 내용은 본문 I. 모로코 투자환경>5. 주요 투자혜택>가. 투자진흥기금 및 나. 하산 2세 기금 참고

21) 한국기업 대동 시스템, 핸즈 코퍼레이션이 Tanger Automotive City에 투자를 결정하고 생산 공장 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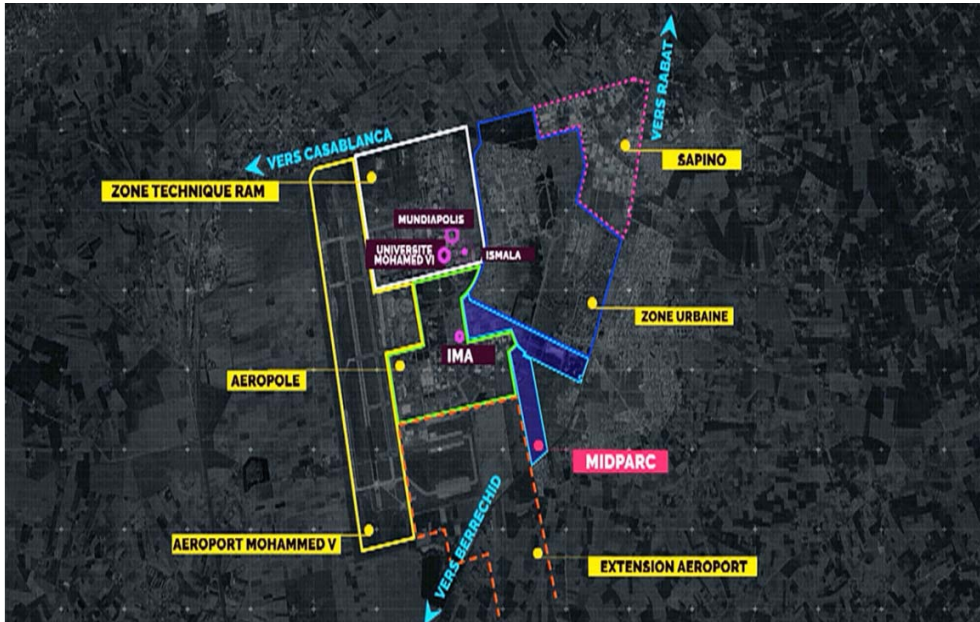


자료원: Tanger Automotive City

또한 동 산업단지는 르노(Renault) Tanger Med 공장과 2km, Tanger-Med 항구와 30km, 탕제자유무역지대(Tanger Free Zone)와 20km, 탕제 공항과 60km, 4번 고속도로(A4)와 10km, Ksar Sghir 기차역과 40km 거리에 위치한다.

특히 Tanger-Med 항구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브롤타 해협 남쪽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 Said 항구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은 컨테이너 항구로서 머스크(Maersk), CMA-CGM 같은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진출해 있다. 머스크 소유의 APM 터미널은 탕제에 연간 5백만 TEU 규모의 아프리카 대륙 내 최초의 자동화 환적 터미널 MedPort Tangier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동 터미널이 완공되면 현 APM 터미널 시설을 보완하여 탕제 항구가 연간 9백만 TEU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모로코가 역내 물류 및 생산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Midparc



자료원: Midparc

Midparc는 카사블랑카 근교 Nouaceur에 위치한 항공산업 단지로, 총면적이 124.4 헥타르에 달한다. 동 산업단지는 원스톱 샵(One-stop shop)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진출 결정 후 공장 가동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워크숍(Start-up workshop)을 통해 진출 예정 기업의 필요 기기 수령, 조정 및 테스트 등이 가능하다. 또한 동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기업에 최초 5년 간 법인세(IS)·소득세(IR) 면제 및 이후 20년 간 경감된 고정 세율 혹은 면제 세율 부과, 최초 15년 간 사업세·지방세 면제, 외환 거래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sup>22)</sup> 그 외 투자진흥기금(FDII) 및 하산 2세 기금을 통해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sup>23)</sup>.

22) 세부 내용은 본문 I. 모로코 투자환경>5. 주요 투자혜택>마. 자유무역지대 혜택 참고

23) 세부 내용은 본문 I. 모로코 투자환경>5. 주요 투자혜택>가. 투자진흥기금 및 나. 하산 2세 기금 참고

< Midparc 진출 주요 기업 >

기업명	국적	품목
Bombardier	캐나다	항공기
Stélia	프랑스	항공부품
Ratier Figeac Aero	프랑스	항공부품(온도계기판)
NSE Aero	프랑스	항공부품(케이블)
Alcoa	미국	알루미늄
Hexcel	미국	항공부품(복합소재)
Tecalemit Aerospace	프랑스	항공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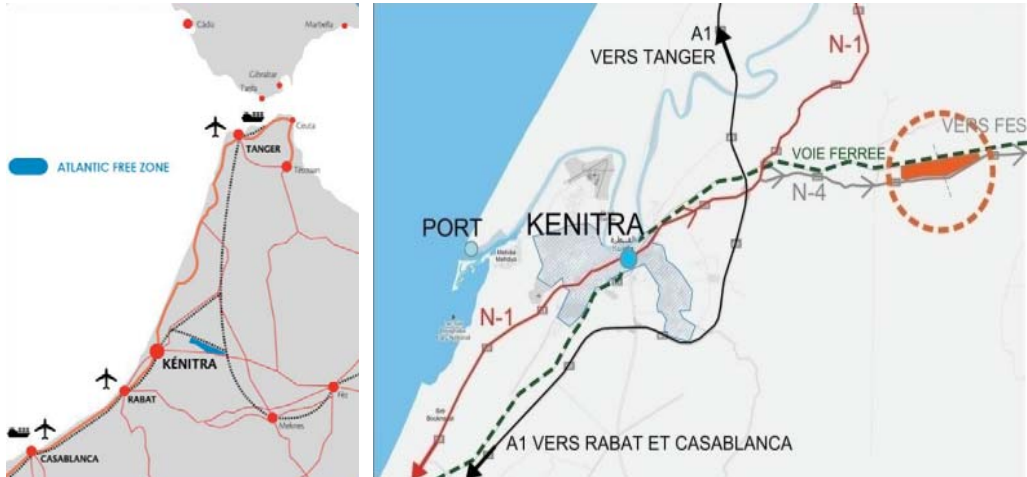
자료원 : Midparc

동 산업단지는 모로코 최대 국제공항인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Mohammed V) 공항에서 5km, 7번 고속도로(A7)와 8km, 카사블랑카 항구와 30km, 9번 국도(RN9)와 2.5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자료원: Midparc

### 3) Atlantic Free Zone



자료원 : Atlantic Free Zone

대서양 자유무역지대(Atlantic Free Zone)는 2005-2014 모로코 경제도약전략 (Plan d'Emergence)의 일환으로 추진된 모로코 최초의 신세대 통합 플랫폼(new generation integrated platform)으로 주로 자동차 및 전자산업 분야 기업을 위한 자유무역지대이다. 총 면적은 345 헥타르에 달하며 카사블랑카에서 북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케니트라 지방에 위치해 있어 라바트-살레(Rabat Salé) 공항과 50km, 1번 고속도로(A1)와 14km, 카사블랑카 항구와 160km 거리에 있다. 탕제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포함하여 주요 교통망과 연결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전자산업 관련 기업 및 동 기업들을 위한 수출·물류·지원 서비스(유지 보수, 컨설팅 회사, 비즈니스 센터 등) 관련 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하다.

현재 100 헥타르 부지에 PSA 및 협력사가 연간 자동차 20만대, 엔진 2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9년 1단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tlantic Free Zone 진출 주요 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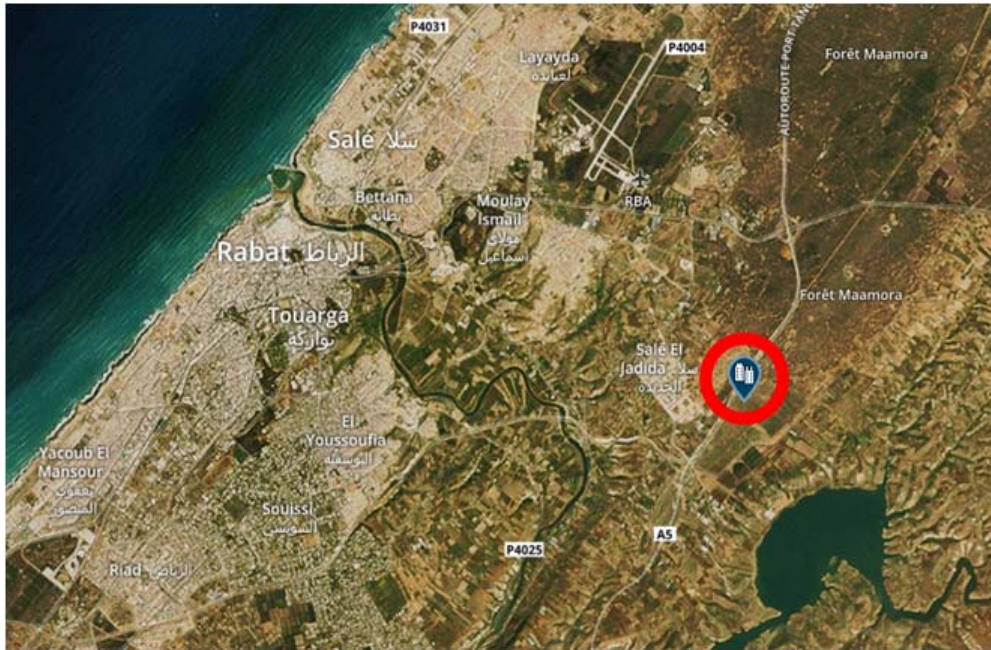
기업명	국적	제품
PSA(Peugeot Citroën)	프랑스	자동차
Saint Gobain	프랑스	자동차부품(유리)
Delphi	미국	자동차부품(케이블)
Hirschmann Automotive	오스트리아	자동차부품(케이블)
Fujikura Automotive	일본	자동차부품(케이블)
Coficab	튀니지	자동차부품(케이블)
Plastic Electromechanic Company	튀니지	자동차부품(케이블)
Kromberg & Schubert	독일	자동차부품(케이블)
Nanjing Xiezhong Group	중국	자동차부품(케이블)
MTA	이탈리아	자동차부품(유리)
Asahi Glass	일본	자동차부품(유리)
Lear(모로코내 4번째 공장)	미국	자동차부품(케이블)

자료원 : Atlantic Free Zone

4) Technopolis Park

Technopolis Park는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동쪽으로 약 14km 거리의 살레(Salé)에 위치한 오프쇼어링 관련 산업단지로서, 총 면적은 107 헥타르이다. 2005-2014 모로코 경제도약전략(Plan d'Emergence)의 일환으로 2008년에 건설된 동 산업단지에 2017년까지 40여개의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자료원: Mapbox

〈 Technopolis Park 진출 주요 기업 〉

기업명	국적	제품
AXA	아일랜드	보험
Capgemini	프랑스	컨설팅
Lear Corporation Automotive	미국	자동차 부품
Faurecia	프랑스	자동차 부품
Logica	영국	IT 서비스

자료원 : Technopolis Park



## 5) Casablanca Finance City



자료원: Casablanca Finance City

카사블랑카금융도시(CFC)<sup>24</sup>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위치한 경제 및 금융 허브로, 국제기구와 투자자들에게 대(對)아프리카 투자를 위한 관문으로 카사블랑카를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카사블랑카금융도시는 금융 회사,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15년 모로코 국적 투자자들의 대(對)아프리카 외국인직접투자 중 38%가 CFC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카사블랑카금융도시는 2016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아프리카 대륙 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카사블랑카금융도시 입주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서 및 사업 계획서를 카사블랑카금융도시기구(CFCA, Casablanca Finance City Authority) 내의 사업개발팀에 송부해야 한다. 동 기구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최대 45일 이내 카사블랑카금융도시 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할 경우 지원 기업은 카사블랑카금융도시 입주 자격(Statut CFC)을 취득하게 된다. Statut CFC를 취득한 기업은 매년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입주비(CFC status annual fees)를 납부해야 한다.

24) 카사블랑카금융도시(CFC)는 법령 제44조 10항에 따라 2010년 12월 추진된 사업이며, 동 법령은 2014년 6월 68조 12항에 의해 개정되었다.



6) 모하메드 6세 탕제 산업단지(Mohammed VI Tanger Tech)<sup>25)</sup>



자료원: Moroccan World News<sup>26)</sup>

2017년 3월 20일 모하메드 6세 국왕 참석 하에 모로코 정부와 중국 Haite(海特) 그룹은 모로코 북쪽 항구도시 탕제(Tanger)에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하메드 6세 탕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 약 200개 유치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개발 사업은 향후 10년에 걸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1단계로 항공, 자동차,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및 주거단지 건설(500 헥타르), 2단계로 물류 자유지대 건설(500헥타르), 3단계로 산업단지 확대(1000 헥타르)를 계획하고 있다.

25) 동 사업은 2016년 5월 모하메드 6세 국왕의 중국 공식방문 계기에 모로코 정부와 Haite 그룹간 모로코 내 산업/주거단지 설립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음.

26) <https://www.moroccoworldnews.com/wp-content/uploads/2017/03/Mohammed-VI-Tangiers-Tech-City-project-640x414.jpg>

## 라. 유망 진출 업종

모로코 진출 유망 산업분야로는 유럽 및 아중동지역 수출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생산/부품), 항공산업, 에너지사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 1) 자동차산업

모로코 자동차 산업은 2015년 전체 GDP의 4%<sup>27)</sup>, 2016년 전체 수출액의 24.4%<sup>28)</sup>를 차지하며 모로코 제1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했다. 2016년 기준 모로코 자동차산업 연간 수출액은 약 546억 디람으로 전년 대비 11.9%(2015년 약 485억 디람, +20.7%) 증가했다. 산업화 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모로코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백만대 자동차 생산설비를 갖추고 부품의 현지 조달률 80%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진출해 있는 르노 및 PSA 이외에도 1~2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생산공장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2월에 완공된 탕제 소재 르노 자동차 생산 공장(Dacia 브랜드 자동차 생산)은 연간 약 4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2017년 10월 백 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 그 외에도 카사블랑카에 소재한 Somaca(Société marocaine de construction automobile) 공장<sup>29)</sup>은 르노 Sandero, Logan, Kangoo 등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PSA 케니트라 공장<sup>30)</sup>은 연간 자동차 20만대, 엔진 20만개 생산설비를 갖추 예정이다.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르노 및 PSA 완성차는 프랑스, 스페인, 터키, 튀니지, 이집트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지로 주로 수출된다. 모로코는 EU, 미국, 터키를 비롯하여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27) Economies Africaines, <http://www.economiesafricaines.com/les-territoires/maroc/les-secteurs-d-activite/le-secteur-industriel>

28) Office des Changes(모로코외환청), 'Indicateurs Mensuels des Échanges Extérieurs Année 2016'

29) 1959년 설립, 총 면적 29만m<sup>2</sup>, 연간 생산능력 7만 5,000대

30) PSA 모로코 공장은 연간 자동차 2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자동차의 90%는 터키, 튀니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 수출하고, 모로코 국내시장에는 10%를 공급할 계획이다.

등 상당수 아중동지역 국가들을 포함한 55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모로코산 자동차는 이들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다.

〈 모로코 주요 자동차 산업 관련 생산업체<sup>31)</sup> 〉

	제조사	품목	국적
완성차	PSA(Peugeot Citroën)	자동차	프랑스
	Renault	자동차	프랑스
	Somaca	자동차(르노 제품)	모로코
부품	Delphi Packard	케이블	미국
	Denso Thermal System	냉방기	일본
	Fujikawa Automotive	케이블	일본
	Jobel Sa Maric	의자	스페인
	Lear Automotive	케이블	미국
	Leoni	케이블	독일
	Proinsur	조립(플라스틱)	스페인
	Relats Maroc	틀, 차체 부품	스페인
	Schlemmer Maroc	틀, 차체 부품	독일
	Sews Maroc	전선	일본
	Valeo Vision	조명	프랑스
	Yazaki	케이블	일본
	Yura Corporation	케이블	한국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모로코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매년 평균 약 13만대의 자동차가 판매되는 약 15억 유로 규모의 시장으로 평가되며, 중저가와 고가로 양분된다. 모로코 자동차 시장은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EU-모로코 간 관세 완전 철폐(2012년 3월), 르노 및 PSA의 모로코 현지 공장 설립 등의 영향으로 유럽 브랜드가 50% 이상을 점유<sup>32)</sup>하고

31) 알파벳 순, 2017년 11월 현재 생산 활동 중이거나 설립 중인 공장

32) AVIAM(모로코 자동차 수입 협회)

있다. 2016년 모로코 국내 브랜드 별 자동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중저가 브랜드인 Dacia가 16.35%(23,363대)의 점유율로 1위를, 르노가 12.82%(18,320대)의 점유율로 2위를, 포드(11.51%, 16,442대)와 PSA(7.63%, 10,896대)가 각 3, 4위를 기록했다. 현대는 점유율 6.42%(10,482대)로 폭스바겐(5위, 7.51%, 10,736대)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르노에 이어 PSA 또한 아프리카·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기지로 모로코를 선정하고, 동 사에 납품하고 있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협력사들이 모로코 투자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모로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EU와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모로코에 진출한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동시에 유럽시장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한국기업으로는 유라 코퍼레이션이 2016년부터 메크네스에서 자동차 전장장치(전기 케이블)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전장장치(제어 케이블) 생산기업인 대동케이블이 2019년 초부터 양산을 목표로 탕제 자동차생산단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자동차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핸드즈 코퍼레이션은 탕제 자동차생산단지에 연 600만개 생산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명 : YURA MOROCCO</li> <li>- 설립일 : 2016.4.6.</li> <li>- 주소 : YURA CORPORATION MOROCCO 50000, Quartier Industriel Marjane II Meknes</li> <li>- 직원수 : 약 900명(2017년말 현재)</li> </ul>
	

## 2) 항공산업

모로코 국영항공사인 Royal Air Maroc의 항공기 정비 사업으로부터 시작된 모로코항공산업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1년 10개 외국업체가 모로코에 진출했으며, 2016년 기준 Airbus, Boeing, Safran, EADS 등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총 120개 항공산업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모로코는 세계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EU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동 지역 항공기업들의 모로코 투자 진출이 항공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항공산업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촉진계획<sup>33)</sup>의 일환으로 2013년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 인근 Nouaceur 지역 소재 Midparc<sup>34)</sup>를 기존 70 헥타르에서 125 헥타르로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300개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모로코 교통부 장관은 2014년 11월 항공산업 발전 정책 ‘Ajwae 2035<sup>35)</sup>’ 를 발표했다.

### 〈 모로코 항공산업 주요 기업<sup>36)</sup> 〉

<b>제조 산업</b>	Alcoa, Ateliers de Haute Garonne, Bombardier, Daher, Mecachrome, Nexans, Ratier Figeac Aero, Sogerma Maroc Avitation, Safran, Société de précision mécanique aéronautique, Souriau, Stelia
<b>MRO 산업 (항공기 정비 서비스)</b>	Casablanca Aéronautique, Zodiac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33) 세부 내용은 본문 세부 내용은 본문 I. 모로코 투자환경>4. 산업분야별 발전 계획·전략>가. 2014-2020 산업촉진계획 참고

34) 세부 내용은 본문 I. 모로코 투자환경>3. 모로코 투자환경>다. 주요 산업단지>2) Midparc 참고

35) 동 정책은 항공 교통 보강, 인프라 향상, 자본 강화, 거버넌스 개선, 모로코 공항 수용능력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36) 알피벳 순, 2017년 11월 현재 생산 활동 중인 공장

### 3) 기타 제조업

모로코 정부는 취약분야인 제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 제정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외국 기업 공장 유치에 힘쓰고 있다.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및 유럽과 접근성이 높고, 주요 항구인 탕제 항만과 유럽 대륙의 거리가 약 14km에 불과하여 유럽 시장을 겨냥한 외국 기업들의 모로코 공장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에 진출한 주요 외국 제조업체들은 자동차·항공산업 분야 외 의약품,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다.

〈 모로코 자동차·항공산업 외 주요 제조 공장<sup>37)</sup> 〉

제조사	국적	제품	위치
Bayer	독일	의약 제품	카사블랑카
Europack	스페인	포장재	탕제
Fagor	스페인	가전제품	모하메디아
Furukawa Electric	일본	광섬유 케이블	탕제
Pfizer	독일	의약품	엘 자디다
Simone	스페인	전기기기	탕제
Sanofi-Aventi	프랑스	의약 제품	카사블랑카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모로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 하에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 제약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제도약전략(Plan d'Emergence)을 통해 오프쇼어링(10만 명 고용 및 150억 디람 부가가치 창출), 자동차산업(7만-8만 명 고용 및 100억 디람 부가가치 창출), 항공우주산업(1만 명 고용 및 30억 디람 부가가치 창출), 전자산업(1만 명 고용 및 50억 디람 부가가치 창출), 섬유산업(5만 명 고용 및 50억 디람 부가가치 창출), 농·식품업(6천 명 고용 및 50억 디람 부가가치 창출) 등 주요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본격적인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4-2020 산업촉진계획<sup>38)</sup>을 추진 중이다.

37) 알파벳 순, 2017년 11월 현재 생산 활동 중인 공장

38) 세부 내용은 본문 세부 내용은 본문 I. 모로코 투자환경>4. 산업 분야별 발전 계획·전략>가. 2014-2020 산업촉진계획 참고

## 4

## 산업 분야별 발전 계획·전략

가. 2014-2020 산업촉진계획(Industrial Acceleration Plan)<sup>39)</sup>

2014-2020 모로코 산업촉진계획은 글로벌 가치사슬 제고, 산업 다각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조를 통한 효율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계획은 모로코 산업 육성,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20년간 동 계획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모로코 국내 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 14%에서 2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촉진계획은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섬유산업, 가죽산업, 화학산업, 제약산업, 건설업, 철강·기계산업, 연안서비스업, 재생에너지, 전기 및 전력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산업촉진계획은 ①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산업별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 ② 중소기업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각 분야별 지원 ③ 국제시장에서 모로코의 위치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 39) 모로코 산업화 중기 전략 연혁

- ① 2005-2014 모로코 경제도약전략(Plan d'Emergence) : 10년간 44만 명 신규 고용 창출, 무역적자 50% 감축, GDP 1.6% 추가 상승을 목표로 연안서비스업,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산업, 전자산업, 섬유산업, 농식품업 중점 육성 발표. 산업정책 ⇨ 산업구조 변화 ⇨ 수출구조 변화 ⇨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산업별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 추진의 발전 단계를 목표로 함.
- ② 2009-2015 모로코 2단계 경제도약전략(Plan d'Emergence II) : 총 125억 디람을 투자해 2015년까지 22만 신규 고용 창출(아웃소싱 서비스 산업 7만 명, 자동차산업 7만 명, 항공부품산업 15천명, 전자부품산업 9천명, 섬유가죽산업 32천명, 농식품산업 24천명),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제조업 기술향상(모로코-프랑스 엔지니어 학교 협력 확대, 카사블랑카 항공학교 설립),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추진
- ③ 2014-2020 산업촉진계획: 모로코 정부는 2014년 완료된 모로코 경제도약 전략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수립. 2014년 동 계획 수립 당시, 모로코는 제조업 전반 22% 수출증가, 산업 인프라 확대, 다국적기업 모로코 진출 증가, 대(對)모로코 FDI 2009년부터 연간 약 23% 증가를 달성했음.

〈 2014-2020 모로코 산업촉진계획 3단계 10개 주요 항목 〉

산업별 고부가가치제 생태계 구축			
산업별 효율적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산업 간 균형·보조 및 사회보장 기여	소규모 사업장 지원	기술지원
분야별 지원			
중소기업 제조 및 생산능력 제고	재정지원	생산 공장 건설 관련 특별지구 확립	
국제시장 내 모로코 위치 공고화(국제화)			
국제시장 내 모로코 위치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	아프리카 시장 내 영향력 확대	

자료원 : 모로코 산업부

1) 자동차산업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내 자동차 생산 1위, 아프리카 대륙 내 자동차 생산 2위국으로 2010-2016년 수출액이 연간 평균 25% 이상 증가하였다. 2012년 이래로 빠르게 성장 중인 모로코 자동차 산업은 수출액이 2011년 4억 4,100만 달러에서 2012년 6억 6,800만 달러로 51.58% 증가했으며, 2013년 143.90%, 2014년 48.63%, 2015년 8.44%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모로코 전체 수출 분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수출액은 2014년 대비 50%가 증가한 약 550억 디람을 기록하였다. 해당 산업 분야의 고용인원(2016년 기준)은 총 92,500명이며, 국내 생산 자동차를 2020년까지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분야 모로코 진출 주요 외국계 기업은 르노, 푸조-시트로엥(PSA), 스놉(SNOP), GMD, 바메사(BAMESA), 델피(DELPHI), 야자키(YAZAKI) 등이 있다.

(단위: 백만 달러,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수출액	668	1,630	2,423	2,627	1,984



르노의 경우, 2016년 자동차 생산량 34만 5,000대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7년 자동차 생산 목표량은 40만대이다. PSA는 케니트라(Kénitra)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 중이며,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 기업은 4,500명의 직접고용, 20,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며 모로코 현지 조달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는 이러한 주요 진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차 배선산업, 차량 의자 및 차내 부품 관련 산업, 금형 관련 산업, 자동차 배터리산업, 차체 생산산업, 모터 및 관련 기기 산업 등의 모로코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2) 항공산업

지난 12년간 총 120 여개 항공산업 분야 기업들이 모로코에 진출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약 10억 달러, 총 고용인원은 12,000명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모로코 총 수출액 중 항공산업의 점유율은 2010년 1%에서 4.5%로 증가했으며, 2010-2016년 간 모로코 항공산업 총 수출액은 약 90억 디람으로 연간 평균 17%씩 성장하였다. 동 분야 모로코 진출 주요 외국기업은 봄바디어(Bombardier), 보잉(BOEING), 샤프란(SAFRAN) 등이 있다.

모로코는 이러한 주요 진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체 조립, 항공기 배선 조립 및 생산, 기체 및 관련 기기 관리 및 수리, 항공공학 등 관련 산업 및 업체의 모로코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3) 재생에너지산업

모로코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모로코 국내 총 에너지수요의 42%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태양에너지(2,600kWh/m<sup>2</sup>/년) 및 풍력(25,000MW) 발전 개발 잠재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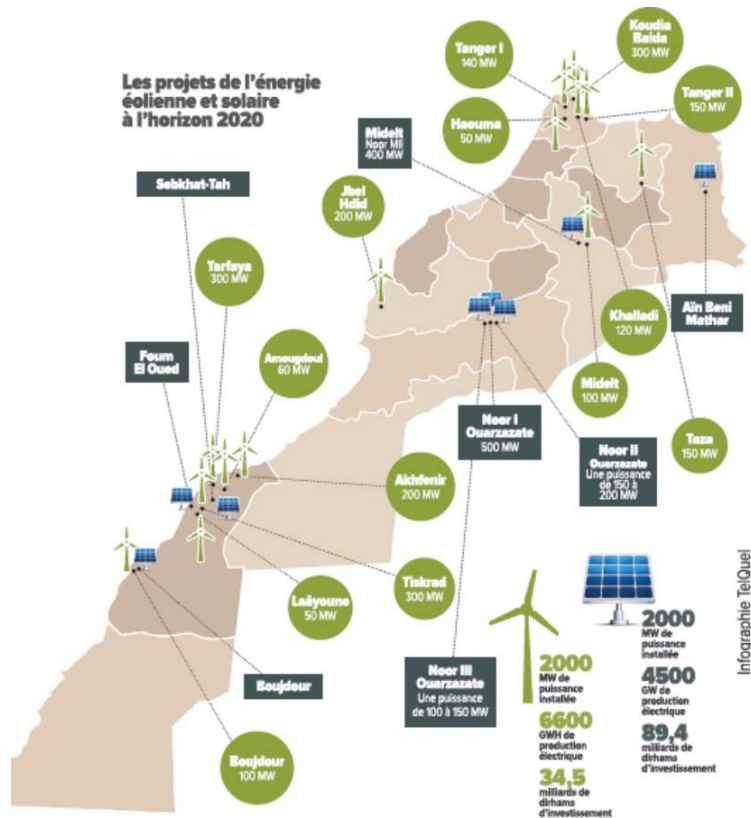
VI

VII

VIII

태양 에너지 관련 주요 프로젝트로는 2020년까지 5개 주요지역(Ouarzazate, Ain Bni Mathar, Foum Al Oued, Boujdour, Sebkhath Tah)를 중심으로 총 2,000MW의 태양 에너지 발전용량 확보 및 모로코 국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용수 가열 기술 시장 발전 프로젝트가 있다. 그 외 풍력 에너지 확보를 위해 모로코는 총 10개 주요 지역 중 5개 지역(Tarfaya, Akhfenir, Bab El Oued-Laÿoune, Haouma, Jbel Khalladi)에서 720MW, 그 외 5개 지역(Tanger, El Baida Koudia, Taza, Tiskrad Laÿoune, Boujdour)에서 1,000MW의 풍력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모로코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



자료원 : Telquel<sup>40)</sup>

40) <http://telquel.ma/wp-content/uploads/2016/01/carte.jpg>

#### 4) 화학산업

모로코 화학산업은 총 매출액 210억 디람, 해당 산업 부가가치 33억 디람, 총 15,500명 고용 창출을 달성했으며, 모로코 인광석공사(OCP)를 중심으로 5-6개 주요 기업이 화학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화학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로코는 친환경 화학 및 유기농 화학 분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두 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직접 고용 12,430명, 간접 고용 20,570명 창출, 총매출액 146억 디람, 화학산업 부가가치 38억 디람 상승, 총 수출액 98억 디람 증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5) 제약산업

모로코 제약산업은 총 매출액 137억 디람, 해당 산업 부가가치 46억 디람(3.4% 상승)을 달성했으며, 2016년 기준 총 11억 디람의 수출액(2015년 대비 5.0% 상승)을 기록했다. 모로코 국내 해당 산업 분야 주요 활동기업은 COOPER MAROC을 포함한 5개 업체가 있으며, 제약 의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약 및 의학 장비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약 5천 명 신규고용 추가 창출, 제약산업 관련 부가가치 41억 디람 상승 및 76억 디람 추가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 건설산업

모로코는 건설산업 총매출액 370억 디람, 건설산업 부가가치 140억 디람 증가, 총 25,700명 고용을 달성했으며, 조립식 건설, 세라믹, 대리석, 강철, 시멘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국내 해당 산업 분야 주요 활동기업은 LAFARGE MAROC을 포함한 7개 업체로 앞에 언급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16,000명 직접 고용을 포함한 총 28,000명 고용 창출, 총 매출액 101억 디람 추가 증대, 건설업 관련 분야 부가가치 27억 디람, 27억 5,000만 디람 투자 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7) 철강·기계산업

모로코 철강·기계산업은 총 매출액 468억 디람, 해당 산업 부가가치 105억 디람, 총 67,600명 고용 창출을 달성했으며, 주요 활동 기업인 소나시드(SONASID), 마그레브스틸(MAGHREB STEEL)을 포함한 약 6개 업체를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8) 섬유산업

모로코 섬유산업은 모로코 주요 제조업 중 하나로 국내 총 생산 및 제조업 생산량의 5%를 차지하며, 동 산업 종사자가 모로코 국내 총 고용인원의 27%에 달한다. 16만 5,000개 일자리 창출, 해당 산업 부가가치 7% 상승, 340억 2천만 디람 수출을 달성한 모로코 섬유산업의 주요 활동 기업은 Fruit of the LOOM, DECATHLON 등이며, 그 외 데님, 패스트 패션, 국내 메이커 유통산업, 니트, 가정용 섬유제품(식탁보, 침대보 등) 산업 및 공업용 섬유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는 동 6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총 10만개 일자리 창출, 50억 디람 추가 수출, 주요 기업들을 통한 70개 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9) 가죽산업

모로코 가죽산업은 신발, 피혁 및 가죽 의류, 무두질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를 확대 중이며, 총 매출액 47억 디람, 가죽산업 부가가치 815백만 디람 증가, 총 21,000개 일자리 창출, 300개 사업장, 39억 디람 수출을 달성했다. 주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 까지 35,000명의 안정적 신규 고용 창출, 총 수출액 55억 디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0) 전자산업

모로코 전자산업은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철도산업 및 방산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전자산업 부가가치 상승, 하청 업체 통합 및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 전자산업은 주요 외국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모로코 이전 유도 및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개발 및 제품 생산 산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로코 국내에서 주로 활동 중인 관련 업체는 STMicroelectronics, Lear Corporation, Automotive Electronics Morocco, Crouzet, Eolane, BM Electronics Systems 등이 있다.

### 11) 전력산업

1995년 발효된 모로코 농촌 지역 전력화 사업(PERG) 이후 활성화된 모로코 전력산업은 배선 및 제어 장비, 전선 및 케이블 제조·생산·유통 관련 산업이 전체 전력산업 수출의 86%, 투자액의 79%, 생산량의 72%, 해당 산업 분야 부가가치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전기·전력·재생에너지협회(FENELEC)는 통상부 및 모로코 수출 진흥청(Maroc Export)과 협력하여 모로코 국내 전기 산업 분야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주요 기업들은 ABB, Nexans, Ingelec, Cegelec, Simon International, Schneider Electric, Eaton Electric 등이 있다.

### 12) 아웃소싱 서비스산업

모로코 아웃소싱 서비스산업은 총 매출액 88억 디람, 해당 산업 부가가치 74억 디람, 총 63,00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였으며, 모로코 국내 주요 활동기업인 Capgemini, DELL, Amazon, AXA, IBM 등을 포함한 약 14개 업체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일반 행정활동, 실제 기능, 고객/자산 관리 및 전문 실무) 및 정보통신기술 아웃소싱(인프라 통합, 내부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나. 모로코 정보통신기술 발전계획(Maroc Digit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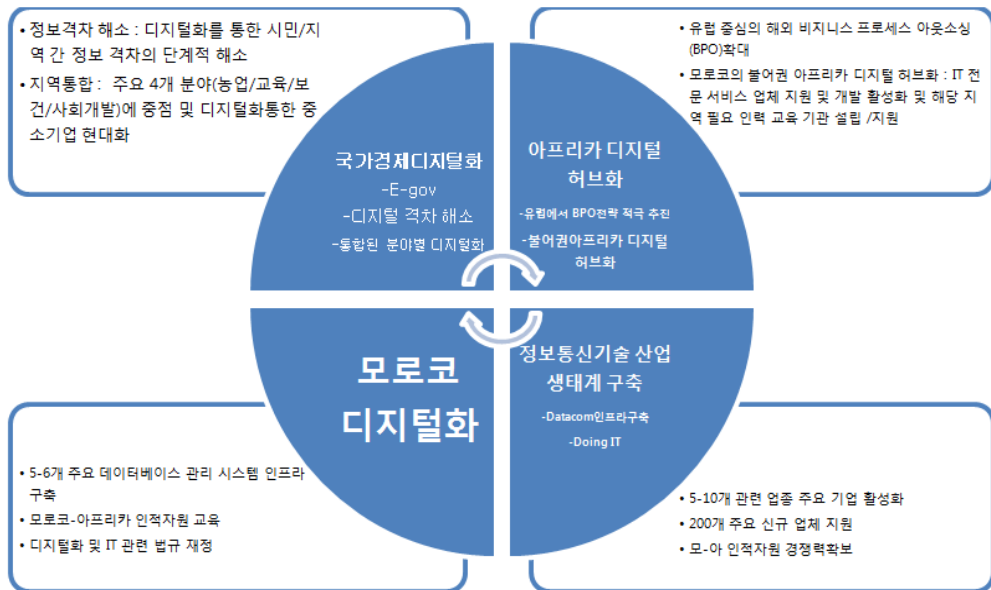
모로코 정보통신기술 발전계획(Maroc Digital 2020)은 2009년 발표된 Maroc Numeric 2013<sup>41)</sup> 이후 모로코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 및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 2016년에 발표되었다. 모로코 정보통신기술 발전 계획인 Maroc Digital 2020은 행정 절차의 50% 전산화, 지역 간 디지털 격차 50% 감소, 중소기업 IT 활용비율 20% 증대, 모로코의 아프리카 제1의 디지털 허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모로코 정부는 전자정부 촉진 사업 진행, 디지털 문맹 퇴치, 농업·보건·교육·사회개발 분야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개발 및 관련 별도 기금 설립, 항구물류·인프라·보건·무역 관련 디지털 혁신, 연간 5-10% 유럽 중심의 해외 아웃소싱 성장을 달성, 불어권 아프리카 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전략 개발, 모로코 국내 IT 및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개선, 필요 인력 확대 및 교육 기관 증대 등의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모로코 정부는 국가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아래 도표와 같은 세부 전략을 진행 중이다.

---

41) 2013년까지 총 58,000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에 70억 디람 기여, 공립학교 및 전문 교육 기관 IT 설비 완비, 3가정 중 1가정 인터넷 연결, 전자 정부 시스템을 통한 이용 가능 서비스 89개로 확대 등을 목표로 실시된 모로코 정보통신기술 발전 프로젝트



자료원: 모로코 산업·투자·통상·디지털경제부

## 다. 농업발전계획(Plan Maroc Vert)

농업 부문은 모로코 국가 GDP의 19%(2013년, 2010년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5%가 일반 농업, 4%가 기업형 농업이다. 동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농식품 부문 종사자 10만여 명을 포함하여 약 4백만 명 이상으로 약 1,400만 모로코 농촌 인구 총 수입의 80%가 농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모로코 농업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115만개 일자리 창출, GDP 중 1,740억 디람 기여, 농촌 인구 및 농업 부문 종사자 소득 3배 증가, 2020년까지 연간 100억 디람 투자 및 총 6개 농업중심지구(Meknès, Berkane, Sous, Gharb, Tadla, El Haouz) 구성을 목표로 한다.

농업발전계획은 크게 두 가지 사업 목표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생산 및 농산품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약 1,000여 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현대적 농업발전 가속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재정적



인 어려움이 있는 지방 소작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545개)을 통해 생산성 제고, 기술 전문화, 안정된 농가 수입 유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세부 계획의 경우, 모로코 국내 생산 작물을 고부가가치 작물 혹은 강우에 덜 민감한 작물로 변경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업발전계획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안정된 농업 용수 공급 정책 및 토지보유권 개선 등을 추진하여 현대적인 농업 생산 기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개발 계획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모로코 국내 기금, 신용협회, 국내외 투자자 및 기부 등을 통하여 기금 구성 노력이 진행 중이며, 모로코 농업개발협회(ADA)가 계획 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 라. 관광 Vision 2020

2005-2010년 모로코 방문 관광객은 58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약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모로코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세를 기반으로 한 모로코 관광 Vision 2020은 국내 문화유산 및 자연 보존, 다양한 관광 자원(역사, 자연, 문화 분야) 개발, 관광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20만개 신규 숙박 시설 확충, 100만 신규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분야 47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관광 총 수입 1,400억 디람, GDP 내 관광산업 비중 150억 디람 달성을 목표로 한다.

관광 Vison 2020은 해변 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Azur 2020), 모로코 역사·문화 유산 개발 사업(Legacy & Heritage), 생태적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사업(Eco & Sustainable Development),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 개발 사업(Animation, Leisure & Sports), 관광객 선호 지역 리조트 개발 사업(Biladi), 건강 및 웰빙 관련 서비스 및 이벤트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사업 등 총 6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로코는 관광산업 분야 진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 선정 및 개발에 필요한 설비 관련 수입관세 면제, 기업 설립으로부터 36개월 간 모로코에서 구입한 기기 및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모로코 관광개발기금(FMDT)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자금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관광 Vison 2020 달성을 위해 모로코 정부는 240억 디람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모로코 관광공학협회(SMIT)와 협력하고 있다.

#### 마. 수산업 개발계획(Plan Halieutis)

모로코는 수산업 분야 현대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Plan Halieutis를 2007년 발표하였다. 해당 수산업 개발 계획은 대서양 및 지중해와 맞닿은 모로코 해안의 풍부한 수산물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조업방식 보급, 2020년까지 수산업 부가가치 220억 디람으로 상승, 2020년까지 수산업 및 양식업 작업장 수 최대 50만여 개 확대, 2020년까지 수산업 총 수출액 31억 불(2007년 12억 불)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업 개발계획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모로코 정부는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 간의 협력 및 해당 계획 전담기관 창설,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 확립, 조직적 생산 체계 및 마케팅을 통한 제품 관리 시스템 구축, 항만, 수산업 관련 장비, 양식업 부지, 냉장·냉동 유통 인프라, 수산물 전문 시장, 도매 시장 확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계획 활성화를 위해 모로코 어업위원회, 양식업개발위원회, 해산물진흥센터 간 협력, 조업 활성화 및 현대화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개발 계획 및 관련 프로젝트 실행 현황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바. 유통-물류 전략(RAWAJ 2020)



자료원: 페즈메크네스지역 상공회의소(CCISFES)

모로코 총 노동인구의 12.8%(약 200만 명)가 종사하고 있는 유통-물류 산업 발전 전략인 Rawaj 2020은 GDP 기여 비중 3배 증가, 국내총생산 내 물류-유통 산업의 기여 비중을 15%로 증가(2006년 11%), 관련 분야 총 4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 모로코 국내 유통-물류 환경 개선, 모로코 국내 판매자 사업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Rawaj 2020 실현을 위해 도소매 유통 체계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소매상가 지역 및 공공시설 현대화, 임시 소매 상가의 제도화,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방 소재 소규모 판매점 현대화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5 주요 투자혜택(인센티브)<sup>42)</sup>

모로코 정부는 아래와 같은 투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단,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로코 정부 또는 기금운용 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혜택별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한다.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일한 투자에 대해 아래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지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투자의 경우에는 모로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다.

### 〈 주요 투자 혜택 〉

가. 투자진흥기금(FDII)을 통한 특정 투자비용 환급
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하산 2세 기금
다. 재정법 No. 12/98의 7.1 조항에 따른 관세면제
라. 일반세법 123-22°-b 조항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마. 자유무역지대 혜택
바. 주요 산업 분야 추가 투자 혜택

### 가. 투자진흥기금(FDII)<sup>43)</sup>

#### 1) 산업생태시스템 조성 지원을 위한 투자혜택

42) 모로코 투자청 자료 참조

43) 투자진흥기금(Fonds de Developement Industriel et de l'Investissement: FDII)은 2015년 재정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20년까지 200억 디람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 기금에 따른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로코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신청 조건 〉

분류	필수 요건 I	필수 요건 II
<b>전략적 사업 범주</b>		
“기관차” 프로젝트	세전 5천만 디람 이상 투자 또는 200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창출	공급자 또는 소비자 측면에서 중대하고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및 모로코 산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핵심 기업
“계약자” 프로젝트	세전 2억 디람 이상의 공공조달 계약 체결	상당한 규모의 장기간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보상조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교육, R&D, 기술 이전 분야 투자 및 직접 또는 조인트벤처 투자
<b>구조적 사업 범주</b>		
“선구자” 프로젝트	세전 2천만 디람 이상 투자 또는 50명 이상 정규직 일자리 창출	모로코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비즈니스 또는 기존 산업생태계의 한 분야의 가치사슬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자원 가치제고” 프로젝트		천연자원 및 재활용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
“지역 통합” 프로젝트		모로코 정부가 위탁한 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약업자나 지역 통합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로코 진출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엔지니어링 및 R&D 센터 프로젝트		산업분야 설계, 개발, 테스트, 연구 등을 위한 센터 설립 사업

위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 업체는 크게 네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세전 총 투자액 중 판매가 아닌 생산과 관련된 유무형 투자<sup>44)</sup>에 대하여

44) 이에 해당되는 비용은 ① 부동산 및 산업장비 구매 또는 임차 비용, ② 기술 서비스 사용 비용, ③ 연

최대 3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추가 수출 실적의 최대 10%까지 수출장려 보너스가 지급되며, 세 번째, 초기 해외 수입 자재의 60% 이상을 모로코산으로 전환한 경우 동 수입 대체 구매액의 최대 3%까지 수입 대체 연간 포상<sup>45)</sup>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2015-20년 간 모로코 소재 생산 공장이 없는 외국 기업은 모로코에서 처리된 주문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모로코 진출에 대한 연간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 2) 투자현장에 따른 직접 지원<sup>46)</sup>

모로코 투자현장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1억 디람 이상 투자
- 25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
- 5 rabii I 1419(1998년 6월 30일)의 칙령 n° 2-98-520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 군(region/province) 중 한 곳에 투자
- 기술 이전 보장
- 환경보호에 기여

위의 신청 조건을 만족할 경우, 크게 세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투자 관련 토지 구매 시, 토지 비용의 최대 20%까지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두 번째,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투자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부 인프라 비용에 대해 최대 전체 투자액의 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방직·제직·직물장식 등의 분야 투자의 경우 최대 1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 직업 훈련 비용의 최대 20%까지 모로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개발, 혁신, 창조 관련 비용(새로운 모델 개발 비용, 숙련 노동자 고용비용, 상품 품질관리, 테스트, 구매 관련 비용, 혁신과 창조관련 외부 용역비용 등), ④ 창업 후 최초 3년 동안의 스타트업 비용 등이 있다.

45) 해당 기업은 모로코 국내 산업생태계 구성의 일원이어야 한다. 즉, 모로코 국내 기업과 거래가 있거나 모로코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

46) FDI는 국가가 구체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이며 투자현장과 실행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

산업생태시스템 조성을 위한 투자 혜택과 투자현장에 따른 직접 지원은 중복 지원될 수 있으나, 모로코 정부에서 지원하는 총액이 전체 투자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가 농촌 지역에서 진행되거나 방직·제직·직물장식 등의 분야 투자인 경우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하산 2세 기금<sup>47)</sup>

하산 2세 기금에서 투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대상 분야에 해당해야 한다.

- 총 투자액이 1천만 디람(세전) 이상인 새로운 투자 사업(신규 또는 확대)
- 자본재 투자 총액이 5백만 디람(세전, 수입관세 제외) 이상
-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현지법인 자격이 있는 투자자

#### 〈 하산 2세 기금 지원 대상 분야 〉

<b>자동차·항공·전자 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및 항공산업을 위한 장비 제조</li> <li>- 자동차 및 항공산업을 위한 도구와 주형 제조</li> <li>- 항공기 유지보수와 비행기 분해 서비스</li> <li>- 전자제품 부속의 조립품과 하위 조립품 제조</li> </ul>
<b>화학·준화학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및 천연 추출물 제조</li> <li>- 금속 및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li> <li>- 인(인산염) 가공업</li> </ul>
<b>제약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각한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혁신적 신약 개발</li> <li>- 경제적, 의학적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의약품, 복제약품 제조</li> </ul>
나노 기술, 초소형 전자공학, 바이오 기술 관련 제조 활동	

47) 2016년 3월 15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하산 2세기금(Fonds Hassan II)과 산업통상투자디지털경제부 산업총국, 재정경제부간 체결한 프레임워크 협약에 기반하며, 동 기금에 따른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산 2세 기금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부동산 관련 지원 및 장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지원은 투자 관련 토지 구입 및 건물 건축을 진행하거나 건물만을 구입할 경우, 총 비용의 최대 1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할 경우, 최초 6년 간 월 임차료 7.50 디람(세전)/m<sup>2</sup>, 최대 건평 540 디람 범위 내에서의 토지 임차비용의 최대 100% 혹은 건축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지원된다. 또한 건물만 임차할 경우, 월 임차료 30 디람(세전)/m<sup>2</sup> 범위 내에서 최초 2년 간 건물 임차비용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토지 및 건물 임차관련 지원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 내의 투자만 해당되며, 수혜를 위한 최소 임차 계약 기간은 6년이다.

장비 관련 지원은 판매가 아닌 투자를 위한 신규 장비 구입 시 해당되며, 수입 관세 및 세금을 제외한 신규 장비 구입 총액의 최대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생산 업종의 경우, 중고 스템핑·플라스틱 사출·금형·기타 생산관련 기기 등의 구입 비용 또한 총액의 최대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 수입관세 면제

1억 디람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경우, 업체가 직접 구입한 투자를 위한 장비·기기·재료 등 및 그 부품·부속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단, 위에 언급된 정부와의 계약 체결 일자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 라. 부가가치세 면제

1억 디람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경우, 업체가 직접 구입한 투자를 위한 장비·기기·재료 등과 그 부품·부속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위에 언급된 정부와의 계약 체결 일자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 마. 자유무역지대 혜택

자유무역지대 혜택은 아래 표의 자유무역지대에 투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 혜택 대상 자유무역지대 〉

지역	자유무역지대
탕제	Tanger Free Zone, Tanger Automotive City
케니트라	Atlantic Free Zone
카사블랑카	Midparc
라바트	Technopolis
우지다	Technopole d'Oujda

위의 대상 자유무역지대 중 한 지역에 투자 진출한 기업은 아래와 같은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초 5년 간 법인세(IS) 면제 후 20년 간 경감된 8.75%로 세율 고정
- 최초 5년 간 소득세(IR)면제 후 20년 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 80% 경감
- 최초 15년 간 사업세(Taxe Professionnelle) 면제
- 최초 15년 간 지방세(Taxe Urbaine) 면제
- 수입관세 면제 및 세관 절차 단순화
- 자유무역지대<sup>48)</sup> 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회사 설립 및 설립을 위한 토지 취득 관련 등기료 및 인지세 면제

또한, 각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투자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8) 단, 해당 자유무역지대는 양 측 모두 수출 면세가 보장된 지역이어야 한다.



바. 산업분야별 투자 혜택<sup>49)</sup>

모로코 정부는 2014-20년 간 산업촉진계획 달성을 위한 주요 산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해당 분야 진출 기업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모로코 주요 산업 분야 〉

자동차산업	철강·기계산업
항공산업	섬유산업
재생에너지산업	가죽산업
화학산업	전자(공학)산업
제약산업	전기산업
건설산업	아웃소싱 서비스산업

자료원: 모로코 산업·투자·통상·디지털경제부

위의 산업 분야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은 위에 언급된 투자진흥기금, 하산 2세 기금,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자유무역지대 혜택 외에도 모로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 조건 및 혜택 〉

지원 정책 종류	지원 조건	혜택
IMTIAZ CROISSANCE	총매상고 1,000만~2억 디람의 경제성장, 산업부가가치증대, 일자리창출 기여가 가능한 산업 활동 관련 중소기업	총 투자액의 최대 20% 혹은 최대 1,000만 디람 지원
ISTITMAR CROISSANCE	총매상고 1,000만 디람 이하의 산업발전, 대기업-하청업체 관계 강화, 경제발전 가능성 확대 프로젝트 관련 중소기업	총 투자액의 최대 30% 혹은 최대 2,000만 디람 지원. 단, 의류산업은 1,500만 디람 지원

49) 상기 혜택과 별도로 각 산업별 추가적인 혜택 소개

지원 정책 종류	지원 조건	혜택
1인 기업 (AUTO ENTREPRENEUR)	총매상고 50만 디람 이하의 생산업체 및 20만 디람 이하의 서비스 업체	설립 절차 간소화, 사무실 비의무화, 총 매상고 미발생 시 세금면제 또는 감면 등

자료원: 모로코 산업·투자·통상·디지털경제부

그 외 화학산업 투자 진출 기업은 모로코 과학혁신기술연구재단(MAScIR<sup>50)</sup>을 통한 연구 개발 지원이, 제약산업 투자 진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시 이점 부여<sup>51)</sup>가, 섬유산업 투자 진출 기업은 모로코 섬유산업협회(Amith)와 Banque Populaire 은행 간 합의를 통한 금융 서비스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50) Moroccan Foundation for Advanced Science, Innovation and Reearch

51) 세부적으로 어떤 이점이 부여되는지는 업체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투자 진출 결정 전 상담이 필요하다.

## II. 투자진출 고려 · 결정 요소

1. 시장 잠재력
2. 생산 비용
3. 외국인 진출 제한 여부
4. 노무 및 외국인력 채용
5. 투자자 보호

## 1 시장 잠재력

모로코는 국토 면적 및 인구에 대비 구매력이 부족해 내수시장이 제한돼 있고, 주요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시장성 있는 품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득 분포가 양극화돼 있어 일반적인 내수시장은 저가 중국 및 터키산 소비재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고소득층은 유럽 브랜드 고가품을 선호한다.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수출시장으로서 모로코 진출 시 물품 판매대금 회수가 어려워 발생하는 자금 회전문제, 현지 시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모로코 정부는 사치품 및 국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산 공산품은 모로코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유럽, 미국산 제품 등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이다.

반면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면서 EU, 미국, 터키, 중동(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등), 아프리카 지역 등 총 55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자유무역지대, 국제적 수준의 물류·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유럽 및 미국시장, 아프리카, 중동시장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 2 생산 비용

### 가. 인건비

청년 실업률이 높은 모로코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노무인력은 풍부하나, 숙련직 및 관리직 전문 인력은 상대적인 구인난이 있으며, 임금 수준도 직종별 및 세부 업무별로 차이가 큰 편이다.

#### 〈 법정 최저임금<sup>52)</sup> 〉

분야	법정 최저임금
상공업	시급 13,46 디람
농업	일당 69,73 디람

자료원 : 모로코 노동청

또한 모로코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CNSS)에 피고용인 고용 사실을 등록하고 동 기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국가사회보장기금(CNSS) 부담률<sup>53)</sup> 〉

보장 분야	고용주 부담률(%)	피고용인 부담률(%)	합계	비고사항
가족수당	6.4	-	6.4	과표상한 없음
단기수당	1.05	0.52	1.57	과표상한 6,000 디람
장기수당	7.93	3.96	11.89	과표상한 6,000 디람
의무건강보험	4.11	2.26	6.37	과표상한 6,000 디람
교육훈련	1.6	-	1.6	과표상한 없음
합계	21.09	6.74	27.83	-

자료원: 모로코 국가사회보장기금(CNSS)

52) 세부내용은 본문 IV. 주요 법률>가. 노동법>법정최저임금 참고

53) 세부내용은 본문 IV. 주요 법률>가. 노동법>사회보장기금 참고

## 나. 공공요금<sup>54)</sup>

모로코 공공요금은 지역 및 사용용도 별로 상이하하며, 각 지역 별로 해당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 또한 상이할 수 있다.

### 〈 전기요금 〉

(단위 : 유로, 세금미포함)

도시명	KWh 당 요금		
	할인요금	정상요금	피크타임 요금
카사블랑카	0.065	0.089	0.124
라바트	0.060	0.093	0.120
탕제 자유무역지대	0.064	0.088	0.144

자료원 : Lydec, Redal, Amendis<sup>55)</sup>

\* 부가가치세 : 14%

\* 할인요금 대상 시간 : 4월-9월 23-7시, 10월-3월 22시-7시

\* 정상요금 대상 시간 : 4월-9월 7시-18시, 10월-3월 7시-17시

\* 피크타임 요금 대상 시간 : 4월-9월 18시-23시, 10월-3월 17시-22시

### 〈 수도요금 〉

(단위 : 유로, 세금미포함)

사용 용도	도시명	월 기본 요금	입방미터 당 요금
공업용	카사블랑카	1.491	0.792
	라바트	1.864	0.814
	탕제 자유무역지대	0.829	0.550
숙박업체용	카사블랑카	1.491	0.792
	라바트	1.864	0.814
	탕제 자유무역지대	0.829	0.911

자료원 : Lydec, Redal, Amendis<sup>56)</sup>

\* 부가가치세 : 7%

54) 모로코 투자청 자료. 환율 2016년 1월 6일 기준 1디람=0.093유로

55) 모로코 투자청 자료 재인용

56) 상동(ibidem)

## 〈 하수도 사용료 〉

(단위 : 유로, 세금미포함)

사용 용도	도시명	월 기본 요금	입방미터 당 요금
공업용	카사블랑카	2.610	0.447
	라바트	1.864	0.324
	탕제 자유무역지대	1.398	0.257
숙박업체용	카사블랑카	7	0.033-0.237
	라바트	1.864	0.324
	탕제 자유무역지대	0.379	0.229

자료원 : Lydec, Redal, Amendis<sup>57)</sup>

\* 부가가치세 : 7%

I

II

III

IV

V

VI

VII

VIII

57) 모로코 투자청 자료 재인용

### 3 외국인 진출 제한 여부

#### 가. 투자 제한

1995년 제정된 투자헌장(Investment Charter<sup>58</sup>)이 2016년 개정되면서 특정 분야를 규제하던 법들이 철폐돼 외국인은 자유롭게 모로코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농경지를 제외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이 자유롭다. 다만 수산분야(외국인 지분 49% 초과 금지), 탄화수소 수출, 농지 소유(외국인 투자자가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당국 허가 필요), 관광(관광안내업은 모로코인에게만 허용), 전문 서비스 분야(법률, 의료, 금융 분야 등)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

모로코 내 공식적인 투자제한은 거의 없으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언어, 문화, 종교,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고 모로코 고유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 나. 과실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투자수익을 금액 제한 없이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과실송금 제한 없음).

- 초기 투자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
- 초기 투자가 모로코 외환청이 허용한 외국인 투자 리스트에 해당
- 원천과세를 포함하여 성실히 조세 납부
- 외국 투자자가 모로코 규제당국에 제때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제공

58) 상세내용 부록 참조



## 4 노무 및 외국인력 채용

### 가. 노무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고용주는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닐 경우 정규직 및 계약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정규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한 부씩 소지해야 한다. 고용형태, 임금,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모든 고용주는 국가사회보장기금(CNSS)에 가입하여 임금 지급 대상자 리스트를 등록하고 급여 및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CNSS 신고기록이 노사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된다.

### 나. 외국인력 채용 및 관리

모로코 정부는 자국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법인이 300인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용촉진청(ANAPEC)이 인정할 경우에만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5

## 투자자 보호

외국인 투자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모로코는 투자 보장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sup>59</sup>), 국제투자보증기구(MIGA<sup>60</sup>) 및 아랍투자보증협력기구<sup>61</sup>와 협약을 맺어 투자자들 보호에 힘쓰고 있다. 위와 같은 협약을 통해 투자자 관리 및 투자 진출 확보, 자유로운 투자자본 및 수익 유통, 공공 목적을 제외한 투자 징수 방지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로코는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다수의 조약·협약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한국<sup>62</sup>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체결했다.

59)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60)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61) Inter-Arab Organization for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62) 한-모로코 이중과세방지협정(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000년 6월 16일 발효. 세부 내용은 본문 VIII. 부록 2. 대한민국-모로코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전문 참고

## III. 단계별 모로코 진출 절차

1. 외국인 투자기업 유형
2.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 절차
3. 비자 및 체류증 발급
4. 은행 업무

## 1 외국인 투자기업 유형

### 가. 외국기업의 모로코 진출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유형

#### 1) 현지법인

모로코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국인자격을 부여받아 영리 활동을 수행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IS) 또는 소득세(IR)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회사(SA)와 유한회사(SARL)가 가장 보편적인 현지법인의 유형이며 기타 합자회사(SC)도 종종 사용된다.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설립과 소유의 제한을 철폐<sup>63)</sup>하여, 현재 외국인은 모로코에서 현지법인을 자유롭게 설립, 확장하고 법인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다,

모로코에서 추진하는 사업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단독(100% 지분 소유)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2) 해외지사

외국법인의 모로코 현지 지점인 해외지사는 모로코 법에 따른 내국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 취급되며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지사 설립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등 한시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진출 유형이며, 모로코 현지에서의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보다 적합하다.

63) 송-배전 등 일부 국가전략사업을 제외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대부분 철폐

I  
II  
III  
IV  
V  
VI  
VII  
VIII

### 3) 연락사무소

가장 설립이 간단한 외국인의 현지 진출방식으로서 본사의 위임장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무역 및 상업 활동이 금지되고 본사와 모로코 공공/민간단체 간 계약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활동만 허용된다. 입찰참가, 공사시행 등 한시적인 제한적 활동에 적합한 진출유형이며, 법인세(IS)는 연간 지출액의 8-10%에 대해 35% 세율이 적용된다.

#### 나. 현지법인 설립 시 선택 가능한 회사 유형

##### 1)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 SA)

주주의 수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최소 5인이며, 최소 납입자본금은 상장사는 3백만 디람, 비상장사는 30만 디람, 주식 액면가는 최소 100디람이다.

주식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인(法人)의 지위를 향유한다. 현금출자는 주식가액의 1/4 이상을 회사 설립 시에 납입해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일괄 납입해야 한다.

임원임명 등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며 이사의 수는 상장회사는 15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명으로 구성 된다. 감사회는 회사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며 상장회사는 15명 이상, 비상장회사는 3-12명으로 구성 된다.

##### 2) 유한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유한회사는 개인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서 모로코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주주의 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구성되고<sup>64)</sup>, 최소 자본금은 1만 디람이며, 최소 자본금의 1/4은 회사명의 은행계좌에 상시 예치해야 한다.

64) 주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자본 기여도에 따라서만 책임을 진다

유한회사는 1명 또는 다수의 경영진이 제3자에 대해 개별 또는 연대 책임을 지며,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1명 또는 다수(연간매출액이 5천만 디람 이상인 경우)의 회계감사관이 경영 및 회계를 감사한다.

### 3) 합자회사 (Société en Commandite: SC)

채권자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과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 또는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단순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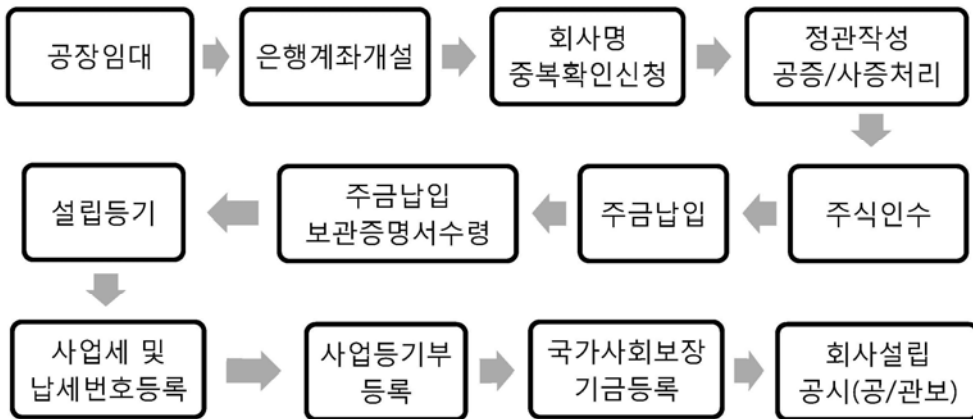
회사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재산출자만 한다. 주식합자회사의 특별주주총회에서 무한책임사원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회사형태를 주식회사(SA) 또는 유한회사(SARL)로 변경할 수 있다.

#### 〈 모로코 상법에 따른 분류 〉

자본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	인적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
주식회사	합명회사
Société Anonyme(SA)	Société en Nom Collectif(SNC)
유한책임회사	단순합자회사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SCS)
상장합자회사	익명조합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SCA)	Société en Participation(SEP)

## 2 모로코에서 회사 설립 절차

### 가. 절차 개요



### 나. 세부 절차<sup>65)</sup>

#### ■ 1단계: 회사명 중복확인 신청

대상 기업	영업표지 미채택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상사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지적재산권공사(OMPIC) 본사 및 지사</li> <li>- 지역투자센터(CRI) 내 모로코 산업 및 상업 지적재산권공사(OMPIC) 창구</li> <li>- 웹 사이트: <a href="http://www.directinfo.ma">www.directinfo.ma</a></li> </ul>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투자센터(CRI)에서 제공하는 신청서</li> <li>- 신청자 신분증 혹은 여권(대리인이 해당 업무 진행 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li> </ul>

65)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b>소요 비용</b>	- 230 디람 (210 디람 + 인지세 20 디람) - 온라인으로 해당 서류 제출 시 105 디람
<b>주의 사항</b>	- 해당 서류 발급 완료 후 1년 내 해당 서류를 포함한 회사설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발급 무효 처리 - 발급된 회사명 중복 확인 서류를 1달 내 미수령 시 발급 무효 처리

■ 2단계: 정관 작성 및 공증/사증 처리

<b>대상 기업</b>	- 개인 사업자 및 지점을 제외한 모든 상사
<b>관련 기관</b>	- 법률 사무소 (신탁업무, 공증, 회계, 법 관련 자문 등)
<b>필요 서류</b>	- 법률사무소에 따라 변동/상이
<b>소요 비용</b>	-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임료 - 공증수수료: 20 디람/장

■ 3단계: 주식 인수

<b>대상 기업</b>	- 모든 상사 - 특히 주식회사(SA), 단순화된 주식회사(SAS), 상장합자회사(SCA)
<b>관련 기관</b>	- 법률사무소 (신탁업무, 공증, 회계, 법 관련 자문 등)
<b>필요 서류</b>	- 인수청약서(bulletins de souscription)
<b>소요 비용</b>	-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임료

■ 4단계: 주금납입

<b>대상 기업</b>	- 모든 상사 - 특히 주식회사(SA), 단순화된 주식회사(SAS), 상장합자회사(SCA) - 유한책임회사(SARL)는 고정자본(fixed share capital)이 10만 디람 초과할 경우만 해당
<b>관련 기관</b>	- 은행
<b>필요 서류</b>	- 주식회사(SA), 단순화된 주식회사(SAS): 정관, 회사명 중복확인(Certificat négatif), 신분증, 주식인수청약서 - 유한책임회사(SARL): 정관, 회사명 중복확인, 신분증
<b>주의 사항</b>	-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 8일 이내에 주금납입이 이뤄져야 함.



■ 5단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수령

대상 기업	- 주식회사(SA), 단순화된 주식회사(SAS), 상장합자회사(SCA)
관련 기관	- 법률사무소 (신탁업무, 공증, 회계, 법 관련 자문 등)
필요 서류	- 공증 받은 서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소요 비용	-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입료

■ 6단계: 설립 등기

대상 기업	- 주식회사(SA), 유한책임회사(SARL), 합명회사(SNC), 단순합자회사(SCS), 상장합자회사(SCA)
관련 기관	- 지역투자센터(CRI) 내 지방 국세청 창구
필요 서류	- 정관, 사업장 임차/매매 계약서, 임원(대표이사, 감사, 이사) 선정 관련 서류
소요 비용	- 정관 관련 세금: 회사자본의 1% 혹은 최소 1,000 디람 이상 - 단, 회사자본이 5,000 디람 미만일 경우 1,000 디람(정액) - 사업장 임차/매매 계약서 관련 세금: 200 디람(정액) - 임원 선정 관련 기록물에 대한 세금: 200 디람(정액)
주의 사항	- 공증 받은 일자 기준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연체료 부과

■ 7단계: 사업세(IS/IR/TVA) 및 납세번호 등록

대상 기업	- 모든 회사
관련 기관	- 지역투자센터(CRI) 내 지방 국세청 창구
필요 서류	- 회사 운영 관련 자격증 또는 인가서 - 해당 사업장 관련 원칙적 합의서류 - 사업장 임차/매매 계약서 또는 법인이 발부한 사업장 증명서

■ 8단계: 상업등기부 등록

대상 기업	- 합작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관련 기관	- 지역투자센터(CRI) 내 상업부 창구
소요 비용	- 법인: 350 디람 - 개인: 150 디람

■ 9단계: 국가사회보장기금(CNSS) 등록

대상 기업	- 모든 상사
관련 기관	- 지역투자센터(CRI) 내 국가사회보장기금(CNSS) 창구

■ 10단계: 관보 및 공보 통한 회사 설립 공시

대상 기업	- 모든 상사
관련 기관	- 관보 및 공보 발행처
소요 비용	- 관보: 약 8 디람/줄 - 공보: 약 4 디람/줄

### 3 비자 및 체류증 발급

우리나라는 모로코와 사증면제협정(1993년 9월 1일)을 체결하여 우리 국민은 무비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본래 현지 투자나 취업 및 사업 등으로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려면 사전에 주한 모로코대사관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모로코 선입국 후 모로코 내에서 체류증을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모로코 현지에서 일정 자격이 갖추어질 경우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증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90일마다 제3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해 국경에서 비자에 스탬프를 다시 받아 체류를 연장하는 사례도 있다.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출신 외국인이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 입국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본인 거주지 관할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Service) 또는 헌병군(Gendarmerie Royale) 사무소가 제공하는 양식의 체류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급 기간 동안 동 체류증을 대신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수증(récépissé)을 받는다. 유효 연수에 따라 인지세를 연당 100 디람 씩 납부해야 한다.

체류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시 여권 사진면 및 모로코 입국 스탬프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일련번호가 적힌 면의 사본, 체류증 신청서 및 인적사항 서식 각 2부(소재지 경찰서 또는 헌병군 사무소 비치), 인지세 100 디람/유효기간 연수(par année de validité du titre), 최근 여권사진 6장, 임대차 계약서 혹은 부동산 증명서<sup>66)</sup>, 범죄기록증명서, 건강진단서, 은행 계좌 증명서, 모로코 고용부에서 확인한 회사 또는 기관과의 고용계약서(개인의 경우), 회사 정관(statut) 및 상업등기부신고 증명서(사업자의 경우)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로코 내에서 수행할 활동 관련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한다.

66) 모로코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는 모로코 정부 당국이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하며, 동 계약서 양식은 모로코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emploi.gov.ma>)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지참하여야 한다.

<b>신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노동비자 신청서 2부</li> <li>- 외국인 노동 계약서 원본 5부</li> <li>- 최종 학력 증명서 및 근무경력 증명서 각 1부</li> <li>- 여권 사본</li> <li>- 대상자가 모로코 국내 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임을 증명하는 모로코 고용촉진청(ANAPEC) 증명서</li> <li>- 회사 정관 사본</li> </ul>
<b>갱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노동비자 신청서 2부</li> <li>- 외국인 노동 계약서 원본 5부</li> <li>- 국가사회보장기금(CNSS) 최근 3개월 분담금 납입증명서</li> <li>- 모로코 체류증 사본</li> <li>- 대상자가 모로코 국내 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임을 증명하는 모로코 고용촉진청(ANAPEC) 증명서</li> <li>- 이직한 경우, 회사 정관 사본(statuts de la société)</li> </ul>

자료원 : 모로코 고용부

모로코 고용촉진청(ANAPEC)이 발급하는 허가증 미적용 대상은 모로코 출생자 및 모친이 모로코 국적 소지자이며 6개월 이상 모로코에서 거주한 자, 공공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인 기업 또는 그 자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파견한 근로자, 모로코인의 배우자, 현지 법인의 설립자·경영진, 협력의 일환으로 파견된 대표단(단, 6개월 미만 체류 가능), 모로코 체육부 혹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한 감독 및 운동선수, 모로코 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한 예술가, 정치적 난민 및 무국적자이다.

4 은행 업무





가. 모로코 내 주요 은행 현황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은행 분야가 가장 발달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모로코 은행들이 아프리카 각국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모로코 주요 은행 현황 〉

은행명	소유주	소개
Attijariwafa	 SNI Holding	ONA(Omnium Nord Africain) 그룹 계열사이자 마그레브 지역 최대 은행금융그룹으로 안정적인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로코 경제개발계획에서 핵심 역할 수행.
Banque populaire	 BCP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BMCE (Banque marocaine du Commerce extérieur)	 Finance Com	모하메드5세 국왕, 모로코 수출입은행 지원으로 설립된 대외무역 전문 은행이나 다수 지점을 기반으로 일반고객 대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Société générale Maroc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Société générale의 자회사
BMCI (Banque Marocaine pour le Commerce et l'Industrie)	 BNP Paribas	1964년 설립, 2000년 BNP Paribas 그룹에 합병. 2001년 ABN Amro Bank Morocco 인수로 활동 분야를 증권거래에 까지 확대
Crédit agricole du Maroc	 모로코 국가	1961년 설립돼 모로코 농업발전 및 현대화 주도. 유니버설뱅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은행-증권 통합 서비스 제공
Crédit du Maroc	 Crédit agricole	프랑스 Crédit agricole 자회사로 네트워크 बैं킹, 투자 및 금융자산 관리 중심 운영. 모로코 국내 총 200개 지사, 220개 ATM기기, 50만 명 이상의 고객 보유
CI (Crédit Immobilier et Hôtelier)	 CDG Group	1920년 모로코 부동산용자기금(CPIM) 산하 기관으로 설립. 부동산, 관광, 예금 및 신용 관리 전문 은행.
CFG (Casablanca Finance Group)	 CFG Group	1992년 모로코 최초 투자은행으로 영국투자은행을 모델로 삼아 설립됨.
Citibank Maghreb	 Citibank	1967년 설립된 미국 Citibank 자회사로 기업금융 전문 상업투자 은행

## 나. 은행계좌 개설

모로코 은행에서 외국인은 △외화계좌(Comptes en devises), △디람화 표시 외화계좌(Comptes étrangers en dirhams convertibles), △특별계좌(Comptes spéciaux, Special accounts), △장기태환계좌(Comptes convertibles à terme)를 개설할 수 있다.

### 1) 외화계좌

외화계좌는 모로코 상주 또는 비상주 외국인, 외국 법인이나 지사 또는 자유무역지대 및 모로코 역외금융지역(financial offshore areas) 소재 기업들의 명의로 개설될 수 있다. 외화계좌는 해외계좌와의 외화 송금/수금 거래, 외화 표시 수표 지급 및 타 외화계좌, 디람화 표시 외화계좌와의 은행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카사블랑카금융센터(CFC)에 등록된 기업들은 외화 자산을 완전히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모로코 국내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화계좌 또는 디람화 표시 외화계좌<sup>67)</sup>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 2) 디람화 표시 외화계좌

디람화 표시 외화계좌는 모로코 상주 또는 비상주 외국인, 외국 법인 또는 지사, 자유무역지대 및 모로코 역외금융지역(financial offshore areas) 소재 기업들의 명의로 개설될 수 있다. 디람화 표시 외화계좌를 사용할 경우 자유무역지대 및 역외금융지역을 포함한 모로코 국내 및 해외에서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수출입 활동 관련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또한 동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7) 동 계좌 보유자는 모로코 외환청(Office des Changes)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외환청이 제시하는 형식에 맞춰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계좌는 일반적으로 채무포지션(debit position)을 가질 수 없고, 현금 또는 수표를 사용한 디랍화 입금이 불가능하다.

### 3) 특별계좌

특별계좌는 디랍으로 표시되며, 모로코 내 임시적 활동을 목적으로 비상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외교공관 및 외교관, 외국인 행정직원, 국제기구 및 외국인 직원, 자유무역지대 및 모로코 역외금융지역 소재 기업들의 명의로 개설될 수 있다.

특별계좌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포지션(debit position)을 가질 수 없으며, 동 계좌 보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모로코에서 공공계약 또는 일반계약 체결 시 비상주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약 한 건마다 별도 특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특별계좌의 잔고는 세금을 포함하여 현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 모로코 외환청 승인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 4) 장기태환계좌

장기태환계좌는 모로코 비상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모로코에서 판매 또는 투자로 발생한 자금을 받기 위해 사용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 IV. 주요 법률

1. 노동법
2. 조 세
3. 기타 법률 및 조정·중재

1

노동법<sup>68)</sup>

모로코 법령에 따른 노무관리는 2003년 9월 11일 발효된 모로코 노동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를 결정할 때 해당 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근로계약 (제15조-제19조)

모로코 내 근로계약 형태는 무기계약(CDI), 기간제 근로계약(CDD),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CDD)은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이 중지된 경우에 이를 다른 피고용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단, 파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 기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대한 경우 또는 계절노동의 경우에 한하여 체결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기간제 계약은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6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2년 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비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1년, 1회 갱신이 가능한 기한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기간 이후 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 최저취업연령(제143조) 및 근무시간(제184조)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으며, 각 산업분야에 따른 연간 근무시간과 주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68) 합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2003년 9월 11일 발효된 모로코 노동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해고 시 반드시 해당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본문 VIII. 부록>5. 모로코 주요 법률 요약본 참고

〈 산업분야에 따른 연간 근무시간 및 주간 근무시간 〉

산업분야	연간 근무시간	주간 근무시간
산업, 상업, 자유업	2,288시간	44시간
농업	2,496시간	경작의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

자료원 : 모로코 노동법

○ 초과근무 시간 (제196-204조)

피고용인이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은 임금과 함께 일괄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초과근무 수당은 지불 방법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임금대비 가산된다.

〈 부문별 초과근무 수당 임금대비 가산율 〉

가산율	비농업	농업
25%	06:00-21:00	05:00-20:00
50%	21:00-06:00	20:00-05:00

초과근무가 공휴일에 시행될 경우 대체휴가를 허용해도 가산율은 각각 50%, 100% 부과된다.

○ 주간 휴무 (제205조-제216조)

피고용인에게 최소 24시간 주간 휴무(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 제공돼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7일장이 열리는 날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주간 휴무일은 사업장 내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동시에 적용돼야 하며, 관할당국의 승인 하에 예외가 허용된다.

○ 공휴일 및 유급휴가 (제217조-제230조)

공휴일과 유급휴가 기간 동안 피고용인에게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 성격상 중단될 수 없거나 교대근무제로 주간 휴무 방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유급휴가 기간에도 중단 없이 근무가 계속될 수 있다.

〈 유급 공휴일 및 휴무일 〉

유급 공휴일 및 공휴일	일자
독립운동기념일	1월 1일
노동절	5월 1일
국왕 즉위 기념일	7월 30일
서부사하라 수복 기념일	8월 14일
혁명기념일	8월 20일
국왕탄생 기념일	8월 21일
녹색행진 기념일	11월 6일
독립기념일	11월 18일
신년	이슬람력 첫 달(moharram) 1일
모함메드 탄신일	이슬람력 3번째 달(rabii) 12일
라마단 종료 기념일 (Aïd al Fitr)	이슬람력 10번째 달(chawal) 1일
양 희생제일 (Aïd al Adha)	이슬람력 12번째 달(doul hijja )10일

자료원 : 모로코 노동법

○ 연차유급휴가 (제231조-264조)

모든 피고용인은 동일 기업 또는 동일 고용주의 집에서 6개월 계속근무 조건 충족 시, 근무 개월 당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연가) 권리가 있다. 단, 피고용인이 18세 이하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무 개월 당 2일이다.

연가는 근무기간 5년마다 1.5일씩 늘어나며, 전체 연가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가는 연중 사용될 수 있다.

○ 직장 의료 서비스 (제304조-제331조)

50인 이상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임업) 및 피고용인이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직장 내 당국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직장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국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또는 공동 직장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산업보건사가 직장 의료 서비스를 직접 담당해야 하며, 고용주 또는 기업 공동으로 직장 의료서비스 운영비용 및 산업보건의 임금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 의료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전일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를 포함해야 한다.

○ 임금과 근속수당 (제345조-제355조)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는 한 당사자 간 직접 합의나 단체노동협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임금이 근로계약, 내규 또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에 따라 근속년수에 기초하여 산정되지 않는 한, 모든 피고용인은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속년수	지급 급여에 대한 비율
2년	5%
5년	10%
12년	15%
20년	20%
25년	25%

자료원 : 모로코 노동법

피고용인은 모로코 화폐로 보수를 지급받게 돼 있으며 현물 혜택은 현물 지급 관행이 있는 직종 또는 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노무자에게 지급 시 지급일 간 최대 16일 간격으로 매월 최소 2회, 직원에게는 매월 적어도 1회 지급해야 한다.

모로코 대졸 사무직종 초임은 월 4,000-7,000 디람 수준이며, 숙련직 및 간부급 인력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구인난이 있어 직종과 업무성격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고용주가 구내식당(Cantine) 마련, 주택보조비, 교통비 지급 등의 추가 복지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협의에 따라 제공하기도 한다.

급여는 사회보장세(Charges Sociales)가 가산되며, 총 급여액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협상 대상이지만 최저임금(SMIG) 이상이어야 한다. 유급휴가는 월 1.5일이며, 연가 기간은 계속 또는 비계속을 불문하고 근무 5년 기간 전체 당 실 근무 1.5일 비율로 증대하나 전체 연가 기간이 실 근무 30일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유급연가는 피고용인과 고용주 간 합의에 따라 연속되는 2년에 걸쳐 분산 또는 축적할 수 있다.

모든 피고용인은 연차에 따른 상여금을 받는다. 2년차의 경우 임금의 5%, 5년차 이상부터 10%, 12년차 이상부터 15%, 20년차 이상은 20%를 받게 된다. 2004년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1년에 2,28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10시간 이후부터는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국가사회보장기금(CNSS)에 가입해야 하고 피고용인을 임금 지급 대상자 리스트에 등록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정규 직원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되는 해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5년까지는 연간 96시간의 급여, 6-10년은 144시간, 11-15년은 192시간, 15년 이상은 연간 240시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보수 정산 시 “보수명세서(Bulletin de paie)”라고 하는 증빙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보수 명세서에는 근로 감독 당국이 지정한 지표들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피고용인이 반대나 이의 없이 보수 정산을 확인하는 보수 명세서를 수령하는 것이 상이한 보수나 제 수당에 대한 동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피고용인이 명세서에 ‘읽고 승인함(lu et approuvé)’을 기재하고 서명했을 지라도 적용된다.

#### ○ 법정최저임금 (제356조-제361조)

모로코에서 법정최저임금은 비농업 부문의 경우 시간당 피고용인에 지불되며, 농업 부문의 경우 일당으로 피고용인에게 지불된다. 피고용인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려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2017년 1월 기준 모로코의 최저 임금(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은 2015년 7월부터 인상돼 일반 산업 분야의 경우 시간당 13.64 디람, 최저 월급은 2570.68디람(약 US\$265)이다. 모로코에는 최저임금제(SMIG)를 제외하고는 법정 임금 관리제도가 없다. 임금 및 급여는 피고용인 및 고용주 간에 자유로이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 모로코 분야별 최저임금 〉

효력일자	증가율	일반 산업, 상업, 자영업			농업	
		1시간 기준 (디람)	일 기준 (디람)	월 기준 (디람)	일 기준 (디람)	월 기준 (디람)
2000년 7월 1일	10%	8.78	70.24	1826.24	45.50	1183.00
2004년 7월 1일	5%	9.66	-	-	50.00	-
2008년 7월 1일	5%	10.14	-	-	52.50	-
2009년 7월 1일	5%	10.64	-	-	55.12	-
2011년 7월 1일	10%	11.70	-	-	60.63	-
2012년 7월 1일	5%	12.24	-	2333.76	63.39	-
2014년 7월 1일	5%	-	-	2450(민간분야) 3000(공공분야)	-	-
2015년 7월 1일	5%	13.46	-	2610(민간분야)	69.73	-
2017년 1월 1일	0.98%	13.46	-	2570.86 (191시간*)	-	1812.98

자료원: 모로코 노동청, CNSS

\* 2017.1.1.일 기준 법정 월 근무시간 단축으로 최저시간당 임금은 동일하나 최저월급액 감소

○ 노동조합 (제396조-제429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도덕적·직업적 개인 및 단체의 이익보호 및 증진, 교육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제품생산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나 사업장의 피고용인 수와 관계없이 조직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은 자유롭게 희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관리직과 경영진 구성원은 어떠한 구금형도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모로코 국적자여야 하며, 노조 대표는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교육, 회의, 세미나, 국내외 노조총회 참석을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용인 대표 (제430조-제463조)

통상 10인의 정규직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피고용인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피고용인 대표는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요구사안을 제시해야 하며, 대표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동 요구사안을 제기해야 한다.

○ 기업위원회 (제 464조-제474조)

기업위원회는 50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기업 내에 설립되는 자문단체로 고용주(또는 대표), 피고용인들이 선출한 노조 대표 2인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기업이 수행해야 할 구조적·기술적인 변화와 기업 재무상태,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 생산 전략 및 방안, 피고용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적 사업 수립 및 시행, 피고용인을 위한 학습·연수·문맹퇴치·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 외국인 피고용인 고용 (제516조-제521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용주는 노동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승인은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비자 형태로 부여되며, 비자 발급일은 근로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로코는 자국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외국법인이 300명 이상의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거나 취업대상자가 보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로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로코 고용촉진청(ANAPEC)이 인정할 경우에만 외국인의 외국법인 취업을 위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정년퇴직연령 (제526조-제529조)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이나, 피고용인의 동의와 고용주의 요청에 의한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동 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단, 광업 분야의 피고용인 정년



퇴직연령은 55세이다. 고용주는 정년에 들어가는 피고용인이 발생할 경우, 다른 피고용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근로감독 (제530조- 제548조)

근로감독 담당자는 근로·노사문제 감독관 및 조사관, 농업분야의 사회법 감독관 및 조사관, 광산기업의 근로감독 관련에 행정기관의 담당관 및 기타 행정기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모든 담당관이 해당된다.

근로감독은 근로 관련 법령·규정 집행,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법규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정보·기술적 자문 제공, 현행 법규와 관련하여 미비하거나 지나친 부분에 대한 노동청 보고, 근로 관련 개별 분쟁 발생 시 조정 시도를 수행하며, 근로 감독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단체노동분쟁(제549조-581조)

단체노동분쟁은 근무 중 발생하는 분쟁 중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 단체이거나, 고용주 혹은 고용주 직능단체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1인 또는 복수의 고용주나 고용주 직능단체인 경우를 의미한다.

노동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재과정을 거칠 수 있다.

〈 노동분쟁 중재 과정 〉

1단계	근로감독 시 중재
2단계	시·도지사가 주재하는 지방 조사·조정위원회에 회부
3단계	노동부장관 혹은 그 대리인이 주재하는 국가조사·조정위원회에 회부
4단계	중재재판에 회부 (중재인은 노동부장관령이 정하고 고용주 직능단체와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제안에 기초해 결정된 중재인 명단에서 당사자 간 공동합의로 선택)

자료원 : 모로코 노동법

중재 결정에 대한 항소는 중재법원이 구성된 대법원 소속 노동법원에서만 진행되며, 조정합의와 중재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 국가사회보장기금

모로코 국가사회보장기금(CNSS: Caisse National de Sécurité Sociale)에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국가사회보장계획에 따라 개인이 수령한 총 임금 및 직접적으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받은 모든 금액에 근거한다. 이때 임금에는 보상금, 보험료, 사례금 및 기타 현금 혜택 등이 포함된다. 연안 어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기업은 동 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는 동 기금에 가입하고 피고용인 및 견습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사회보장기금 보장 분야와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 보장분야에 따른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부담률 〉

보장 분야	고용주 부담률(%)	피고용인 부담률(%)	합계	비고사항
가족수당	6.4	-	6.4	과표상한 없음
단기수당	1.05	0.52	1.57	과표상한 6,000 디람
장기수당	7.93	3.96	11.89	과표상한 6,000 디람
의무건강보험	4.11	2.26	6.37	과표상한 6,000 디람
교육훈련	1.6	-	1.6	과표상한 없음
합계	21.09	6.74	27.83	-

자료원: 모로코 국가사회보장기금(CNSS)

## 2 조 세

### 가. 개관

모로코의 조세제도는 일반세법(CGI: Code Général des Impôts)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간소화, 합리화,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요 세제는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의 수입 및 이익과 관련된 법인세, 개인과 합명회사의 소득 및 이익과 관련된 소득세, 소비자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록수수료 및 인지세 등이 있다.

한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약<sup>69)</sup>을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동 협약을 1999년 1월 27일 서명했으며, 동 협약은 2000년 6월 16일에 발효됐다. 동 협정의 주 내용은 조세의 이중부담 면제, 과세 시 내외국인 동등대우, 양국 간 조세분쟁 발생 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 나. 법인세

모로코 국내 모든 법인과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법인이나 기타 법인은 의무적으로 법인세(IS: Impôt sur les Sociétés)를 납부해야 한다.

2017년 재정법에 따라 모로코 정부는 일반 기업 대상 법인세를 기업의 순이익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했다.

69) 세부 내용은 본문 VIII. 부록 2. 대한민국-모로코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전문 참고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일반 기업 순이익에 따른 2017년 법인세 과세율 구분 〉

(단위 : 디람, %)

2016년 순이익	과세율
300,000 미만	10
300,001 - 1,000,000	20
1,000,001 - 5,000,000	30
5,000,000 이상	31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현재 위 과세율을 2017년 순이익 300,000 이하 10%, 300,001-1,000,000 20%, 1,000,001 이상 31%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된 2018년 재정법이 논의중에 있다.

또한 신용기관, 모로코 중앙은행(Bank Al-Magrhib), 모로코 정부 기금 운용 기관(CDG, la Caisse de dépôt et de gestion), 보험 및 재보험 회사, 리스회사의 경우 37%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모로코 국내 법인 중, 건설·조립(assembly)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외국인 회사에 대해 8%의 선택적 과세율이 부과된다. Statut CFC<sup>70)</sup>를 소유한 모로코 국내 기업·외국인 기업의 본사 및 Statut CFC를 소유한 외국계 기업의 연락사무소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Statut CFC를 소유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최초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경감된 8.75%가 부과된다.

한편 모로코 국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소재 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가 최초 5년간 면제되며, 이후 20년 간 경감된 8.75%의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동일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간 거래 및 다른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과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 지분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수입에 대한 과세 비율은 15%이다. 금속 스크랩 수출 기업을 제외한 재화·용역 수출 기업과 광업 관련 회사를 제외한 수출업자에게 완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경감된 과세율 17.5%가 부과된다.

70) 카사블랑카금융도시(CFC, Casablanca Finance City) Statut는 세금 우대 정책, 외환 관리 시설 등의 사업 운영 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리벨이다. 카사블랑카금융도시 관련 세부 내용은 본문 1. 모로코 투자 환경>3. 모로코 투자환경>다. 주요 산업단지>5)카사블랑카금융도시 참고

반면, 탄화수소 채굴 허가증 소지 업체는 채굴 개시일 기준 최초 10년간, 공인 회계관리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최초 4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단, 광물 및 가공된 광물을 수출하는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17.5% 세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모로코 정부가 법인에 부과하는 최소세율은 0.5%이며, 법인세의 총액은 세전 운영 소득액에 근거하여 계산된 최소세금<sup>71)</sup>보다 커야한다. 최소세금의 총액은 연간매출액이 없을지라도 3,000 디람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 개시일로부터 3달 내에 동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공사업 프로젝트 관련 허가증 소지 기업을 제외하고, 최소세액 납부는 회사 영업 개시일 이후로 36개월 동안 면제되며, 영업 개시일 60개월 이후에는 최소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다. 소득세

소득세(IR: Impôt sur le Revenu)는 자연인 및 법인세 적용을 택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 및 이익에 적용되며, 모로코 법인은 급여, 사업소득(revenus professionnels<sup>72)</sup>), 부동산 소득·수익, 투자 소득·수익, 영농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급여,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에는 누진과세율이 적용되며, 동 누진세 부과율과 특정 과세 대상에 따른 세율 구분은 다음과 같다.

71) 납세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Article 144 - Cotisation minimale - Code général des impôts maroc  
 72) les bénéfices réalisés par les personnes physiques et provenant de l'exercice a) des professions commerciales, industrielles et artisanales; b) des professions de promoteur immobilier, de lotisseur de terrains, ou de marchand de biens. c) d'une profession libérale ou de toute profession autre que celles visées aux a) et b) ci-dessus

〈 연간 소득액에 따른 누진세 부과율 〉

연간 소득액(단위: 디람)	누진세율
30,000 이하	0%
30,001 - 50,000	10%
50,001 - 60,000	20%
60,001 - 80,000	30%
80,001 - 180,000	34%
180,000 이상	38%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 특정 과세 대상에 따른 주요 세율 〉

세율	과세 대상
1%	연간매출액이 50만 디람 이하인 무역·산업·수공업 분야 자영업자
2%	연간매출액이 20만 디람 이하인 서비스 제공업체 자영업자
10%	모로코 비상주 자연인 또는 법인의 총생산 총액(부가가치세 제외)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3개 활동으로 발생한 순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주식 양도</li> <li>- 최소 60%의 자산을 투자한 OPCVM<sup>73)</sup> 또는 주식 양도</li> </ul> </li> <li>○ 외국인 투자로 인한 총수입</li> <li>○ 주식, 사단법인의 지분 및 유사 소득</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로코에 과세대상 영업장 또는 본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계좌에 지급된 고정투자수익</li> <li>○ 외국으로부터 받은 총 자본이익</li> <li>○ CFC Statut를 보유한 기업의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보수 및 총 임금. 고용일로부터 최대 5년간 동 세율 적용.</li> <li>○ 채무 증권, 비상장 증권, 주식 또는 OPCVM 등의 채권 지분 또는 자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순이익</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임시수당</li> <li>○ 자연인의 고정투자수익, 실질순이익(RNR: résultat net réel) 또는 단순화된 순이익(RNS: résultat net simplifié)에 따라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자연인은 제외한다.</li> </ul>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73) OPCVM은 일종의 투자신탁회사로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집단적 투자회사들이다, 실뱅 알르망, 장 클로드 튀아노 보르발랑, 『세계화』 p.59

반면, 모로코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초 5년간 세금 전액을 면제해주며, 이후 20년 간 80% 경감된 세금을 납부한다. 수출 또는 상품 가치 평가 후 판매하는 회사에게 광물을 판매하는 광업회사의 경우 20%가 영구 면제된다. 또한 모로코에 상주거처가 있으며 외국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납세자는 동 연금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세금의 80%가 경감된다. 단, 동 연금의 총액은 모로코 디람으로 환산된 금액이다.

소득세의 최소세율은 0.5%이며,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영리회사의 경우 0.25%, 특정 직종의 경우 6%이다. 동 세금의 총액은 세전 운영 소득액에 근거하여 계산된 최소세금보다 커야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사업 개시일 후 최초 3년 동안은 최소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후 총매출액이 발생하지 못하여도 최소세액인 1,500디람 이상이 부과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일률 과세 규정(flat-rate regime)에 따라 소득세 납부 제외 대상이 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회사는 인터넷 상에서 원격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 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한 세금으로 산업, 상업 및 수공업 활동, 전문가, 건설업, 부동산 운영 및 수입에 적용되며, 국내상품 부가가치세와 수입상품 부가가치세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나, 포도주 또는 주류는 헥토리터(100리터) 당 100 디람, 금 또는 백금은 그램당 5 디람, 은은 그램당 0.10 디람의 특별세가 부과된다. 주요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주요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에 따른 공제율 〉

공제율	주요 공제 조건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터, 차(茶), 철도를 제외한 여객 및 화물 수송, 전기, 소형 상용차(LCV) 및 오토바이, 태양열 운수기</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서 실시되는 숙박 및 외식(外食) 서비스</li> <li>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식료품 및 음료</li> <li>식용유, 쌀, 파스타, 소금</li> <li>태양열운수기(2015년 재정법에 따라 기존 14%에서 10%로 변경)</li> <li>석유 가스, 기타 탄화수소 가스, 석유 또는 세일 오일</li> <li>은행·신용 거래 및 외환 수수료</li> <li>변호사, 통역사, 공증사, 수의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직이 수행한 활동</li> <li>OPCVM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과 관련된 거래</li> <li>증권사가 실시하는 유가증권 관련 거래</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제설탕 및 각설탕</li> <li>저연비차량과 동 차량 제조 시 필요한 모든 제품, 부품 및 규정 조건에 따른 조립 서비스</li> </ul>

자료원 : 모로코 투자청

제 3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기관 및 유사기관의 이자 지급, 법에 따라 시행된 유동화로 발생한 이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천 징수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비적용 분야의 외국 기업이 모로코 고객과 수행하는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거래 시마다 징수되며, 고객 지불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속한 세무 행정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모로코 비거주자(외국 기업 포함)의 부가가치세 자율결산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 납세자는 모로코에 거주하는 세무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 동 대리인은 모로코 세무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하며, 모로코 내 하청업체에 지불한 기타 세금 공제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이 모로코에서 철수할 경우 세무대리인은 동 회사가 소속된 지방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기업철수신고서와 세무대리 종료 보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송부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외국계 기업을 대신해 모로코 고객이 법적 납세자로 간주된다.



과세 대상 기업이 내수<sup>74)</sup> 시장 또는 수입<sup>75)</sup>을 통해 취득하여 자본계정(compte d'immobilisation)에 등록한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개시일<sup>76)</sup>로부터 최초 3년 간 면제된다. 현행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로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연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한 기업이 국가와 협약 체결로 시행하는 투자 프로젝트(예산 총액 1억 디람 이상)에 필요한 장비, 자재, 설비 및 수입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3년 동안 면제된다. 동 기업에게 투자 프로젝트 관련 건설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의 기한이 주어지며,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6개월)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수출용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모든 회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원격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 
- 74) 투자 프로젝트 관련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건설 기한은 건축 허가증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다. 상기 36개월 동안 해당 지방 국세청에 구매 청구서를 제출하는 조건 하에 자본재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75) 투자 프로젝트 관련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기간은 건설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이며,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6개월)이 가능하다.
- 76) 영업 개시는 회사 설립 및 정착에 필요한 3개월간의 비용을 제외한 재화 및 서비스의 첫 번째 취득과 일치하는 최초 상업 행위의 날짜를 의미한다.

### 3 기타 법률 및 조정·중재

#### 가.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법

모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며, 국제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국 관련법 개정, 지식재산권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및 상업재산권 보호와 국내법·국제법 이행 관련 업무는 모로코 특허청(OMPIC: Offic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sup>77)</sup>이 관할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directinfo.ma>)에서 관련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개인 혹은 법인은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특허청 및 모로코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낼 수 있다. 단일종류의 유럽식 특허는 20년 간 유효하며, 모로코 특허보다 유럽 특허의 신청 절차가 길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나 보호범위 측면에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뮌헨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 적용돼 선호된다.<sup>78)</sup>

저작권의 경우 산업투자통상디지털경제부 산하 모로코 저작권사무국(BMDA: Bureau marocain du droit d'auteur)<sup>79)</sup>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이용을 관할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령은 창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체계 강화 및 현대화, 모로코 국내법과 모로코가 체결한 국제협약·조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이다.

2017년 6월 모로코는 녹음물/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차단을 위해 CD, DVD, USB, 외장하드 및 저장매체가 내재된 휴대전화, TV, 네비게이션, 테블릿 PC 등에 '사적인 복제에 관한 특별세(Redevance sur les copies privee

77) 모로코 특허청(OMPIC)은 산업통상투자디지털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산업재산권 신청(발명특허, 상표권, 의장등록) 접수, 등록, 교부 및 공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책임지고 있다.

78) 산업통상자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p.132-133

79) BMDA는 문화공보부 산하 모든 형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및 육성 전담 기관(1965년 설립)이다.

s)<sup>80)</sup>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적인 복제에 관한 특별세’는 저작권이 부여된 녹음물 또는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저장매체(수입품 및 모로코 생산품 모두 적용)에 부과되는 특별세로 부과대상 물품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업자 등 납세의무자는 모로코 저작권사무국(BMDA)에 세관신고 제출 20일 전까지 정해진 양식을 제출 후 납세를 완료해야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 나. 경쟁법

모로코는 경쟁법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결정, 진입장벽 해소, 투명성,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위원회<sup>81)</sup>를 설치하여 시장 경쟁 분석·규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통제, 불공정한 상업 관행의 규제를 통해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sup>82)</sup>

단, 법률로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는 밀가루, 설탕, 석유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식수, 전기, 대중교통 등 기초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담배 등 독점상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은 컴퓨터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신원, 개인 및 단체의 권리와 자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80) 동 특별세는 불법복제 또는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복제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복제를 가능하게 하거나 신형 TV, 휴대폰과 같이 저장 기능이 있는 모든 매체에 동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리로 도입되었다.

81) 모로코 경쟁위원회 홈페이지 [www.conseil-concurrence.ma](http://www.conseil-concurrence.ma)

82) 산업통상자원부, 『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 중동』 p.140-141

해당 법령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거나,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반대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 수정 또는 오래되거나 처리가 끝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정의한다.

개인정보 통제 및 보호 위원회(CNDP: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는 개인정보처리가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합법적인지 여부, 사생활 및 자유·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 라. 조정·중재

모로코 상법은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중재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공법상의 법인까지 중재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중재판결이 모로코 국내 전반에 관련된 경우 동 판결의 집행은 관할지역내 행정법원 또는 라바트 소재 행정법원 소관이다.

중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중재기관의 권한의 유효성 및 범위 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다. 또한, 일방이 요청하면 권한 내에서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V. 모로코 생활환경

1. 교육환경
2. 의료시설
3. 주거환경
4. 생활물가

## 1 교육환경

### 가. 개요

모로코의 공교육 제도는 무상이며, 7세부터 13세까지 의무교육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교육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및 박사과정으로 돼있다.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있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며 명문학교일수록 졸업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학교 중퇴율이 높아 15세 이상 성인 문맹률이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지역간 편차가 크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며 2세부터 6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 공립 학교는 초등교육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모로코 생활수준에 비해 학비가 비싼 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기를 선호하며, 전통적으로 프랑스계, 스페인계 사립학교가 인기가 많다. 모로코 상류층 및 모로코 거주 외국인들은 영미권 국제학교를 선호하는 편이다.

고등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9년의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선택해 입학하며 고등학교부터는 대분류된 각 전공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받게 된다. 1년차에는 문학, 수학, 과학 등 자신이 원하는 계열을 선택할 수 있으며 2년차에는 자연과학, 물리, 농학, 기술, 수학 교육을 이수한다. 3년의 과정을 마친 후 대학 입학시험이라 볼 수 있는 바칼로레아(Baccalaureat)를 치르게 되며, 바칼로레아의 합격증은 자격증 구실을 해 일반 기업 채용 시 기준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모로코 대학의 학제는 4년으로 학비가 무료인 국립과 유료인 사립으로 나뉜다. 대학 강의는 불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모로코 정부 초청이나 대학교 측이 입학

을 인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입학 구비 서류는 주한 모로코 대사관 추천서나 주 모로코 한국 대사관 추천서를 제출하고, 대학 당국에 입학허가를 신청한다.

주요 대학으로는 라바트 소재 Mohamed V세 대학, 카사블랑카 소재 Hassan II 세 대학, 페스 소재 Sidi Mohamed Ben Abdellah 대학, 마라케시가 소재 Cadi Ayyad 대학 등이 유명하며, 미국식 교육을 하는 이프란 소재 Al Akhawayne 대학<sup>83)</sup>도 신홍명문으로 알려져 있다.

## 나. 국제학교

모로코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교육의 질, 학교 시설, 학급당 학생 수,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를 선호하며, 국제학교는 영미계 학교와 프랑스, 스페인 등 여타 유럽계 학교들이 있다. 모로코의 일반적인 생활물가에 비해 학비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입학요건이나 절차는 학교마다 상이하며, 학교선택시 국제적으로 어떤 학력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 1) 영·미계 학교

#### 가) 라바트

##### ○ Rabat American School(RAS)

- 주소 : 1 Bis Rue Emir Ibn Abdelkader, Agdal, Rabat 10080 Morocco
- 웹사이트 : <https://www.ras.ma/>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국제 학교
- 입학절차 : 학기 초(3월초, 8월말)에 부모가 직접 학교에 가서 신청
- 필요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카드 등 건강기록, 여권

83) 1995년 사우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영어로 교육하고 미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입학요건은 여타 미국 대학과 동일하다.

〈 Rabat American School(RAS) 학비 〉

(단위 : 미 달러)

학 제	학년제	취학연령	수업료	육성회비	버스통학비(왕복)
유아원	-	-	6,605(반일) 12,365(종일)	9,250	1,137
유치원	-	-	17,715		
초 등	1-5(5년)	만6세	21,695		
중 등	6-8(3년)	만12세	25,230		
고 등	9-12(4년)	만15세	25,410		

\* 육성회비는 최초 입학 시에 한하여 지불함.

\* 입학신청수수료 : 310미불

○ Khalil Gibran School Rabat (KGS)

- 주소 : Avenue Bir Kacem, Soussi, Rabat 10170 Morocco
- 웹사이트 : <http://www.kgs-rabat.ma/>
- 유치원(4세)부터 고등교육까지 제공하며, 교육과정은 모로코, 영국, 미국식 교육 프로그램 혼합으로 아랍어, 영어, 불어 3개국어 멀티 링구얼 수업 진행

○ Maple Bear Global School

- 주소 : Rue Chraga avenue Bani Wrayine Souissi, Rabat 10170 Morocco
- 웹사이트 : <http://maplebearrabat.com>
- 유치원부터 초등교육까지 제공하는 캐나다계 학교

나) 카사블랑카

○ Casablanca American School(CAS)

- 주소 : Route de la Mecque, Lotissement Ougoug, Quartier Californie, Casablanca, Morocco
- 웹사이트 : <http://www.cas.ac.ma/>
- 유치원부터 고등교육 과정까지 개설돼 있으며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제공한 북아프리카 최초 학교임. NEASC 승인 획득



- George Washington Academy(GWA)
  - 주소 : 5.6 Km Route d'Azemmour, Casablanca, Morocco
  - 웹사이트 : <https://www.gwa.ac.ma/>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Advanced Placement(AP) 과정을 제공하고 졸업생들에게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 International School Of Morocco(영국식 국제학교)
  - 주소 : #3 Impasse Jules Gros Quartier Oasis, Casablanca 20150 Morocco
  - 웹사이트 : <https://www.ism-c.ma/>
  - 3세-14세 아동 교육, 영국식 COBIS 및 미국식 NEASC 승인 획득
  
- American Academy Casablanca (AAC)
  - 주소 : RN# 3020 Ville Verte Casa Green Town, Bouskoura, 27182 Morocco
  - 웹사이트 : <http://www.aac.ac.ma/>
  - 영어, 불어, 아랍어 멀티 링구얼 교육

#### 다) 탕제(Tanger)

- American School of Tanger (AST)
  - 주소 : 149 Rue Christophe Colomb, Tanger 90000 Morocco
  - 웹사이트 : <http://www.theamericanschooloftangier.com>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하며, AP 과정 제공
  
- Anglo-Moroccan School (AMS)
  - 주소 : Km 5.5, Route de Rabat, Ziaten, Tanger, Morocco
  - 영국식 교육과 아랍어, 불어로 모로코 문화 수업 병행

I

II

III

IV

V

VI

VII

VIII

라) 마라케시

- American School of Marrakesh(ASM)
  - 주소 : Route de Ouarzazate B.P. 6195 Marrakech 40000, Morocco
  - 웹사이트 : <http://asm.ac.ma/>
  -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육, 5학년부서는 매일 불어수업 진행

마) 페스

- American School Amicitia
  - 주소 : Km 3 Rte Immouzzer, Fès 30050, Morocco
  - 웹사이트 : <http://www.americanschoolfes.com/MessagefromtheDirector.html>
  - 미국식 커리큘럼 수업 제공

2) 비영어권 국제학교

모로코 내 주요 도시에는 선호도가 높은 Lycee Descartes를 비롯하여 다수의 프랑스계 및 스페인계 등 비영어권 유럽계 학교들이 있다.

가) 라바트

- Lycee Descartes Rabat(프랑스계 국제학교)
  - 주소 : B.P. 768, Place Jean Courtin, Agdal, Rabat 10106 Morocco
  - 초·중·고교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학교

나) 카사블랑카

- Lycée Lyautey(프랑스계 국제학교)
  - 주소 : 260 Boulevard, Ziraoui, Casablanca 20040 Morocco
  - 중·고교 과정 개설

- Ecole Théophile Gauthier(프랑스계 학교)
  - 주소 : Bld Bir Anzarane - Quartier du Maârif, Maarif, Casablanca  
20100 Morocco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개설
- Collège Anatole France(프랑스계 학교)
  - 주소 : Rue du Sergent Portelli, Casablanca 20200 Morocco
  - 유치원
- Ecole Ernest Renan(프랑스계 학교)
  - 주소 : 1, rue de la Pie, Oasis, Casablanca 20200 Morocco
  - 유치원 및 초등학교
- Ecole Claude Bernard(프랑스계 학교)
  - 주소 : Rue de l'Aisne - Quartier Belvédère, Casablanca 20200  
Morocco
  - 유치원 및 초등학교

#### 다) 탕제

- Lycée Regnault (프랑스계 국제학교)
  - 주소 : 13 Allal Ben Abdellah Tangier 90000 Morocco
  - Tel: 212 5 39 32 82 60
- Colegio Español Ramón y Cajal(스페인계 학교)
  - 주소 : Rue Sidi Bouabid, iberia, Tanger, Morocco
  - 초등학교

#### 라) 마라케시

- Lycee Victor Hugo de Marrakech(프랑스계 학교)
  - 주소 : Route de la Targa - BP 2406 Marrakech, Morocco
  - 웹사이트 : <http://www.citescolairehugorenoir.org/>

I

II

III

IV

V

VI

VII

VIII

## 다. 한글학교

모로코에는 재외동포재단 지원을 받아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한글학교가 있다.

- 라바트(Rabat) 토요 한글학교
  - 주소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41 Av. Mehdi Ben Barka, Souissi, Rabat, Morocco
  - 유아반부터 고등부 과정까지 한글 및 국사 수업 진행
- 아가딜(Agadir) 한글학교
  - 주소 : Protestant l'eglise Rue Chouhada, Agadir, Morocco
  - 초등부부터 성인반까지 한글 수업 진행
- 페스(Fes) 한글학교
  - 주소 : Km 3 RTE immouzzet Fez 30050 Morocco
  - 유치부부터 중등부 과정까지 한글 수업 진행

## 2 의료시설

수도 라바트에는 UN병원, Sheikh Zayed, Clinique Agdal 등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병원이 있으며 외국(특히 프랑스)에서 수련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의료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떨어지므로 개인이 필요한 치료 및 건강진단은 가급적 국내에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 질병 또는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내 의료진의 진찰을 받은 후,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기록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사블랑카 등 주요도시의 일반적 의료수준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잘 갖추어진 편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나 전문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지방에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여행 시 사전에 비상구급약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긴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앰블런스를 불러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거나 야간 의사를 호텔로 부를 수 있다. 단, 앰블런스 호출은 지역마다 전화번호가 다르다.

모로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초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모로코 약국의 평일 영업시간은 9:00-12:00, 15:00-20:00, 토요일은 10:30-13:00시이다. 드물게 21시, 자정, 24시간 영업하는 약국도 있으나, 시내에 소재한 대부분의 일반 약국은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으며, 지역별로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품을 판매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한 각 지역별 주요 병원 〉

지 역	병원명	연락처
Rabat	Clinique Nations Unies	212 5 37 67 05 05
	Hôpital Sheikh Zayd	212 5 37 68 68 68
	Clinique Agdal	212 5 37 77 77 77
Casablanca	Hôpital Ibn Rochd	212 5 22 48 10 10
	Hôpital Mohammed V	212 5 22 34 03 76
Agadir	Hôpital Hassan II	212 5 28 84 14 77
Tantan	Hôpital Hassan II	212 5 48 87 71 26
Dakhla	Hôpital Hassan II	212 5 28 89 77 05
Laâyoune	Hôpital Moulay Hassan Ben El Medhi	212 5 28 89 94 60
Fès	Hôpital Al Ghassani Dar Dbibegh	212 5 55 62 27 76
	Hôpital Omar Drissi	212 6 36 64 13 77
Marrakech	Hôpital Ar Razi	212 5 24 30 06 38
	Hôpital El Antaki	212 5 24 38 06 82
Tanger	Hôpital Mohammed V	212 5 39 93 08 56
	Hôpital Al Kortabi	212 39 93 42 42

### 3 주거환경

모로코는 단독 주택 및 아파트가 주요 주거 형태이며, 임차 시 일반적으로 가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 간혹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가 있으나, 가구 미포함 임차에 비하여 고가의 임차료를 요구한다. 주택·아파트 임차는 일정기간(2-3년)을 정해 놓고 매월 초 임차료를 납부하는 월세 형식이 주를 이룬다.

임대차 계약서는 정부 공인 표준 계약서에 따라 작성되며, 양자 합의에 의해 추가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소개소를 통하여 계약할 경우, 입주자가 1-2개월 분의 임차료를 중개료로 지불한다. 또한 임차 보증금으로 1-2개월 분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예탁하고, 임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단, 임대인이 임차 계약 종료 후 각종 이유를 핑계로 임차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 시 각 지역별 지방행정청을 방문하여 법적 효력을 위한 공증(Legalisation) 및 서명을 마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1부씩 보관한다. 임대차계약서는 전화 및 인터넷 신청 등에 필수 서류로 요구된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 4 생활 물가

〈 모로코 주요 도시 평균 생활 물가<sup>84)</sup> 〉

(1 US\$ = 9.50디람 / 2017년 10월평균)

구분	항목	가격 (디람)
식품류	쌀 1kg	20
	계란 12개	30
	쇠고기 등심 1kg	85
	생닭 1kg	40
	우유 1L	10
	식용유 1L	18
	생수 1L	6
	맥주(하이네켄 330ml)	18
	담배 1갑(말보로 라이트)	33
	햄버거(버거킹 와퍼 세트)	54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 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2,76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
차량관련	승용차(현대 싼타페 4x4)	397,800
	승용차(Dacia Logan)	74,900
	무연휘발유 1L	9
	자동차 등록비	3,000
	자동차보험료(의무)	6,500

84) 해당 생활물가는 수도 라바트 및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책정된 평균 가격이며 각 도시·지역 및 시장 종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분	항목	가격 (디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5
	시내버스 기본요금	5
	택시 기본요금	1.4
	트램(라바트)	6
	기차 2등석 (라바트-카사블랑카 편도)	37
	기차 1등석 (라바트-카사블랑카 편도)	69
통신	시내전화 요금(3분) 유선 → 유선	3
	국제전화 요금(3분, 한국으로 걸 때) 유선 → 유선	17
	휴대전화 요금(월 표준 1분, 같은 통신사일 경우)	1.5
	인터넷 월 사용료(ADSL 기준) 4M	100
	4G USB모뎀 1달 기준(첫 구입 시)	500
	휴대전화 3G 유심 (Maroc 텔레콤 1달 데이터 요금제, 유심가격 포함)	12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 급여)	4,000-7,000
	생산직 초임(학력무관, 최저 월 급여)	2,570
	청소부 아주머니(일당)	120-150
	주당 법정근무시간	최대 44시간
	출산휴가일수	14주
	연간 국경일수	15
	주5일 근무 여부	0
기타	일반 세탁(와이셔츠)	20
	드라이클리닝(코트)	45
	두루마리휴지(12개)	30
	헤어스프레이	65
	고무장갑	20
	샴푸	35
	주방세제	15
	전구	25
바디샴푸	30	





## VI. 출장자 안내

1. 모로코 여행자 통관정보
2. 체류 시 유의사항

## 1 모로코 여행자 통관정보

모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1993년 9월 1일)이 체결돼 있어 무비자로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제, 마라케시 등 주요 국제공항 및 항만의 출입국 심사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입국심사 시 여권 사증란에 입국 스탬프와 함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일련번호(6자리 숫자와 영문 대문자 2자)가 기입되며, 동 번호는 숙박 시설 체크인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최근 테러 예방 차원에서 출입국 시 X-Ray 검사 및 개별 물품 검사 등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세관 검사에 대비하여 테스트용 기기 및 샘플 등은 관련 공식 서한 및 ATA 까르네(ATA CARNET<sup>85</sup>)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모로코 여행자 통관 정보 〉

주류	1병(1리터) 면세 통관
담배	200개비 면세 통관
향수	향수 150ml 및 화장수 250ml 면세통관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 및 여행 기념품(현지화 2,000디람 이하의 가치)</li> <li>○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용 컴퓨터, 개인용 악기, 스포츠 용품, 자전거 등 각 1대</li> </ul>
외국환 신고	<p>모로코 화폐(디람)의 반출·입은 엄격히 금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 반출 신고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객 : 10만 디람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반출할 경우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li> </ul> </li> </ul>

85)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샘플·전시물품·테스트기기 등 반입 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http://cert.korcham.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국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로코 거주자 : 10만 디람 미만에 해당하는 외화는 은행에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후 여권에 확인도장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bordereau de charge'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 허가받은 후 반출 가능하며, 10만 디람 이상은 반출 불가함.</li> <li>○ 외화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 디람 이상의 외화를 반입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li> </ul> </li> <li>○ 외국환 휴대 반·출입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초과 외화를 반출·입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함.</li> <li>-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지한 외화를 모두 압수당할 수 있음.</li> </ul> </li> </ul>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량의 개인 사용분은 반입이 가능하나 의사진단서·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에 비치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함.</li> <li>○ 개인사용 목적 외에는 보건부의 반입 허가서가 필요함.</li> </ul>
식품	농산물은 식품위생허가서가 필요함.
자동차	비 모로코거주자가 여행 목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자동차 등 개인 교통수단은 90일까지 반입 허용
반입불허품목	무기 및 탄약(단, 사냥용 무기와 탄약은 경찰청 허가 후 반입 가능), 마약류, 모로코 국내 법·질서·도덕을 혼란시킬 수 있는 기록물 및 영상물, 국제 협약(CITES)에 따라 보존되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등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으로부터 입국 시 말라리아 등 질병예방접종은 요구되지 않음.</li> <li>○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동물 건강진단서 지참 필요</li> <li>○ 일반 모로코 전통 민속예술품, 여행기념품 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예술품 및 골동품 반출 시에는 문화부의 허가가 필요함.</li> <li>○ 모로코에서 검사 및 제조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은 ATA 까르네를 준비해야 하며, 동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통관하지 못하거나 혹은 모로코 세관 당국에 압류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li> </ul>

자료원 : 모로코 항공청

모로코 화폐는 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외화 반출 시 10만 디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증빙서류 및 세관 허가가 필요하며, 외화 반입 시 10만 디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 2 체류 시 유의사항

### 가. 안전사고

모로코 전 지역은 여행정보 1단계 지역으로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모로코는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 상황 전반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빈부격차 및 지역 간 발전격차가 심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이나 해안가 등에서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도, 날치기, 소매치기 등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 및 대도시에서는 절도 및 강도 등의 범죄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지품(여권, 신용카드, 현금 등) 관리 등에 주의를 요하며, 선편으로 유럽과 연결되는 북쪽 항구도시 탕제에서는 현지어(불어 또는 아랍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강도, 날치기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남녀 불문, 야간 여행이나 혼자 벽지 또는 월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곽지역이나 시내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 유의해야 할 지역

- 탕제(Tanger) : 유럽(스페인)에 근접한 항구 도시로 유럽을 목적지로 한 밀입국자들과 미약거래자 등 범법자들이 많아,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 및 절도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카사블랑카(Casablanca) : 모로코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로 외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를 노리는 날치기 및 강도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노천카페 및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항구 주변을 조심해야 한다.
- 페스(Fès) : 주요 관광지인 메디나는 골목이 무척 비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상인들의 호객행위도 심하므로 공인된 가이드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좁은 골목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붐벼 소매치기 및 소지품 분실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디나의 대표 관광지인 가족 염색장(탄네리)에 가기 위해서는 인적이 드문 골목을 여러 번 지나야하므로 일행과 함께 갈 것을 권한다.

모로코 정부는 2003년 카시블랑카 테러사건 이후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도시에서 테러단체와 연계된 용의자들이 주요 시설 및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하다 모로코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잠재적인 테러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 시에는 신변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도, 날치기, 소매치기 및 기타 사건사고 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사관에 신속히 연락 후 방문해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혹시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 후 대사관에 연락하도록 한다. 테러가 일어날 경우, 긴급히 그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본인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속히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한다.

<b>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연락 전화번호(모로코내 통화)</b>	0661-16-4851
	0661-78-7722

\* 모로코 밖에서 통화시에는 국가번호 “212” 를 더하고 다음 “0” 을 제외  
212)661-16-4851, 212)661-78-7722

## 나. 교통사고

모로코는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므로 운전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며, 방어운전이 필수적이다.

- 차량은 우측통행이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방향차량이 우선이다. 앞뒤좌석 모두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도록 법규로 규정돼 있다.
- 모로코 운전자들은 급하게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월 및 난폭 운전이 심하므로 장거리 차량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교통사고가 발생 하면 통상 경찰이 도착시 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출동이 늦어 사상자를 오래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방의 경우 병

원시설 및 의료진이 완비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다. 사진 촬영

일반적으로 이슬람 사원, 향만, 공항, 군사지역은 사진 촬영 제한지역이다. 방송용 취재 및 촬영 시에도 사전에 모로코 관계당국(문화공보부)의 취재 허가를 받아 촬영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라. 기타 주의사항

모로코인에 대한 타종교 전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슬람 모로코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추방된 사례가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음주, 소란 등은 금지돼 있다. 비무슬림의 이슬람 사원(모스크)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매춘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모로코가 여타 아랍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스럽고 개방적 분위기이기는 하나 외국 관광객 중 비공식적인 유흥가를 이용하려다 체포돼 실형을 받은 경우가 있다.



## VII. 기 타

1. 유용한 연락처
2. 생활 불어 및 모로코 아랍어(테리자)

## 1 유용한 연락처

\* 모로코 국가번호는 “212”이다. 모로코 내에서 국가번호를 제외하고 전화할 때는 국가번호 다음에 “0”을 추가하여야 한다.

### 가. 주요 기관

####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41 Av. Mehdi Ben Barka, Souissi, Rabat
- 전화번호 : 212 5 37 75 1767/6791/6726/1966(4회선)
- 긴급 시 연락처 : 212 6 61 16 48 51, 212 6 61 78 77 22
- 팩스 : 212 5 37 75 01 89
- 이메일 : morocco@mofa.go.kr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12:30, 14:00~17:30
- \* 라마단 (이슬람 금식월) 기간 : 09:00~15:00 (점심시간 없이 계속 근무)

####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 주소 : Ghandi Mall, Bd Ghandi Immeuble 8, 2ème étage No 4, Casablanca
- 전화번호 : 212 5 22 98 96 27
- 팩스 : 212 5 22 99 45 13
- 이메일 : kotracasablanca@gmail.com

#### 모로코 투자청

- 주소 : Complexe Administratif et Culturel de la Fondation Mohamed VI sis Avenue Allal El Fassi, Madinat Al Irfane, Hay Riad, Rabat
- 전화번호 : 212 5 37 22 64 00
- 팩스 : 212 5 37 67 3417/3442
- 이메일 : info@invest.gov.ma

## Atlantic Free Zone

- 주소 : Atlantic Free Zone RN 4 Amer Saflia, Kenitra 14000
- 개발업체 : MED-Z(Groupe CDG)
- 담당자 : Mr. MAHA BENALI
- 담당자 전화번호 : 212 5 37 57 66 78
- 이메일 : showroom@medz.ma

## Midparc

- 주소 : MIDPARC - 390 bld Bourgogne - imm 2, appt. E, Casablanca 20053
- 전화번호 : 212 5 22 36 20 40
- 팩스 : 212 5 22 36 75 00
- 개발업체 : MED-Z(Groupe CDG)
- 담당자 : Mr. MAHA BENALI
- 담당자 전화번호 : 212 5 37 57 66 78
- 이메일 : noura.badi@midparc.com

## Tanger Automotive City

- 주소 : Tanger Automotive City, Commune Jouamâa, Province Fahs Anjra
- 개발업체 : Groupe Tanger Med
- 담당자 : Mr. AHMED BENNIS
- 담당자 전화번호 : 212 5 39 39 41 55
- 이메일 : in@tac.ma

## Technopolice Free Zone

- 주소 : Technopolis Shore Rocade 11100 Sala Al Jadida, Rabat
- 개발업체 : Med-Z(Groupe CDG)
- 담당자 : Mr. RACHID EL ALAOUI
- 담당자 전화번호 : 212 5 38 01 50 02
- 이메일 : contact@medz-sourcing.com

I

II

III

IV

V

VI

VII

VIII

## 나. 주요 법무법인

### Hajji & Associes

- 주소 : 28 Bld. Moulay Youssef, Casablanca 20070
- 전화 : 212 5 22 48 74 74
- 팩스 : 212 5 22 48 74 75
- 홈페이지 : www.ahlo.ma
- 담당자 : Mr. Amin Hajji(Director)
- 이메일 : info@ahlo.ma
- 특이사항 : 한국기업 대상 모로코 투자 설명회 개최, 한국기업 법률분쟁 처리 경험 있음.

### August & Debouzy

- 주소: Zenith Millenium Bureau 301, Lotissement Attaoufik Casablanca, 20190
- 전화: 212 5 22 87 94 13
- 홈페이지: www.august-debouzy.com
- 담당자: Mr. Kamal Nasrollah
- 이메일: contact@august-debouzy.com
- 특이사항: 2008년 사무소 개설

### Benjelloun Amin Fayçal

- 주소: 355 bd Mohammed V, Casablanca 20300
- 전화: 212 5 22 24 92 19
- 팩스: 212 5 22 40 03 07
- 담당자: Mrs. Amin Faycal Benjelloun
- 이메일: afbenjellounnotaite@menara.ma
- 특이사항: 공증사무소

다. 주요 회계법인<sup>86)</sup>

## Ernst &amp; Young

- 주소 : 37 bd Abdellatif Ben Kaddour Casablanca 20050
- 전화 : 212 5 22 95 79 00
- 팩스 : 212 5 22 39 02 26
- 홈페이지 : www.ey.com
- 담당자 : Mr. Abdelmejid Faiz(Director)
- 이메일 : audit@ma.ey.com
- 특이사항 : 회사설립 등 투자진출 자문제공, 1984년 모로코사무소 개설

## KPMG

- 주소 : 10170 Avenue Bir Kacem, Rabat
- 전화 : 212 5 37 63 37 02
- 팩스 : 212 5 37 63 37 11
- 홈페이지 : https://home.kpmg.com
- 특이사항 : 모로코 정부 재정/금융 개혁 관련 파트너로 참여, 1980년 모로코사무소 개설

라. 모로코 진출 주요 한국 기업<sup>87)</sup> (2017.11월말 현재)

기업명	분야
대우건설 모로코 지사	건설업 (Jorf Lasfar/Safi 화력발전소, OCP 인광석 비료공장)
삼성물산 모로코 지사	건설업 (OCP 인광석 비료공장)
삼성전자 모로코 법인	정보통신, 가전제품 판매법인
엘지전자 모로코 법인	정보통신, 가전제품 판매법인
유라 코퍼레이션 모로코 법인	자동차 케이블 제조업
포스코 엔지니어링 모로코 지사	플랜트 건설 (OCP 비료공장 인광석 이송장치 공사)

86) 알파벳 순

87) 가나다 순

## 2 생활 불어 및 모로코 아랍어(데리자)

### 가. 일상 회화

한국어	불어	데리자
안녕하세요	봉쥬르 / 봉스와(저녁)	쌀람알리쿰
안녕히 계세요(가세요)	오흐브와, 아비앵또	브 슬라마
감사합니다.	메르씨	슈크란
죄송합니다.	엑시궤제 모아	쓰메힐 리아
맛있습니다.	쎬 봉 / 쎬 딜리씨유	브닌
얼마입니까?	쎬 끽비앵?	브 샤알(아팍)?

### 나. 데리자 숫자

1 와헤드, 2 쥬즈, 3 틀래타, 4 르바하, 5 함싸, 6 쏫타, 7 스바하, 8 트메니아, 9 티쑤우드, 10 아슈라
11 헤다쉬, 12 트나쉬, 13 틀따쉬, 14 르바따쉬, 15 함쓰따쉬, 16 쏫따쉬, 17 스바따쉬, 18 트멘따쉬, 19 티싸따쉬, 20 아슈린
21 와헤다 우(and) 아슈린, 22 닌 우 아슈린, 23 틀래타 우 아슈린, 30 틀레틴, 31 와헤다 우 틀레틴, 32 닌 우 틀레틴, 40 아르비인(아르바인), 50 함신, 60 스텐, 70 스바인, 80 톨매닌, 90 세인
100 미야, 101 미야 우 와헤다, 200 미야테인/미틴, 1000 알프/엘레프, 2000 알페인

## VIII. 부 록

1. 모로코 투자현장(영문)
2.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 전문
3. 한-모로코 이중과세방지협약 전문
4. 모로코 투자혜택 정책(영문)
5. 모로코 주요 법률 요약본(영문)
6. 근로계약 분쟁관련 주요 쟁점 요약

1

모로코 투자헌장(영문)<sup>88)</sup>

UNCTAD Compendium of  
Investment Laws



## Morocco

### Investment Charter (1995)

*Unofficial translation*

**Note**

The Investment Laws Navigator is based upon sources believed to be accurate and reliable and is intended to be up-to-date at the time it was generated. It is made availabl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UNCTAD is not engaged in rendering legal or other professional services. To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has not been affected or changed by recent developments, traditional legal research techniques should be used, including checking primary sources where appropriate. While every effort is made to ensure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its content, UNCTA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eventual errors or omissions in the data.

The year indicated in brackets after the title of the law refers to the year of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or, when this is not available, the year of adoption of the law.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

---

88) UNCTAD



# Contents

**Title I. Objects of the Investment Charter**

**Title II. Measures of fiscal nature**

- Custom duties
- Value-added tax
- Registration tax
-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Solidarity
- Corporation tax
- Income general tax
- Decreasing redemptions
- Provisions for investment concerning corporation tax and income general tax
- Estate profit tax
- Franchise (licence) tax
- Urban tax
- Local taxation

**Title III. Measures of financial, praedial and administrative nature and other**

- Foreign exchange regulation
- Government take-over of certain expenses
- Investment Promotion Fund
- Lighte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 Temporary provisions

**Title IV. Agricultural sector**

**Title V. Application measures**

I

II

III

IV

V

VI

VII

VIII

# Investment Charter

Official Gazette No. 4336

Outline Law N° 18 – 95 Establishing Investment Charter

Dahir n° 1 - 95 - 213 of Joumada II 14, 1416 (November 8, 1995) providing for the promulgation of the outline law n° 18 - 95 establishing Investment Charter.

## [Preamble]

PRAISE BE TO GOD!

(Great Seal of His Majesty king Hassan II)

That it is known hereby - might God elevate and strengthen its content!

That Our Majesty,

In view of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ts article 26,

HAS DECIDED THE FOLLOWING:

Promulgated and wi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annexed to this present Dahir, is the outline law n° 18 - 95, establishing Investment Charter, adop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oumada I 7th, 1416 (October 3rd, 1995).

Rabat, Joumada II 14th, 1416 (November 8th, 1995)

## Title I. Objects of the Investment Charter

### Article 1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econd paragraph of the article 45 of the Constitution, the fundamental objects of the state's action for the forthcoming ten years with a view to developing and promoting investment by improving its atmosphere and conditions, reconsidering the field of tax encouragement and taking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 Article 2

The measures provided in this Charter tend to encourage investment by:

- reducing the tax burden related to operations on working stocks, tools, equipment goods and lands necessary to carry out investment;
- reducing the rate of taxation on income and profits;
- granting a preferential taxation regime in favour of regional development;
- strengthening the guarantees granted to investors by setting the grounds for appeal in both national and local tax matters;
- promoting offshore financial centres, export free – zones and a free industrial warehouse system;

- better assessment of the tax burden and right application of free competition rules, especially by reconsidering the application field of the granted tax exemptions.

These measures tend as well to:

- encourage exports;
- promote employment;
- reduce investment expenses;
- protect the environment.

## Title II. Measures of fiscal nature

### Custom duties

#### Article 3

Custom duties, including import duty and import tax levy shall be set as follows:

- import duty must not be inferior to 2.5 ad valorem;
- equipment goods, materials and tools as also their parts, spare parts and accessories considered as necessary to promote and develop investment, shall be liable to an import duty of 2.5% ad valorem as a minimum rate or 10% ad valorem as a maximum rate;
- equipment goods, materials, tools and their parts, spare parts and accessories referred to above shall be exempted from import tax levy, with regard to the national economic interests.

### Value-added tax

#### Article 4

Shall be exempted from inland and import value-added tax the equipment goods, materials and tools that have to be inscribed in a realty account and thus open the right to tax d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value-added tax.

Subjected enterprises that have paid import duty or local purchase tax on the above mentioned goods shall benefit by the reimbursement of the said duty or tax.

### Registration tax

#### Article 5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gistration tax the acquisition deeds of lands intended for carrying out an investment project, excluding the deeds mentioned in a) of the second paragraph hereunder, on condition that the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a maximum term of the 24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the deed.

Are subjected to registration tax at a 2.5% rate:

- a. the acquisition deeds of lands intended for carrying out housing estate and construction operations;

b. the constructions mentioned above, acquired for the first time by persons and /or corporate bodies other than credit establishments or insurance companies.

Are subjected to a registration tax of 0.50% as a maximum rate the contribution to the initial capital of the companies or any capital increase.

##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Solidarity**

### **Article 6**

The National Solidarity Tax, attached to the corporation tax, shall be suppressed.

However, the profits and income which are entirely exempted from the corporation tax in pursuance of the present or future legislations establishing incentive measures to investment are liable, in stead of th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Solidarity, to a tax equal to 25% of the corporation tax which could have normally been eligible if exemption does not exist.

## **Corporation tax**

### **Article 7**

- a) The corporation tax rate is brought back to 35%.
- b) The enterprises exporting products and /or services profit, according to their export turnover<sup>a</sup> by special advantages which may go so far as to total exemption of the corporation tax during a five year period and to 50% reduction beyond this period. With regard to enterprises exporting services, however, the aforesaid exemption and reduction apply only to export turnovers effected in foreign currency.
- c) The enterprises established in the prefectures or provinces whose economic activity level requires a preferential tax treatment profit by 50% reduction of the corporation tax during the first five consecutive years of their operation, excluding permanent establishments of companies having their registered offices outside Morocco, allottees of work, supply or service tenders credit establishments, insurance companies and real estate agencies.
- d) Crafts enterprises whose product is essentially the result of manual work profit by 50% reduction on the corporation tax during the first five years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ir operation, wherever the place of their establishment may be.

## **Income general tax**

### **Article 8**

- a) The rate of income general tax scales shall be reset, the maximum of taxation rate should not exceed 41.50%.
- b) The enterprises exporting products and/or services profit, according to their export turnover, by special advantages which may go so far as to total exemption of the income general tax during a five year period and to 50% reduction beyond this period. With regard to the enterprises exporting services, however, the aforesaid exemptions and reduction apply only to export turnover effected in foreign currency.

c) The enterprises established in the prefectures or provinces whose economic activity level requires a preferential tax treatment profit by 50% reduction on the income general tax during the first five years of their operation, excluding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of companies having their registered offices outside Morocco, allottees of work, supply or service tenders credit establishments, insurance companies and real estate agencies.

d) Craft enterprises whose product is essentially the result of manual work profit by 50% reduction on the income general tax during the first five years following the beginning of their operation, wherever the place of their establishment may be.

e) The profit of the above mentioned advantages is subordinated to regular book-keeping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s in force.

## Decreasing redemptions

### Article 9

Shall be maintained for the equipment goods during the period mentioned in Article 1 above, the measures provided by the legislation relating to the corporation tax and the income general tax in the decreasing redemptions matter.

## Provisions for investment concerning corporation tax and income general tax

### Article 10

Are considered as deductible charges the provisions made, within the limit of 20% of taxable profit before taxation, by the enterprises aiming to effect investment in equipment goods, materials and tools, within the limit of 30% of the said investment, excluding lands, constructions other than those reserved for professional use and private cars.

Shall be maintained as deductible charges the provisions made by mining enterprises for reconstruction of mine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s relating to corporation tax and general income tax.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s, used in accordance to the object for which they have been made, shall be carried on a provisional account entitled "investment provisions".

The amount written down in the "investment provisions" account shall be used only:

- by incorporation in capital; or
- in deduction of previous financial years' deficit.

## Estate profit tax

### Article 11

In order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social housing, shall be exempted from the estate profit tax the profit realised by the persons with regard to the first assignment of the premises for dwelling use, provided that the assignment be of non-speculative purpose and that the housing be of a social character.

## Franchise (licence) tax



#### **Article 12**

The variable tax on the principal of the franchise (licence) tax shall be abolished.

Shall be exempted from the franchise (licence) tax all natural or artificial persons practising in Morocco a professional,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y, during the first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te of the beginning of their oper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is exemption the establishments of the companies having their registered offices outside Morocco, allottees of work, supply or service tenders, credit establishments, insurance companies and real estate agencies.

### **Urban tax**

#### **Article 13**

Shall be exempted from the urban tax the new buildings, additions to the buildings as also the outfit being part and parcel of goods or service production establishments, during the first five years following their completion or their set-up. Excluded from this exemption are the establishments, enterprises and / or agencies mentioned in the last paragraph of Article 12 above, exclusive of the leasing enterprises with regard to equipments that they acquire on behalf of their customers.

### **Local taxation**

#### **Article 14**

In regard to local taxation, simplification and harmonisation of maximum rates and basis of taxation shall be proceeded with to make them suitable for development and investment requirements.

## **Title III. Measures of financial, praedial and administrative nature and other**

#### **Article 15**

These measures have the following objects:

- free transfer of benefits and assets for the persons who carry out investments in foreign currency;
- creation of a praedial reserve intended for the realisation of investment projects and the definition of the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acquisition and the equipment of lands required for investment;
- orientation and assistance to investors, by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national instrument;
- simplifying and lighten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related to investment. Foreign Exchange Regulation

### **Foreign exchange regulation**

#### **Article 16**

Natural and artificial persons of foreign nationality, residents or non - residents, as also Moroccan natural persons who carry out investments financed in foreign currency in Morocco, profit for the said investments and in the field of foreign exchange regulation, by a convertibility system that guarantees them entire liberty for:

- the remittance of benefits free of tax with no amount or time limitation;
- the remittance of proceeds of assignments or of investment's total or partial liquidation, including surplus.

## Government take-over of certain expenses

### Article 17

The enterprises whose investment programme is very important on account of its amount, the number of permanent employments to be created, the region where it should be carried out, the technology of which it will ensure the transfer or its contribution to environment protection, can drive contacts with the government granting them, in addition to the advantages provided in this present outline law as well as in the texts that will be issued for its explanation, a partial exemption from the following expenses:

- land acquisition expenses required for investment realisation;
- external infrastructure expenses;
- vocational training costs.

The above mentioned contracts may involve clauses stipulating that the settlement of any disagreement relating to investment which may rise between the government of Morocco and the foreign investors, will be proceeded wit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ratified by Morocco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matters.

## Investment Promotion Fund

### Article 18

Shall be created an account for special assignment called "Investment Promotion Fund" designed to account the operation relating to the government's take - over of the costs of advantages granted to investor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vestment contract system mentioned in the previous article and also expenses required by investment promotion. Industrial Zones

### Article 19

In the provinces and for prefectures whose economic development level justifies a spe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is latter takes over a part of set-up costs of the industrial zones which will be implemented there.

### Article 20

Each industrial zone, if its surface importance justifies it,- shall have a management committee, composed of the zone users and the promoter who could be a public or private person in charge of its management and maintenance, supervision and inside security-keeping as well as the right application of the tender terms binding its promoter and users.

**Article 21**

Shall be established an administrative instrument in charge of the orientation, information and assistance to investors as also of investment promotion.

**Lighte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rticle 22**

Lightening and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ttached to investment realisation shall be proceeded with. In all the cases where an administrative permit is required for granting the advantages provided in this outline law, the said permit is supposed to be bestowed when the administration shall have given no response to the request within sixty days after its deposit.

**Temporary provisions**

**Article 23**

Shall be maintained the investors' vested rights concerning the advantages by which they profit in pursuance of the legislations establishing measures to encourage investment that remain in force up to the end of the term, and under the conditions, in which they have been granted.

**Title IV. Agricultural sector**

**Article 24**

The provisions of the pre sent outline law are not applicable to the agricultural sector who se taxation system, especially relating to investment, will be the object of a special legislation.

**Title V. Application measures**

**Article 25**

The present outline law will come into force in conformity with the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required for the realisation of the goals defined in this present outline law, reckoning from the finance law of 1996.

...



## 2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9년 1월 27일 라바트에서 서명  
2001년 5월 8일 발효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의 보다 큰 경제협력 특히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러한 투자의 장려 및 상호 보호가 기업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킴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의 일반성을 제약하지 아니하며, "투자"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가. 동산·부동산·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리스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등 기타 재산권
  - 나. 사의 지분·주식·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회사 또는 기업에의 참여
  - 다. 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
  - 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 및 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I

II

III

IV

V

VI

VII

VIII

마. 투자와 관련하여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및 개발에 대한 허가 등 면허나 허가와 관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  
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이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투자자"라 함은 타방계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각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자연인"이라 함은 각자의 법에 의하여 각자의 국적을 지닌 자연인을 말한다.  
나. 각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법인"이라 함은 공공기관·기업·재단·회사·상사·사업장 및 조직체 등과 같이 각자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실체를 말한다.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배당·이자·지분·자본·이득·사용료·기술지원수수료 및/또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4. "영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역 및 국제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  
나. 모로코왕국에 대하여는, 모로코왕국의 영역 및 모로코왕국이 해저·하층토 및 천연자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국제법과 모로코왕국의 법에 의하여 의도된 또는 미래에 의도되는 모로코왕국의 영해의 외측에 위치한 해양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계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계약당사자의 투자자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계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계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일방계약당사자도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

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이 협정과 일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

###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각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이거나 또는 회원국이 될 현재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 무역지대·공동역외관세지역·공동시장·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이나 기타 형태의 지역협력
  -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기타 국제약정

###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해결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 조에 의한 모든 지급액은 신속·충분·유효하고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입는 경우, 그 투자자는 징발 기간동안 입는 또는 재산의 파괴로 인하여 입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의한 지급액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나. 전투행위중에 아끼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

### 제5조

#### 국유화 및 수용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적법절차 및 무차별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지닌 기타 유사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행하여지기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적용가능한 상업적 이윤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의하여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설립·구성되었으나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6조

####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에게 그들의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지급액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제1조에 정의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보상금 및 기타 배상금
- 다. 투자의 처분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
- 라.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
- 마. 기존투자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
- 바.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2. 송금은 당해거래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7조 대위변제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지는 투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급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은 자국안에서 법이나 합법적인 거래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된다.
- 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관련 투자자의 청구권을 행사하고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한다.

### 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분쟁이 그 해결요청이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관할권 있는 법원 또는 1965년 3월 18일자의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이하 "국제본부"라 한다)에 회부된다.

3. 그 계약당사자의 관할권 있는 법원이 내린 결정 또는 국제본부가 내린 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계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 제9조 계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계약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분쟁이 교섭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계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이 중재재판소는 각 개별적 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이내에 각 계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부터 3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의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계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계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하며, 이 협정의 규정과 국제법의 원칙 및 규칙에 근거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계약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의 변호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잔여비용은 양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 어떤 사안이 이 협정, 양 체약당사자가 함께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 이 협정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정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 제11조 협정의 적용

- 이 협정은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발효이전에 현지화로 행하여진 투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발효이전에 존재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발 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 제13조 존속 및 종료

- 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그 기간의 종료 12월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한 기간씩 계속 유효하다.

2.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15년간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9년 1월 27일 라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위하여



3

### 대한민국-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sup>89)</sup>

1999년 1월 27일 라바트에서 서명

2000년 6월 16일 발효

#### 대한민국과 모로코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인 적 범 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제2조 대 상 조 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 또는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89) 대한민국 국세정보시스템

I

II

III

IV

V

VI

VII

VIII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민세 및
- (4) 농어촌특별세
-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모로코왕국의 경우

- (1) 일반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 (4) 부동산소득세
- (5) 국가통합세
- (6) 고정수익투자상품세
- (7) 주식과 사회적 지분의 양도소득세
- (이하 "모로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 가. "한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 나. "모로코"라 함은 모로코왕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모로코왕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모로코왕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모로코왕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모로코왕국의 영역을 말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모로코를 말한다.
  -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모로코의 조세를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

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또는 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모로코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 제4조 거 주 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이 용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인은 그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판매장

아.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공사. 다만, 그러한 장소 또는 공사는 8월 이상의 기간동안 존속하여야 한다.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보험회사가,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인이 그러한 활동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이 조항의 의미내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제6조 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차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있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만일 해운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상에 있다면 당해 선박의 모항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또는 그러한 모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조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이 국제운수에 있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윤에 부수되는 경우, 특히 컨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차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VIII

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의 기업의 소득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을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 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 항은 배당지급의 원천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세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계산되는 이윤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㉔,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가. 모로코에서 발생하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모로코왕국에서 면세되고
  -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모로코왕국의 정부 또는 모로코의 중앙은행(알 마그리브 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대한민국에서 면세되며
  - 다. 산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이자는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으로부터의 소득과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이들 증권·채권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제12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저작권 사용료와 어떠한 문학·극·음악 또는 미술작품이라도 그 생산 또는 재생산과 관련한 지급과 같은 기타의 사용료(그러나, 영화 필름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방송용 필름 또는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한 사용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어떤 법인의 자산이 본질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고 그 법인의 주식이 승인된 주식거래소에서 호가되는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의 활동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의 일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타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 제18조 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의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지급되는 종신 연금에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들중 하나가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연금 또는 종신 연금과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지급하는 기타의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들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나. 모로코의 경우에는 모로코의 중앙은행

###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 또는 사업 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받는 지급금이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동 지급금은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제21조 교수 및 연구자

1. 타방체약국의 정부, 공립대학 및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의 교육 또는 문화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교수·회의주최 또는 당해 기관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방문직전 거주자였던 개인은,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가 동 일방체약국외의 원천으로부터 그가 취득하는 것인 한,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주로 특정개인 또는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2조 기 타 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소득의 수취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러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자산이 그러한 고

I

II

III

IV

V

VI

VII

VIII

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다면,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3조 이중과세방지

1.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한 모로코의 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모로코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유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모로코안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가목에서 언급된 납부할 조세는, 국내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경감 면세 또는 기타 조세유인에 관한 법규정 및 동 협약의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을 세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모로코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모로코의 거주자가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모로코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모로코에서 납부할 조세에 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와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대응하여, 공제전 산출된 모로코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을 계산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나목에 의한 조세경감은, 그 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소득 또는 이득이 2009년 1월 1일후에 발생된다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24조

## 무 차 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일방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 인은, 어느 체약국에서도, 동일한 상황하에서 당해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 또는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동 기업의 과세되는 자본을 결정할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계약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
5.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정하여진 기한에 관계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이를 목적으로 그들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26조 정보 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소추 또는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 또는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8조 발 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 나. 모로코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제29조

### 종 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의 비준서 교환 연도 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의 납세분에 대하여
-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납세분에 대하여

#### 나. 모로코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납부되거나 세액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9년 1월 27일 리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4

모로코 투자혜택 정책(영문)



1. INDUSTRIAL AND INVESTMENT DEVELOPMENT FUND (FDII)<sup>2</sup>  
A- CONVENTIONAL SCHEMES

ELIGIBILITY CRITERIA <sup>3</sup>	CONDITION	BENEFITS		
		LAND	INFRASTRUCTURE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vestment equal or superior to 200 million MAD</li> <li>✓ Creation of at least 250 stable jobs</li> <li>✓ Establishment in one of the "priority" provinces or prefectures</li> <li>✓ Technology transfer</li> <li>✓ Environmental protection</li> </ul>	The signing with the State of an investment contract approved by the Investment Commission	State contribution of up to 20% of land acquisition costs	State contribution to infrastructure costs, totalling up to 5% of investment (10% for textile spinning, weaving, or finishing)	State contribution of up to 20% of professional training costs.
AUTOMOTIVE ECOSYSTEMS				
CABLING	ACTIVITY	SUBSIDY		
CONNECTION PRODUCTS		30% of investment for first 2 companies		
PRECISION MECHANICS PIECES		20% of investment for first 2 companies		
VOLUMINOUS PARTS FOR PLASTIC INJECTION		20% of investment for first 2 companies		
CABLE MANUFACTURERS		Integration bonus of 0.25% of turnover for manufacturers who purchase locally at least 70% of their connectors and terminals parts.		
VEHICLE INTERIOR AND SEATS		20% of investment (<2 M MAD) for first 2 companies for purchase of shaping and cutting machineries		
		30% of investment (<3 M MAD)		
		30% of investment (<15 M MAD) for first 3 companies + bonus for first 3 years (<5 M MAD)		
		30% of investment (<3 M MAD) for first 2 companies + bonus for first 3 years (<5 M MAD)		
METAL STAMPING		30% of investment (<30 M MAD) for first 3 companies + bonus for first 3 years (<10 M MAD)		
CAR BATTERIES		30% of investment (<10 M MAD) for first 2 companies + bonus for first 3 years (<5 M MAD)		
		20% of investment (<15 M MAD)		
		30% of investment (<2 M MAD) for 1st company		

<sup>3</sup> a. The investment project must meet at least one of the five criteria

b. Engagements with regards to amount invested and/or jobs created are made over a period of 3 years, extendible by maximum 2 years  
Investment Guide



<p><b>2. HASSAN II FUND</b></p> <p>✓ Investment superior to 10 million MAD (excluding import duties and taxes) and including a minimum of 5 million MAD for equipment goods.</p> <p>✓ Sectors concern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quipment manufacturing for the <u>automotive industry</u></li> <li>• Equipment manufacturing for the <u>aeronautics industry</u></li> <li>• Manufacturing of <u>tools and molds for the auto industry and the aircraft industry</u></li> </ul> <p><sup>4 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ronautical maintenance and dismantlement of airplanes</u> ;</li> <li>• Manufacturing of <u>electronic assembly</u> and sub-assembly components</li> <li>• Manufacturing activities related to <u>nanotechnology, microelectronics, and biotechnology</u></li> </ul>	<p>Signature of an investment contract with the Hassan II Fund (HIF)</p>	<p><b>BENEFITS</b> Subsidies capped at 15% of investment and 30 million MAD to finance:</p> <p><b>BUILDING</b><sup>3</sup> HIF contribution of up to 30% of costs of professional buildings (max. 2000MAD/m<sup>2</sup> excl. tax)</p> <p><b>EQUIPMENT</b> HIF contribution of up to 15% of acquisition costs of new equipment goods (excl. import duties and taxes)</p> <p><b>SPECIFIC TREATMENT</b><sup>6</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jects in the aeronautics industry whose the investment amount in equipment is greater than 200 million dirhams (excluding import duties and taxes) may be made in one or more phases by considering each phase as an eligible project for the Fund's contribution</li> <li>✓ The eligible investment projects in manufacturing equipment for the automotive industry benefit from a maximum contribution of 15% to the acquisition of used equipment goods imported used in deep-drawing, plastic injection and</li> </ul>
---	--	--

<p><b>ELIGIBILITY CRITERIA</b></p>	<p><b>CONDITION</b></p>	<p><b>BENEFITS</b> Subsidies capped at 15% of investment and 30 million MAD to finance:</p> <p><b>BUILDING</b><sup>8</sup></p> <p><b>EQUIPMENT</b></p>
------------------------------------	-------------------------	--

<sup>4</sup> Maintenance on airplanes means maintenance to be performed on equipment or aircraf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or regulations and the national aeronautical authorities.

<sup>5</sup> Is meant by dismantling of airplanes at the exploitation end or end of life , the recovery process and / or release to service of components extracted from said-aircraft.

<sup>6</sup> The deadline for realization of those projects in all their phases may not exceed the period of 60 months which may be extended to 12 months in case of force majeure or unpredictable circumstances.

<sup>7</sup> This contribution is combinable with the contribution under the construction or acquisition of professional buil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vestment superior to 10 million MAD (excluding import duties and taxes) and including a minimum of 5 million MAD for equipment goods.</li> <li>✓ Sec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hemical and para-chemical industry</b>, the Hassan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smetics and natural extracts Fund (HIIF)</li> <li>○ Recycling of local metal and plastic waste</li> <li>○ Phosphorus valorisation (phosphate)</li> </ul> </li> <li>• <b>Pharmaceutical Industr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earch in new innovative medicines having important therapeutic potential in fighting serious illnesses</li> <li>○ Production of innovative medicine, generics or biosimilars with high added value on the economic and therapeutic level</li> </ul> </li> </ul> </li> </ul>	<p>Signature of an investment contract with</p>	<p>HIIF contribution of up to 30% of costs of professional buildings (includes land cost if purchased by investor)</p>	<p>HIIF contribution of up to 20% of acquisition costs of new equipment goods (excl. import duties and taxes)</p>
--	---	--	---

### 3. Other Incentives: Value Added Tax (Article 123-22<sup>9</sup>-b) & Import Duties (Article 7.1 of Financial Law 12-98 for budget year 1998-1999 as amended and supplemented)

ELIGIBILITY CRITERION	CONDITION	BENEFITS VAT	CUSTOMS FEES / IMPO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vestment equal or superior to 100 million MAD</li> </ul>	<p>Signature with the State of an investment contract approved by the Investment Convention</p>	<p>VAT exemption during 36 months for the import of equipment goods, materials, and tools, star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company activities. This exemption is also granted to parts, pieces, spare parts, and accessories imported at the same time as the above-mentioned equipments. For companies who proceeds with construction, the 36-month delay begins from the date the authorisation to build is issued, with a one-</p>	<p>Exemption during 36 months from the date the investment contract is signed on import duties for equipment goods, materials, and tools.</p>

<sup>9</sup> 2015 Finance Law

<sup>10</sup> Beginning of activity corresponds to the 1<sup>st</sup> commercial act which coincides with the 1<sup>st</sup> acquisition of goods and services except the company creation fees and the first fee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of the company within 3 months.

Investment Guide



B- SCHEME IN FREE ZONES

ELIGIBILITY CRITERION	CONDITION	BENEFITS CUSTOMS FEES	TAXATION	CON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t least 70% of turnover generated by export</li> </ul>	Authorisation of the wali or governor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cal export free zones com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limited exemption from customs fees</li> <li>Simplified customs procedures</li> </ul>	<p><b>Corporate Tax</b><sup>11</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for 5 years, then 8.75% for 20 years</li> <li>Exemption of dividends or participation products by non-residents</li> </ul> <p><b>Income Tax</b><sup>12</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for 5 years, followed by a rate reduced by 80% for 20 years (for employment income)</li> </ul> <p><b>Value Added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limited exemption for products and services from the subject territory delivered and rendered in export-free zones.</li> </ul> <p><b>Business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emption during 15 years</li> </ul> <p><b>Registration fe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emption for acts of incorporation and capital increase</li> <li>Exemption for land acquisition required for the investment projec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 restrictions on repatriation or conversion of capital</li> <li>Transactions in foreign currencies can be made freely</li> <li>Possibility of the use of dirham banknotes to proceed in settlement solely for the benefit of residents for the following expen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alaries and other emoluments without limitation of amount</li> <li>Transport charges, repair, works and supply of products coming from the subject territory, within the limit of 5000 dirhams per operation and a maximum of 150,000 dirhams per year per operator.</li> </ul> </li> </ul> <p>NB: dirhams introduced into these areas should come solely from 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 or in currency opened in intermediary banks approved on behalf of operators established in these areas. (General Instruction of Foreign Exchange Operations_31/12/2012)</p>

<sup>11</sup> This benefit also applies to operations taking place between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same Export Free Zone and between companies established in different Export Free Zones (2012 Finance Law)

<sup>12</sup> This benefit also applies to operations taking place between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same Export Free Zone and between companies established in different Export Free Zones (2012 Finance Law)



## C- SCHEMES FOR OFFSHORE BANKS AND OFFSHORE HOLDING COMPANIES

### 1- Offshore Banks

ELIGIBILITY CRITERIA	CONDITION	BENEFITS	TAXATION	CON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practice as a main and habitual activity the reception of deposits in convertible foreign currencies;</li> <li>✓ To execute in these same currencies, for its own account or on behalf of its clients, all financial, credit, stock exchange, or conversion opera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btaining an agreement issu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fter consulting with the Al-Maghrib Bank</li> </ul>	<p><b>CUSTOMS FE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mption of import duties and taxes for equipment and furniture</li> <li>✓ Exemption from foreign exchange monitoring procedures</li> <li>✓ Reimbursement of import duties in case of local acquisition of foreign materials, securities, and equipment goods:</li> <li>•</li> </ul>	<p><b>TAXATION</b></p> <p><b>Incom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in full discharge of Income Tax for:</li> <li>✓ attendance fees and any other compensation paid to administrators</li> <li>✓ gross compensations paid to salaried employees</li> </ul> <p><b>Corporat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 the 15 years following the date the agreement is issued, the choice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ither a reduced tax rate of 10%</li> <li>• or payment of the counter value in MAD of 25,000 USD/year in discharge of all other duties and taxes applying to the profits or revenues of these banks</li> </ul> </li> <li>✓ Permanent exemption on the dividends distributed to shareholders.</li> </ul> <p><b>Value Added Tax</b></p> <p>Exemption with the right to deductibility f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ests and commissions on lending operations and all other services executed by these banks;</li> <li>✓ interests income from deposits and other placements made in convertible foreign currencies with said banks;</li> <li>✓ new equipment goods necessary for operations acquired locally by said banks;</li> <li>✓ office supplies necessary for the practice of said banks' activities.</li> </ul> <p><b>Business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manent exemption for the buildings occupied as headquarters or by branches</li> </ul> <p><b>Registration fe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mption of acts of incorporation and capital increas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e flow of repatriated foreign revenues or products;</li> <li>✓ Freedom of conversion for operators involving non-residents;</li> <li>✓ Freedom to make financial or banking operations in convertible foreign currencies for its own account or on the behalf of non-resident natural or legal persons;</li> <li>✓ Freedom to invest in Morocco and to acquire a stake in the capital of resident companie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in effect.</li> </ul> <p>Additionally, all their payments in Morocco must be made using accounts in foreign currency or 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 at a licensed Moroccan intermediary bank.</p>



2- Offshore Holding Companies

ELIGIBILITY CRITERIA	CONDITION	BENEFITS CUSTOMS FEES	TAXATION	CON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have as an exclusive objective the management of portfolios of non-resident companies and the acquisition of stakes in these companies;</li> <li>✓ to have capital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ies;</li> <li>✓ to make operations benefitting offshore banks or non-resident natural or legal persons in convertible foreign currencies.</li> </ul>	<p>Notification of establishment must be provided to the <i>Offices des Changes</i> within a maximum of 30 days following registration to the Trade Regis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and taxes</li> <li>✓ Exemption from foreign exchange monitoring procedures</li> <li>✓ For the local acquisition of foreign materials, securities, and equipment g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imbursement of import duties</li> <li>• Or acquisition without import duties, upon presenting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li> </ul> </li> </ul>	<p><b>Incom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in discharge of Income Tax for the gross compensations paid to salaried employees</li> </ul> <p><b>Corporat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ump-sum tax of 500 USD/year, in discharge of all other duties and taxes applying to the profits or revenues of these companies for the 15 years following the date of establishment</li> <li>✓ Permanent exemption for the dividends distributed to shareholders, on a pro rata basis of the offshore turnover corresponding to the exempted provisions of service</li> </ul> <p><b>Value Added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mption with the right to deductibility for operations benefitting offshore banks or non-resident natural or legal persons made in foreign currencies. These operations enjoy companies, according to the right to deductibility on a pro rata basis of the turnover exemp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general tax code.</li> </ul> <p><b>Business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manent exemption for the buildings occupied as headquarters or by branches</li> </ul> <p>Registration f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emption of acts of incorporation and capit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e flow of repatriated foreign revenues or products;</li> <li>✓ Freedom of conversion for operations involving non-residents;</li> <li>✓ Freedom to make financial or banking operations in convertible foreign currencies for its own account or on the behalf of non-resident natural or legal persons;</li> <li>✓ Freedom to invest in Morocco and to acquire a stake in the capital of resident persons made in foreign currencie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in effect</li> </ul> <p>Additionally, all their payments in Morocco must be made using accounts in foreign currency or 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 at a licensed Moroccan intermediary bank.</p>

## D- CASABLANCA FINANCE CITY-CFC- SCHEME

ELIGIBILITY CRITERIA	CONDITIONS	BENEFITS TAXATION	CON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financial or non-financial companies as defined by Law 44-10 on the Status of "Casablanca Finance City"</li> <li>✓ to practice activities with non-resident companies recognised as legal persons;</li> <li>✓ to comply with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n effect on foreign trade and exchan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tablishment in the financial centre</li> <li>✓ Obtaining the agreement to practice on a proposal from the Moroccan Financial Board</li> </ul>	<p><b>Corporat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 companies with "CFC" status:</li> <li>✓ Full exemption for the first five consecutive years following the first granting of the above-mentioned status</li> <li>✓ Reduced tax rate of 8.75% thereafter.</li> </ul> <p>✓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headquarters with CFC statu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duced tax rate of 10% following the first granting of this status.</li> </ul> <p>The tax amount due cannot be less than a minimum contribution equivalent to 5% of said headquarters' operating expenses.</p> <p><b>Incom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xation at specific rate of 20% for income received by Moroccan and foreign staff of companies installed in the financial center of Casablanca (for a maximum period of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te of beginning employment ).</li> </ul> <p><b>Registration fees</b></p> <p>Exemption of acts of incorporation and capital increase(FL 2013)</p>	<p>Convertibility regime that guarantees the transfer of remuneration due in respect of foreign technical assistance contracts and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providers and the freely realization of transfers related to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bsidiaries participation in expenses by their parent companies at the management fees, head office charges, royalties and fe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entities with the status "CFC";</li> <li>- fees charged by the parent company,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making available of staff;</li> <li>- fees related to mutualised services between subsidiaries and parent firms, such as fees related to IT services, and fe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to accounting and finance services and training costs. (General Instruction of Foreign Exchange Operations 31/12/2012)</li> </ul>

5 모로코 주요 법률 요약본(영문)<sup>90)</sup>

1- Corporate Tax or Income Tax

BENEFICIARIES	
<b>BENEFIT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tel establishments and management companies of touristic promotion property for the part of the tax base corresponding to their turnover achieved in foreign currencies duly repatriated directly or on their behalf by travel agencies</li> <li>✓ Companies exporting products or services, except those exporting scrap metal, for the part of their turnover achieved in foreign currencies;</li> <li>✓ Companies, other than those operating in the mining sector, which sell finished products to exporters established in export zones.</li> </ul>
<b>Full exemption followed by a permanent reduced rat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l exemption for the first five fiscal years and a reduced rate (17.5% for Corporate Tax (CT) or 20% for Income Tax (IT)) thereafter.</li> </ul>
<b>Full temporary exemption</b>	<p><b>Corporate Tax or Incom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gricultural revenues until 31 December 2013</li> </ul> <p><b>Corporate Tax:</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cessionaries of any exploitation work of hydrocarbon deposits for ten (10) consecut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start of production of any exploitation concession.</li> <li>✓ Companies operating licensed accountability management centres for four (4) years following the date of their licensing.</li> </ul>
<b>Permanent reduced tax rat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orting mining companies</li> <li>✓ Mining companies who sell their products to companies who export them after their recovery</li> <li>✓ Companies whose tax residence or headquarters is located in the province of Tangier and which practice their main activity in the jurisdiction of this province</li> </ul>
<b>Reduced tax rate (17.5% for CT or 20% for IT)</b>	<p><sup>13</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aft enterprises (whose production is the result of essentially manual work)</li> <li>✓ Private education establishments or professional training establishments</li> <li>✓ Enterprises established in "priority" provinces or prefectures, for executed work operations and sales operations of services or goods carried out exclusively in the affected provinces and prefectures<sup>14</sup></li> <li>✓ Real estate promoters, legal entities in respect of income from the rental of cities, residences and college campuses made as part of an agreement with the State</li> </ul>
<b>Temporary reduced rate :</b>	<p><sup>15</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duced tax rate for the first five fiscal years (17.5% for CT or 20% for IT)</li> </ul>
<b>Reduced corporate tax rate of 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companies carrying out less than or equal to 300,000 DHS of fiscal profit (LF 2013)<sup>16</sup></li> </ul>

<sup>13</sup> These companies can benefit from the 10% rate when they realize less than or equal to 300,000 DH of fiscal profit (LF 2013)

<sup>14</sup> Between 1 January 2011 and 31 December 2015, the corporate tax rate will be increased by 2.5 points per year and the Income tax by 2 points per year for these enterprises. After 2015, the General Law Scheme will apply (FL 2008) .

<sup>15</sup> 2012 Financial Law Investment Guide

updated: 03/15/2015

## 2- Value Added Tax

BENEFITS	GOODS AFFECTED
Exemption from import duties for 36 months following the start of operations of a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vestment goods to be registered in a capital account</li> <li>✓ Buses, trucks, and related equipment goods to be registered in a capital account and acquired by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mpanies</li> <li>✓ Equipment goods destined for private education or professional training to be registered in a capital account and acquired private education or professional establishments, except for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reserved for collective school transportation and specially adapted to this function</li> <li>✓ New or used equipment goods, materials, or tools whose importation is permitted by the Administration and which are imported by professional training graduates</li> </ul>
VAT exemption in the internal market for 36 months following the start of operations of a comp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vestment goods to be registered in a capital account</li> <li>✓ Buses, trucks, and related equipment goods to be registered in a capital account and acquired by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companies</li> <li>✓ Equipment goods destined for private education or professional training to be registered in a capital account and acquired by private education or professional establishments, except for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reserved for collective school transportation and specially adapted to this function</li> <li>✓ Equipment goods, tools, and materials acquired by professional training graduates</li> </ul>

## 3- Business Tax

BENEFITS	BENEFICIARIES
<b>Permanent exempt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ural or legal persons holding a research permit or exploitation concession for hydrocarbon deposits</li> <li>✓ General private education establishments or professional training establishments, for the premises destined to the housing or education of students</li> </ul>
<b>Permanent 50% reduction</b>	Persons liable to taxes whose tax residence or headquarters is located in the former province of Tangier and who perform their main activity in the jurisdiction of said former province
<b>Temporary exemption</b> for the first 5 fiscal years	Any newly created professional activity. This exemption also applies, for the same period of time, to lots, constructions of any kind, construction additions, materials, and new tools acquired in the process of exploitation, directly or by lease.

## 4- Conversion Schemes

CONDITIONS

BENEFITS



<p>Investments made in foreign currencies by resident or non-resident natural or legal foreign persons, and by natural Moroccan persons established abroad</p>	<p>✓ Guaranteed right to transfer revenues produced by investments in Morocco, with no limitation with regards to amount or time and after the payment of the duties and taxes in effect in Morocco. Such revenues incl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vidends or other profit commissions distributed by Moroccan companies;</li> <li>• Assistance fees and directors' fees;</li> <li>• Profits generated by the Moroccan branches of foreign companies;</li> <li>• Rental income;</li> <li>• Interests produced by loans contracted in compliance with the exchange regulations in place.</li> </ul> <p>✓ Guaranteed right to transfer proceeds from the sale or disposal of investments, including capital gains</p>
--	---



## 6

## 근로계약 법률분쟁 관련 주요 쟁점 요약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계약 일반사항	계약기간	장기계약 체결 가능 여부	불가능 - 계약은 최대 1년 체결 가능 * 근로계약은 기간제, 무기직, 도급직 계약으로 나눔. 기간제 계약은 근로관계가 성격상 무기직으로 될 수 없는 경우에만 체결 가능(대체근로, 일시적 업무증가, 계절근로 등). 사업개시 등과 같은 경우에 최대 1년의 기간제 계약 체결 가능	노동법 16, 17 조
	갱신횟수	계약 기간 및 갱신 횟수의 기준 또는 제약	계약직의 경우 1회(최대 1년)에 한 해 갱신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됨	노동법 17 조
	수습기간	수습직원 운용 기간	1. 무기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은 아래와 같다(1회 갱신가능) - 관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석사학위 이상 또는 경력직) 3개월 - 사무원의 경우 1개월 - 기능직의 경우 15일 2.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은 아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6개월 이하 계약직의 경우, 주 별로 1일을 수습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2주로 수습기간 제한 - 6개월 초과 계약직의 경우, 최대 1개월 수습기간이 상기보다 적을 경우, 계약서 혹은 노동단체협약 혹은 내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노동법 14 조
	수습기간중의 처우	수습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 모두 사전 계약해지 통보 혹은 보상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났을 경우, 피고용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계약 해지가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일급, 주급, 2주(15일)급제의 경우 2일 이전 - 월급제의 경우 8일 이전 *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피고용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8일 전에 통보해야 함.	노동법 13 조	

I

II

III

IV

V

VI

VII

VIII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계약 일반사항	근무시간	공식 근무일(급여 산정일/미산정일)	공식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월 26 일)까지이며, 공휴일은 국가 및 종교 휴일이다.		
		공식 근무시간, 주 근무 상한시간	근무 상한시간은 주당 44 시간, 연간 2288 시간이며, 하루 1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 토, 일 중에 최소 24 시간 이상의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  * 위반 시 300~20,000 디람의 벌금 부과  또한, 휴식일에 근무를 할 경우, 피고용인은 초과근무수당과 별도로 근무일 중에서 휴식 시간을 보전할 수 있다.	노동법 184, 185, 189, 201, 204 조	
	급여의 구성	급여에 포함돼야 하는 요소 및 산출방식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야 하며, 모든 피고용인을 국가사회보장기금(CNSS)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험, 최소한도 건강보험의 의무적인 유지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선택 가능하다		노동법 24 조
		시간외수당, 공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주중 초과근무 - 18 시~21 시 사이 초과 근무 : 시급의 25% 가산 - 21 시~06 시 사이 초과 근무 : 시급의 50% 가산  공휴일 초과근무 - 피고용인은 근무일 중에서 휴식 시간을 보전 받을 수 있으나 그와 별도로 50~100% 초과근무수당을 가산받음.		노동법 201 조
		최저임금 기준	농업을 제외한 전 직업 최저임금(SMIG)는 시급 13.46 디람, 월급 2570.86 디람(13.46X191 시간)  * 농업은 최저임금(SMAG) 일급 69.73 디람		공보 n° 6272, (2014.7.10.) Décret n° 2.14.343 (2014.6.24.)
	상여금	상여금(근속수당) 지급기준 및 산출방식	2년 이상 근속 5%, 5년 이상 근속 10%, 12년 이상 근속 15%, 20년 이상 근속 20%, 25년 이상 근속 25% 지급		노동법 350 조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계약 일반사항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무기계약직의 경우 동일 직장 또는 고용주 하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급여 지불 방식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법 52 조
	퇴직금 산출방식		연차 및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 5년차 이하 근속의 경우 96시간의 임금 - 6년에서 10년차의 경우 144시간의 임금 - 11년에서 15년차의 경우 192시간의 임금 - 15년차 초과인 경우 240시간의 임금 예) 2년 2개월을 근무한 피고용인의 경우 : 96시간 X 시급 X 3년 * 해고 및 퇴직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 전 52주간의 평균임금에 기준해 산출하며 퇴직 전 해당직장 전담 노동 감독관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권장된다.	노동법 53, 55 조
보험 및 사고 처리, 기타 복지	의무가입 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국가사회보장기금(CNSS)과 건강보험(AMO) 가입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산업재해 시 모든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사회보장기금은 질병, 출산, 장애, 퇴직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노동법 부록 왕령 n° 1-60-223 -산업재해, 왕령 n° 1-72-184
	업무관련 사고처리	산재 발생 시 고용주 부담	업무관련 사고발생시 고용주가(산업재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	노동법 부록 왕령 n° 1-60-223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영구장애 또는 사망 시 고용주의 보상범위	업무관련 사고에 대해 현물이나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재해 보험사가 지불). - 사고의 경우, 의료비, 수술비, 의약품비, 사고현장 혹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시설로의 이동비용을 포함한 부대비용, 치료비 부담. 현금보상의 경우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며, 영구장애율, 피해자의 연봉에 따라 보상범위 결정 - 사망의 경우, 장례식 및 이동비용 부담.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에 대한 연금 지급 * 의료, 제약, 검사 등의 가격목록은 노동부가 정하는 기준 준수	노동법 부록 왕령 n° 1-60-223 - 산업재해

I

II

III

IV

V

VI

VII

VIII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보험 및 사고 처리, 기타 복지	기타 복지	기타 복지와 관련된 고용주의 의무사항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근무시작일부터 재직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직함이 바뀔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재직카드에는 상호 또는 고용주의 성명, CNSS 등록번호, 본사 혹은 고용주의 주소, 피고용인의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일, 직함, 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사 상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노동법 23 조, Décret n° 2-04-422 du 16 kaada 1425 (2004.12.29)
			고용기간 동안 아래 사항들이 피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 노동단체협약이 있을 시 그 내용, 내규, 근무시간, 주휴 적용 방식, 건강·안전·기계장치 위험 예방에 관한 법적 규정 및 조치, CNSS 등록번호,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장 보험사	노동법 24 조
휴가	유급휴가	유급휴가의 발생기준	월 별로 1.5 일의 유급휴가 발생, 6 개월 이상 근무 시 사용 할 수 있다(고용주와 협의 하에 6 개월 이전 사용 가능). - 유급휴가는 18~30 일 범위 내에서 5 년마다 1.5 일씩 증가	노동법 231, 232 조
		미사용 휴가 발생시 보상액 지급기준	- 연차는 다음해에 한해 이월 가능 - 피고용인은 보상여부를 떠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포기나 휴가에 대한 사용 방치 불가 * 고용주는 피고용인 퇴직 및 계약만료 시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노동법 240, 242, 259 조
	병가	병가 요청시 증빙서류	병가가 4 일을 넘는 경우 피고용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부재에 대한 사유를 진단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직무 외 질병 혹은 사고로 1년 중 180 일 이상 연속 결근 시 또는 직무수행 부적격 시 이를 사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한 휴가는 무급이며 피고용인은 사회보장기금(CNSS)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 271 조  노동법 272 조  노동법 273 조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휴가	특별휴가	특별휴가 종류 및 부여일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조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 본인 4 일, 피고용인의 자녀 및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 2 일</li> <li>장례: 배우자·자녀·손자·조상·이전 결혼 배우자의 자녀 및 배우자 3 일, 피고용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일</li> </ul> </li> <li>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례 2 일,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수술 2 일</li> <li>피고용인은 시험, 국가스포츠 및 국제대회나 국가 공식행사의 인턴십 혹은 참석으로 인한 휴가 사용 가능</li> </ul> </li> </ol>	노동법 274, 275, 276, 277 조
	휴가관련 기타사항	무급휴가 적용 범위	<p>유급 고용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일시 중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복무 기간</li> <li>의사의 기록이 있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재 기간</li> <li>154 조 및 156 조에서 명시된 상황에서 산전, 산후 기간</li> <li>산재나 직업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무능력의 기간</li> <li>274 조(결혼, 장례, 기타), 275 조(시험이나 국가스포츠 및 국제대회, 국가공식행사의 참석) 및 277 조에서 명시된 일로 인한 부재 기간</li> <li>파업 기간</li> <li>사업의 임시 폐쇄 기간</li> </ol>	노동법 154, 156, 274, 275, 277 조
	휴직	고용주가 인정해야 하는 휴직	<p>출산휴직 및 수유 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는 출산 전후 7 주간(예정일보다 조기 출산 시 출산 후 휴직 기간 추가 연장 가능) 총 14 주 휴직 가능</li> <li>출산과 관련하여 병리 현상 및 이상이 있을 경우 출산 예정일 전 8 주, 출산 후 14 주 이내 휴직 연장 가능</li> <li>양육을 위해 출산 후 휴직(7 주 혹은 14 주 이내) 이후 90 일 이하로 휴직 기간을 연장 가능</li> <li>출산휴직자는 고용주와 합의하에 1 년간 무급 육아 휴직 가능</li> <li>출산일로부터 1 년간 피고용인은 매일 오전, 오후 30 분씩 총 한 시간의 수유 휴식을 가질 수 있으며 고용주와 합의하여 수유 휴식시간을 조정 가능</li> </ul>	노동법 154, 156, 161 조

I

II

III

IV

V

VI

VII

VIII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계약종료	계약기간 만료	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 통지 여부	고정기간 계약이므로 별도의 사전공지 불필요	
		계약 만료 시 통지 이외 기타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음	
	계약기간 중 일방 계약해지 방법	수습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 모두 사전 계약해지 통보 혹은 보상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났을 경우, 피고용인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급, 주급, 2 주(15 일)급제의 경우 2 일 이전</li> <li>- 월급제의 경우 8 일 이전</li> <li>-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피고용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8 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li> </ul> 무기계약직의 일방 계약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석사 학위 이상 혹은 경력에 따라 적용): 근속 기간에 따라 △1 년 이하는 1 개월 이전, △1 년 이상 5 년 이하는 2 개월 이전, △5 년 이상은 3 개월 이전 통보</li> <li>- 사무원 및 기능직의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1 년 이하는 8 일 이전, △1 년 이상 5 년 이하는 1 개월 이전, △5 년 이상은 2 개월 이전 통보</li> </ul>	노동법 13 조, 무기계약직의 일방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법령 제 1 조(« Décret n° 2-04-469 du 16 kaada 1425 (29 décembre 2004)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시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	무기계약직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석사 학위 이상 혹은 경력에 따라 적용): 근속 기간에 따라 △1 년 이하는 1 개월 이전, △1 년 이상 5 년 이하는 2 개월 이전, △5 년 이상은 3 개월 이전 통보</li> <li>- 사무원 및 기능직의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1 년 이하는 8 일 이전, △1 년 이상 5 년 이하는 1 개월 이전, △5 년 이상은 2 개월 이전 통보(해고 통지 이후 보안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근무여부와 별개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돼야 함.)</li> </ul>	무기계약직의 일방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법령 제 1 조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계약종료	계약종료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시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	<p>연차 및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차 이하 근속의 경우 96 시간의 임금</li> <li>- 6년에서 10년차의 경우 144 시간의 임금</li> <li>- 11년에서 15년차의 경우 192 시간의 임금</li> <li>- 15년차 초과인 경우 240 시간의 임금</li> </ul> <p>예) 2년 2개월을 근무한 피고용인의 경우 : 96 시간 X 시급 X 3년</p>	노동법 53 조
			<p>피고용인이 부당해고 된 경우, 노동법 41 조와 51 조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은 손해배상금과 해고 예고기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p> <p>* 손해배상금 산출식 : 월급여 x 1.5개월 x 연차(*1.5개월 x 연차 상한선 36개월)</p> <p>* 노동법 259 조: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피고용인의 퇴직 전 날까지 지급해야 함</p> <p>* 고용주는 피고용인 퇴직 및 계약만료 시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함</p>	노동법 59 조, 259 조
징계 및 해고	징계	징계의 종류와 징계 절차	<p>고용주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 피고용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고</li> <li>2. 견책</li> <li>3. 2차 견책 혹은 8일 이하의 정직</li> <li>4. 3차 견책, 보직변경 혹은 피고용인의 거주지를 감안한 전근</li> </ol> <p>* 징계 시 경고장 사본을 8일 이내에 노동감독관에게 전달 필요</p>	노동법 37 조
		해고의 사유가 되는 징계의 종류	<p>고용주는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노동법 37 조), 당해 연도 징계처분이 소진된 경우에 고용주는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p>	노동법 38 조

I

II

III

IV

V

VI

VII

VIII

구분	항목	검토사항	법률검토결과(요약)	관련 법조항
징계 및 해고	해고	해고의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용인의 심각한 부정행위</li> <li>- 명예, 신뢰, 도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li> <li>- 업무기밀의 누출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li> <li>- 업무시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절도, 신뢰훼손, 만취, 약물사용, 신체적인 폭력, 심각한 모욕, 작업수행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부당하게 거절, 12개월 중 4-8일 이상의 무단이탈, 고의적으로 혹은 과실로 유발한 장비나 기계의 심각한 손상, 고용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실수, 안전규칙 준수의 위반이나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 방탕행위 선동, 직원이나 회사 및 고용주에 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 등</li> </ul>	노동법 39 조
		해고의 절차	수습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측 모두 사전 계약해지 통보 혹은 보상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났을 경우, 상기 노동법 13 조 계약해지 통보 절차 준수 필요	노동법 13
			피고용인이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 사전 계약해지 통보, 보상금, 손해보상금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노동법 59
	중재	법률분쟁 발생 시 적용 법률 및 관할법원	모로코 노동법,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 모로코 투자진출을 위한 **길라잡이**

**인 쇄** · 2017년 12월

**발 행** · 2017년 12월

**발행처** · 주모로코대한민국대사관

**디자인/인쇄** · (주)마스타상사(02-730-8241)